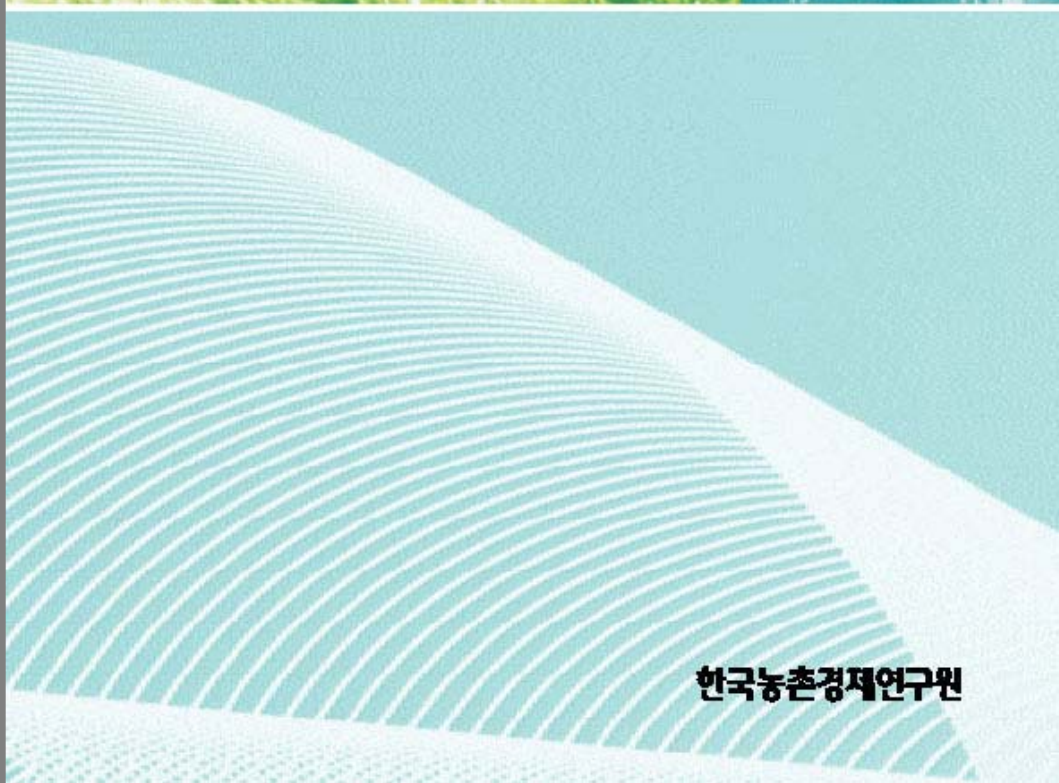


2008 봄 | **중국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9-2008-01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08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창 간 사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교류가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의 교역도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농림수산물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농림수산물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적자폭도 확대되었고,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중 FTA 협상의 전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어 중국과의 FTA 협상 시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되면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더욱 더 증가하고 국내 농업의 중국 농업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농업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국내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북경에 중국사무소를 개설하고 중국 농업의 최신 동향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중국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최신의 중국 농업동향을 서비스하는 동시에 매 분기마다 『중국농업동향』을 발간하여 중국농업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창간호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첫 발걸음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 농업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전달하는 정보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지도와 편달을 바란다. 필요성에 비추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창간호를 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료를 발간하기 위해 애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중국 농업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2008.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59-6110

리경호 jinghulee@krei.re.kr

TEL 02-3299-4374

목 차

I. 농업정책 브리핑

1. 2008년 농정방향과 시사점	1
2. 곡물수출 제한조치의 파급영향 및 전망	21
3. 제1, 2차 농업센서스 주요 결과 비교	35
4. 식품안전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48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1. 2007년 농업·농촌경제 동향	59
2. 가격 동향	72
3. 무역 동향	85
4. 소득 동향	100
5. 2007년 향진기업 현황	102

III. 농정연구 이슈

104

IV. 정책자료

1. 『농산물 품질안전법』 전문	114
2.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전문	123

V. 농업통계

128

I. 농업정책 브리핑

1. 2008년 농정방향과 시사점

1.1. 개요

- 중국은 매년 연말 당과 정부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¹에서 당해 연도 농업부문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정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토의하고 확정된 후 이를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에 하달하여 집행토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²
- 2007년 12월 22~23일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는 2008년 및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 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이라는 제목의 토론용 문건이 상정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음.
 - 이 문건은 동일한 제목으로 2008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로 중앙1호문건³으로 발표되었음.

1 중앙농촌공작회의는 당해 연도 경제전반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토의하고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관련 정책 논의 기구임. 2007년 12월 3~5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8가지의 2008년도 경제분야 주요 임무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농업의 기초적 지위 강화, 농업·농촌의 경제활력 증진’을 두 번째 중요 임무로 제시하였음.

2 중국의 중장기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는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심의, 확정되고 있음.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계획 기간 동안의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는 ‘전국 농업·농촌경제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全國農業和農村經濟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2006-2010))’에 제시되어 있음.

3 개혁개방 이래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1호문건은 1982~1986년과 2004~2008년 모두 10차례 발표되었음. 각 연도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은 전형진 외, 2007. 『중국농업동향』. M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 농업부는 매년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논의되고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전국농업공작회의(全國農業工作會議)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농업부문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하달하고 있음.
- 2007년 12월 22~23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농업공작회의에서 쑨정차이(孫正才) 농업부장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민소득 증대 촉진(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 確保農產品有效供給 促進農民持續增收)’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2007년도 농업부문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8년도 농정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중앙농촌공작회의, 전국농업공작회의를 통해 확정 제시된 당해 연도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보고’에 포함되어 최종 심의를 받음.
- 2008년 3월 5~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9가지의 2008년도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로 중앙1호문건의 주제와 동일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을 제시하였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제출한 ‘200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현황과 200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2008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8대 임무 가운데 하나로 ‘농업의 기초적 지위 강화, 신농촌 건설 적극 추진’을 제시하였음.

1.2. 2008년 농정방향과 추진과제: 중앙1호문건을 중심으로

가. 농업의 지위 강화와 재정투자 확대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기초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

4 매년 3월 초순에 개최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당해 연도 정부 운영의 기본 방침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음.

및 다원적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농정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정책의 실시와 재정투자확대를 강조하였음.

○ 중앙1호문건은 ①총 투자 증가액 규모, ②고정자산투자 증가액 규모, ③토지임대(양도) 수입 중 농촌건설 투자항목의 증가액 규모가 반드시 2007년도 증가액 보다 많아야 한다는 2008년 농업부문 재정투자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음. 또한 농업재정 투자시 다음의 3가지를 조정하도록 하였음.

-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수입은 농업부문, 특히 논 수리시설 건설, 농업종합개발 및 농촌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것
-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지출시 반드시 일정부분은 농촌계획,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 및 유지보호에 사용할 것
- 2008년부터 국가가 지정한 592개 빈곤퇴치 시범 현(縣)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공투자 건설 항목⁵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성(省) 정부의 투자비율을 확대하고 현 및 현 이하 정부의 투자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

○ 중국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투자액은 2003년 2,144억 위안에서 2007년 4,318억 위안(중국 전체 중앙재정 지출액의 14.6%)으로 5년 동안 2배가 증가했고 누적 투자액은 1.6만 억 위안에 달했음.

- 2008년도 중앙재정의 농업부문 투자액 규모는 2007년 보다 1,307억 위안 증가한 5,625억 위안으로 30.3% 증가하였음.
- 2008년 중국 전체 중앙재정 지출액에서 농업재정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2007년 대비 4.4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음.⁶

5 오염·부실저수지 수질개선 및 보수사업(病險水庫除險加固工程)과 퇴경환림환초 프로젝트(退耕還林還草工程), 민둥산조림사업(荒山造林工程) 등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 사업을 지칭함. 조림사업의 경우 인공조림시 무(畝; 200평=0.067ha)당 보조금액을 50위안에서 100위안, 벌채금지 및 산림육성사업의 경우 50위안에서 70위안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6 2008년 전국 재정수입은 58,486억 위안(중앙 31,622억 위안, 지방 26,864억 위안), 재정지출은 60,786억 위안(중앙 13,205.2억 위안, 지방 47,580.8억 위안)을 계획하고 있음.

표 1 농업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제

구 분	주요 내용
농업재정 투자 확대	· 농업과 농촌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현(縣)급 이상 정부의 재정 중 매년 농업부문에 대한 총 투자증가액이 경상수입 증가액보다 크도록 재정운용 · 농촌을 중심으로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 농업부문 재정투자에서 총 투자 증가액 규모, 고정자산투자 증가액 규모, 토지임대(양도) 수입 중 농촌건설 투자항목의 증가액 규모가 반드시 2007년도 증가액 보다 많도록 재정운용(3원칙) · 경지점용세 수입을 주로 삼농문제 해결에 사용,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사용범위 조정, 국가공공투자항목에서 현 및 현 이하 정부의 부담 경감(3조정)
농업지원정책 확대	· 식량직불,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농자재종합직불 등 4대 항목의 지원 규모 확대 · 작물보험 시범실시 지역 확대, 보조금 지급대상 품종(작물) 확정 · 식량, 유지작물, 산패지 및 젖소 생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정책 추진, 식량주산지 현(縣)에 대한 장려정책 및 보조금 지원 확대와 규범화 추진 · 주요 지역 및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 최저수매가격 제도 시행
농업의 효율성 증대와 농민소득 증대의 선순환	· 농업구조조정, 비교우위농산물 지역배치계획 지속추진, 특색농업의 발전, 농산물 품질제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 농부산물 및 생활폐기물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 · 비농업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향진기업, 가내수공업, 농촌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현 경제 활성화 · 주요 농산물 및 농자재가격의 조절 및 통제 · 농가재산의 법률지위 보장, 집단재산에 대한 수익권 보장, 자산소득 증대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	·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 해소, 도농 통합발전 계획 수립 · 도농 간 생산요소시장 일체화 · 도농 통합관리 및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실현

자료: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

○ 과거 중국의 농업재정 투자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지만 2003~2007년 동안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투자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촌인프라 구축, 농촌복지 향상 등 농촌지역 공공투자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왔음.

- 5년 동안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투자는 농촌 세제개혁 추진, 농업생산능력 제고, 식량 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 규모 확대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의무교육, 문화, 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사업의 발전과 민생문제의 해결에도 역점을 두었음.

- 5년 동안 식량직불, 농자재종합직불,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등 4개 투자항목에 중앙재정 1,144.2억 위안이 사용되었음. 또한 농촌 세제개혁과 종합개혁에 중앙재정 3,000여 억 위안이 사용되었으며 주로 농촌세제개혁 시범사업, 농(목)업세와 농업 특산세의 폐지, 국영농장 세제개혁, 농촌지역 9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채무(普九債務)⁷ 상환 등에 사용되었음.
 - 5년 동안 1,300억 위안 이상의 중앙재정이 농촌 의무교육, 과학 및 문화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신형 농촌합작의료제 시행에 169억 위안이 사용되었음.
- 중앙1호문건은 농업재정 투자규모 확대와 연계하여 농업지원정책(惠農政策)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의 추진을 강조하였음. 특히 농업지원정책의 핵심인 식량직불, 농자재종합직불,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등 4개 투자항목과⁸ 관련하여 우량종자보조 및 농기계구입보조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 기준액을 인상하며 수혜지역을 전국의 모든 농업 주산지 현(縣)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작물보험 시범실시 지역 확대, 각종 생산지원정책 및 최저수매가격 제도의 실시를 강조하였음(표 1 참조).
- 중앙재정의 식량재배 농가에 대한 직접직불(식량직불, 농자재종합직불) 규모는 2007년 427억 위안에서 2008년에는 362억 위안 증가한 789억 위안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 이 중 식량위험기금(糧食風險基金)⁹에서 지급되는 식량직불은 2006년 142억 위안, 2007년 151억 위안, 2008년 151억 위안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음. 그러나 농자재종합직불은 2006년 120억 위안, 2007년 276억 위안, 2008년 638억 위안으로 2년 연속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전국 식량 재배면적의 무(畝=200평)당 평균 농자재종합직불

7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성(省) 정부가 현(縣)을 기본 단위로 해서 농촌지역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이후 발생한 부채로서 교실 및 보조공간 신축, 학생생활용 공간, 학습기자재 구매 및 설치, 교사 수리 보수 등 학교 건설과 직접 관련된 비용

8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식량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식량직불제를 실시했으며, 2006년에는 농자재종합직불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음. 농자재종합직불제는 최근 들어 농자재, 특히 화학비료의 가격인상폭이 비교적 커 농민들의 기대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2003~2007년 동안 식량직불,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농자재종합직불 등 4개 투자항목에 중앙재정 1,144.2억 위안이 사용되었음.

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식량의 유통 및 가격 조절을 위해 운용하는 전용 기금

금은 2007년에 비해 20위안이 증가한 40위안 정도임.

- 식량직불금 및 농자재종합직불금 지급은 과거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시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두 가지 직불금을 분리 지급하던 것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직불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였음.
-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 최저수매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2008년 2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개발은행은 공동명의의 문건¹⁰을 통해 벼와 밀의 최저수매가를 공표하였음.
 - 조생종 인디카 벼(3등 이하; 이하 동일) 50kg당 가격을 70위안에서 75위안, 중만생 인디카 벼는 72위안에서 76위안, 자포니카 벼는 75위안에서 79위안으로 인상하였음.
 - 흰 밀(백소맥; white wheat)은 50kg당 가격을 72위안에서 75위안, 붉은 밀(홍소맥; Red Wheat)은 69위안에서 70위안, 혼합밀은 69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상하였음.
 - 식량작물 수매가격의 인상은 기본적으로 화학비료 가격상승 등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수익 저하를 고려한 것임. 그리고 남부지방의 저온 및 폭설 피해와 북부지방의 가뭄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매가격 인상을 통한 식량작물의 재배 확대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임.
- 이외에도 중앙1호문건은 농업의 효율성 증대와 농민소득 증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메카니즘 형성을 강조하였음(표 1 참조).

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 최근 국내외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안정의 물질적 기초라는 인식하에 식량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핵심적인 농정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주요 내용은 표 2 참조).

10 《關於公布2008年稻穀和小麥最低收購價格的通知》(國家發展與改革委員會, 發改電[2008]51號)

- 특히 인구대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식량자급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식량작물, 유지작물, 육제품 및 낙농제품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품질안전을 보장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음.
- 2007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50,150만 톤으로 2004년 이래 4년 연속 식량증산을 달성하였으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중장기적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수요측면에서는 인구증가, 수요(식용 및 사료용) 증가로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경지면적 감소, 영농포기로 인한 토지황폐화, 농업용수 오염 및 부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
- 2004년 이래 중국의 식량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두와 식용유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¹¹를 95% 이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핵심적인 식량주산지를 집중 육성하고 잠재력이 큰 예비주산지를 개발하는 한편 식량주산지 현 장려정책 실시, 식량 성장책임제(糧食省長負責制)¹² 강화, 식량작물보험 실시 등 식량생산 증대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표 2 참조).
- 또한 부식품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바구니' 농산물 시장책임제('菜籃子'市長負責制)¹³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원예산업 및 축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작물별 생산지원 정책, 시설농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11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경제사(農業經濟司) 팡옌(方言) 부사장(副司長)은 2007년 11월 20일 광주시에서 개최된 국제유지유료대회(國際油脂油料大會)에서 앞으로 중국은 95%의 식량자급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에 앞서 2007년 9월 13일 국무원의 기자회견에서 농업부 인청지에(尹成杰) 부부장(副部長)도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식량자급율이 95% 이상 유지되어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식량비축율이 FAO가 권고한 17~18%를 훨씬 초과했다고 언급하였음.

12 각 성의 성장이 관할 범위내의 식량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흔히 '쌀자루 성장책임제('米袋子'省長負責制)'로 불림.

13 각 시의 시장이 도시민들에 대한 장바구니 농산물(생활 필수 농식품; 주로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비축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수급균형 및 가격 안정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표 2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식량생산 증대	· 식량작물 파종면적의 안정적 확보, 작부체계 개선, 단수 증대를 통한 식량생산 증대 · 식량위험기금의 지속적 운용, 식량주산지 현 장려정책 실시 · 핵심 식량주산지 집중 육성, 잠재력이 큰 예비주산지 개발 · 서부 퇴경환림지역 퇴경농가를 위한 식량생산농지(口粮田) 조성 · 식량 성장책임제(糧食省長負責制) 강화, 주요 소비지와 생산 및 소비 균형지역에서 안정적인 식량자급 수준 유지 · 식량작물보험 실시 · 농지개간기업에 의한 대형 식량 및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장바구니(菜籃子)’ 농산물 생산 증대	· ‘장바구니’ 농산물 시장책임제(‘菜籃子’市長負責制) 강화 · 채소 등 원예산업의 규모화 · 축산, 가금사육의 규모화 및 보조금정책 실시 · 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농업 확대 · 돼지, 젖소 등의 동물보험제도 실시
농업표준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강화	· 농업표준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 선도농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 과학기술 선도농가, 대규모 농가들이 생산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체계 구축 · 무공해농산물 행동계획의 실시, 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체계 구축, 농산물 표시 및 이력추적제도 실시 · 농업투입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생산 촉진, 유명브랜드 농산물 육성,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도의 시행 및 보호
농산업화 촉진	· 선도농기업 육성, 담보기금 또는 담보회사 등의 방식으로 선도농기업의 자금난 해소, 선도농기업의 채권발행 허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중 농업산업화 전용기금 확대하여 선도농기업의 기술연구개발 등 지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촉진 ·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농민협동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업 참여 장려, 1촌 1품 운동 전개
농산물시장 조절 강화	· 식량 등 주요 농산물 비축체계 건설, 농기업의 상업적 비축 유도 ·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관측 정보체계 구축 · 우수 농산물의 수출 촉진, 수출 농산물의 품질추적 시스템 건설 · 농산물 수출 신용대출과 신용보험의 발전

자료: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

○ 중앙1호문건은 양적인 측면에서 식량 및 부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 농업생산의 표준화, 농산물의 품질안전 수준 제고, 농산업화를 주요한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표 2 참조).

- 농업부는 농업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종합시범지역 534개, 시범 현(농장) 220개, 양식지역 7,000여 개, 시범단지 3,500개, 종묘 및 양묘장 3,350만 ha를 조성하였음.
- 중국의 각종 농산업 조직 수는 15.4만 개로 연계된 농가는 9,098만 호에 이르며, 선도 농기업의 주도로 재배업 생산단지 6,700여 만 ha, 양식단지 641만 ha가 조성되었고, 사육되는 가축과 가금의 수는 각각 14.6억 만 두와 113.4억 마리에 달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향후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의 하나가 농업문제이며 미약한 농업생산기반이 농업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라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2008년 중앙1호문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주요 내용은 표 3 참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은 논 수리시설 건설이 핵심으로 중앙재정과 성 정부가 건설 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대형 관개지구의 수로개조와 소형 배수시설 건설에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음. 또한 오염·부실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보수 사업도 생산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수리시설 건설 자금은 2005년 중앙재정에 3억 위안이 책정된 이래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억 위안, 10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2008년에는 20여 억 위안으로 배 이상 확대될 계획임.
-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3.7만 여 개에 달하는 오염·부실저수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업부는 향후 3년 동안에 전국의 중대형 및 소형의 오염·부실저수지 6,240개의 수질개선 및 보수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표 3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소형 수리시설 건설	· 현금 논 수리시설 건설 계획의 제정 및 정비 · 중앙재정과 성급 지방재정 중 관련 보조금 규모 확대 · 가뭄방지를 위해 산간지역에 빗물 저장시설 건설 · 장려금, 보조금 지급으로 농민들의 수리시설 건설의 적극성 유발 · 소형 논 수리시설의 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비영리적인 농촌 수리사업 관리체계 개혁 · 농민용수합작조직(農民用水合作組織) 육성
절수관개(節水灌溉) 촉진	· 농업고정자산투자를 대규모 관개지역의 절수개조에 집중하고 2020년까지 대규모 관개지역의 절수개조사업 완료, 중규모 관개지역의 핵심사업 및 중대규모 관개지역 절수개조 사업에 재정투자 확대 · 절수관개 시범사업 실시 및 대 농민 기술보급 · 대형 관개 및 배수펌프 기술개선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침수에 방사업 전개 · 농업 관개용, 배수용 전력사용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실시
오염 저수지 수질개선	· 오염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중요 지역 중소형 하천관리계획 제정, 중앙재정의 중서부지역 보조 · 수리사업 관리체계 개혁 강화, 물수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 · 서남부지역의 중소형 수원개발, 홍수피해 방지 시범사업 실시
농지보호 및 토양개량	· 토지이용 총계획과 년도계획의 엄격한 집행 · 농지보호 책임제 실시, 농지와 임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 · 토지임대(양도) 수입을 경지정리, 황폐지복구, 토지개량에 사용 · 농지의 비옥도향상, 토지측량 및 시비 규모 확대 · 퇴비활용 증대, 녹비작물 파종확대, 유기비료의 사용 증대 · 가뭄농법 시범사업 추진, 절수 시범구역 조성
농업기계화 촉진	· 식량작물 생산의 완전기계화 추진, 경제작물, 양식업의 기계화 촉진 · 실용적인 농기계의 연구개발 및 식량 주산지와 남부지역 구릉지대 및 주혈흡충증 발생지역에 우선 보급 · 농업기계화 세금우대정책 실시: 농기계작업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 원거리 농작업시 도로통행료 면제 등 · 기계화농가, 농기계협동조합, 농기계전문서비스회사의 발전 지원
생태보호 및 건설	· 천연림 보호, 퇴경환림 등 중요한 생태프로젝트 지속 추진 · 삼림, 초원, 수토 보호 보상제도 수립, 산지종합개발 추진, 임산업 발전 촉진 · 퇴목환초지역, 방목지역의 수리시설 건설 및 인공목장 조성 · 삼림, 초원의 화재 관측경보체계 구축 및 방화시설 확충 · 장강, 황하, 동북흑토지역 등 중요 유역과 지역의 수토보호 · 토지황폐화 및 사막화 방지, 습지보호 · 농촌지역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사업 전개 · 순환농업 육성, 비식량 및 비유지작물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자원의 연구개발 · 농업환경오염 방지 계획 수립

자료: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

- 중국은 1999~2006년 동안 경지정리 및 개발사업을 통해 236만 ha, 연평균 34만 ha의 경지를 신규 조성했으며 이는 동 기간 건설용지로 전환되거나 자연재해로 유실된 경지면적보다 많은 면적임.
 - 2001~2006년 동안 2,320개 항목의 경지정리 및 개발사업에 약 300억 위안의 중앙재정¹⁴을 투자하여 163만 ha의 경지를 신규로 조성했으며 전체 투자항목과 자금 중 약 70%가 13개 식량주산지에 투자되었음.
 - 국토자원부는 향후 2010~2020년 동안 경지정리 4,355만 ha 이상, 황폐지 복구 154만 ha, 신규 조성 248만 ha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중국은 농업기계화가 현대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4년부터 5년 연속 발표된 중앙1호문건에서 농업기계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 또한 농업기계화 사업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4년 6월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구입보조금제도는 2007년 중앙재정의 농기계구입보조금 규모가 2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방재정의 보조금 규모는 1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음.
 - 2007년 중국의 농기계 총동력은 7.6억 킬로와트로 전년대비 4.6% 증가했고,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수준은 40.7%로 전년대비 1.4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국의 기경, 기계파종, 기계수확 면적은 1.58억 ha에 달함. 주요 곡물인 밀의 기계 파종 및 수확 비율은 80%에 이르며, 벼는 각각 10%, 40%, 옥수수는 각각 58%와 5% 수준임.
- 2006년 현재 중국의 각종 농기계서비스조직 및 기계화농가는 3,502.1만 개에 달하며 서비스 영역도 생산 전후, 재배업으로부터 양식업, 농산물가공업, 식량작물에서부터 경제작물, 사료작물로 확대되었으며 원거리 작업 범위 또한 확대되었음. 이들 농기계서비스조직에 대한 세금감면정책도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임.
 - 농기계서비스조직의 기경, 배수 및 관개, 병충해방제, 식물보호 등 농기계작업에 대해서 영업세를 면제하는 한편 관개, 농산물 1차 가공, 동물 의약품 공급, 농업기술 보급, 농기계작업 및 수리 보수 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관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14 최근에는 집단소유 토지의 임대(양도) 수입도 이 분야의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원거리 농기계작업 시 도로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여름에 국한했던 것을 봄과 가을로 확대하고, 작물은 밀에 국한했던 것을 벼, 옥수수로 확대하고, 농작업은 수확에 국한했던 것을 기경, 이앙, 파종으로 확대하고, 농기계 종류는 복합수확기, 이앙기에 국한했던 것을 중대형 트랙터까지 확대하였음.

라. 농업기술 개발 및 서비스체계 강화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아직도 전통농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 농업이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요소투입 증대에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기술진보를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내포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농업기술의 개발 및 농가보급을 주요한 농정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주요 내용은 표 4 참조).
- 중국의 농업기술 보급인력은 현과 향진 지역에 80여 만 명, 이 중 향진 지역에 51만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농업기술 보급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고 새로운 형식(예를 들어 기술특파원, 농업기술 110정보서비스 등)의 보급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①현(縣) 단위로 농업기술 보급서비스조직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이 농업기술 보급체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일선 농업기술인력이 전체 농업기술인력의 2/3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졸업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농업기술 보급인력을 확보할 것, ③일선 농업기술 보급서비스조직에 대해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 구체적으로 지방 각급 재정부문은 농업기술 보급서비스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보증해주고 예산범위에 포함시킬 것; 현에서 향·진으로 파견되는 기술인력의 배치와 업무수행 경비를 현금 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관리할 것
- 중국 정부는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서비스 강화와 함께 농업서비스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①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②농촌 인재양성, ③농촌시장체계 구축, ④농민협동경제조직 및 농촌서비스조직 육성, ⑤농촌 정보화수준 제고를 중요한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자세한 내용은 표 4 참조).

표 4 농업기술 개발 및 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제

구 분	주요 내용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 농업기술 연구개발에 재정투자 확대, 연구기관과 학계의 기초연구, 프론티어기술 연구 지원 · 산학연 연계 강화 및 농업기술 연구 활동 추진, 현대적인 농산업기술 체계 구축 · 유전자변형 농산물 신품종 개발, 종자프로젝트 및 축산업, 가금업, 수산업분야의 우량종 연구개발사업 추진 · 농업기술의 농가보급사업 추진, 공익성 농업기술보급서비스 강화 · 3~5년 내에 공익성 농업기술보급서비스 조직의 사무실, 설비 및 기술테스트 시범기지 확보 · 위탁,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 기상부문의 대 농업생산 서비스 기능 활용
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동물 전염병에 대해 무료 강제면역 실시, 살처분 동물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 고효능 농약 및 동물의약품 개발 · 촌 단위 동물 방역 인력 확보 및 필요 경비 보조 · 식물보호사업의 지속 추진, 식물 병충해 방제 및 관리체계 구축
농촌 인재 양성	· 신농촌 실용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재배 및 사육기술자, 기술지도자, 농업경영인, 농민협동경제조직 지도자 등 양성 · 농민들의 자질 향상 및 창업능력 제고, 농민공에 대한 직업기능훈련 실시, 현 단위로 직업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구축, 도농 일체형의 중등직업교육 실시 · 농촌지역에 대학설립 및 농림수산 관련 전공 설치 지원, 농림수산 관련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졸업 후 농촌에서 농림수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출 학비 대납 제도 실시
농촌시장체계 구축	· 농업현대화에 부응하는 대규모 시장 및 유통체계 구축, ‘만촌천향시장(萬村千鄉市場)’¹⁵ 및 ‘쌍백시장(雙百市場)’¹⁶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 현대적인 식량물류체계 구축, 신선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 시범운영, 현대적인 신농촌 유통네트워크사업 추진 · 농촌지역의 현대적인 유통업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세금혜택, 신용대출, 보험 정책 추진 · 농산물 선물시장 정비, 신선농산물 녹색통도(綠色通道)¹⁷를 이용하는 성 내외 차량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행료 감면정책 실시

15 도시, 향·진, 촌으로 이어지는 3급의 연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5~2007년 동안 전체 행정촌의 50%와 전체 향진의 70%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는 그 비율을 각각 65% 이상, 8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16 100개의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선하고, 100개의 대형 농산물 유통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실시, 공익성 시설, 저장 및 운송시설 등 시설 건설, 콜드체인시스템 운영, 신선농산물 배송센터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4 농업기술 개발 및 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제(계속)

구 분	주요 내용
농민협동경제조직 및 농촌서비스 조직 육성	· 『농민전업합작사법』 시행 및 관련 정책, 법규의 제정, 농업협동경제 조직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실시,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 각급 지방재정의 농민협동경제조직에 대한 투자 확대, 국가건설투자 사업 시행을 농민협동경제조직에 위탁 · 농업생산·경영서비스 조직 육성하여 대 농민 기경, 파종, 용수관리, 창고저장 및 운송서비스 제공 · 농촌종합서비스 조직 육성,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 농촌지역서비스 센터 및 공익서비스기지 설립
농촌정보화 추진	· 실효성 추구, 서비스 중시, 넓은 지역 커버, 다양한 모델 추구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농촌정보서비스체계 구축 · ‘금농(金農)’¹⁸ 및 ‘삼전합일(三電合一)’¹⁹ 프로젝트 지속 추진, 농촌정보화 시범사업 및 농촌상거래정보서비스사업 전개 · 전국에 비용이 저렴한 공익성 서비스전화 보급 · 농업정보의 수집 및 분산제도 정비하여 농민과 농기업에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즉시 제공

자료: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

마.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후진타오(胡錦濤)가 제창한 집정이데올로기인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내용인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을 위해서는 농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도농 2원체제의 해소를 위한 농촌 공공투자사업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농촌 의무교육수준 제고, ②농촌 기본의료서비스 능력 제고, ③농촌 가족계획 수준 제고, ④농촌 문화사업 전개, ⑤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완성, ⑥농촌 빈곤퇴치사업 추진, ⑦농촌 공공교통서비스 수준 제고, ⑧농촌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자세한 내용은 표 5 참조).

17 ‘녹색통도’ 통행증을 소유하고 저장성이 약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통행료, 일체의 검사 및 비용을 면제해주는 정책

18 1994년 12월 국가경제정보화연석회의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농업·농촌 정보화사업

19 전화, TV, 컴퓨터 등 3가지 정보통신기기를 상호 연계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업부는 2010년 까지 2,000개 현, 1.4억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5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과제

구 분	주요 내용
농촌 의무교육 수준 제고	·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과서 무료 제공 및 각종 잡비 납부 면제(兩免), 빈곤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비 보조(一補) · 기숙사 생활비 보조 기준 상향조정 및 수혜지역 확대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용경비 및 교사수리비 보조 기준 상향조정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자질 향상, 중서부 농촌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 · 도농 간 교사 교류 확대, 대학졸업자의 농촌학교 교사 진출 지원
농촌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전국 실시, 국가 보조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및 농민 부담금 인상, 기금관리의 규범화 · 농촌의료구조제도 정비, 농촌위생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의약품 관리 감독 강화 · 농촌지역 전염병 및 지방풍토병 방제, 농촌지역 무료 예방접종 범위 확대
농촌 가족계획사업	· 농촌지역에서 신 가족계획사업 실시, 가족계획 모범 실천 가구에 대한 장려제도 시행 · 농촌지역 계획생육서비스체계 구축
농촌 문화수준 제고	· TV 난시청 및 라디오 난청취 농촌지역 해소, 영화상영사업 추진, 향진 종합문화회관 및 도서관 건립 · 문화정보자원 공유사업의 농촌서비스기지 건설 · 농촌 보건체육 활동 전개 · 농촌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농촌사회보장체계 구축	·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정비,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빈곤가구의 최저생활보장, 최저생활보장 보조금 규모 확대, 최저생활보장 기준 및 보조수준 상향조정 · 농촌지역 5대 보호 및 공양 정책 지속추진, 농촌 양로보험제도 건립을 위한 시범사업 전개
농촌지역 빈곤퇴치	· 개발식 빈곤퇴치사업 전개, 빈곤퇴치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빈곤 퇴치 보조금 지급 기준 상향조정 · 빈곤가구의 이주정책 지속 추진 · 혁명유적지역, 소수민족지역, 변방지역 및 특수지역의 빈곤퇴치 사업 우선 추진
농촌 공공교통수준 제고	· 농촌 공공도로건설 지속 추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투자규모 확대 · 농촌 공공도로 보호, 관리 및 보수체계 개혁 · 농촌 공공교통서비스 개선 · 도시와 농촌 여객운송의 균형 발전
농촌주거환경 개선	· 농촌 식수안전프로젝트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식수원 보호, 식수 공급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우대정책 및 보조금 지급 · 농촌 수력에너지자원 관리 강화,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확대 · 농촌 전력공급망 개선, 메탄가스시설 설치사업 지속 추진 · 태양력, 풍력에너지 개발 및 이용 · 소도시(小城鎮) 개발계획 수립 및 기초시설 건설 강화

자료: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

-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²⁰는 2007년 말 현재 전국 현(시, 구)의 86%에 해당하는 2,448개 현(시, 구)에서 시행하고 있음.
 -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구는 7.26억 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83.5%를 포괄하고 있음.
- 2007년 말 현재 중국은 전국의 모든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3,400여 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2007년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총 120억 위안이 사용되었으며 이중 중앙재정에서 지원된 자금은 30억 위안이었음. 중국 정부는 향후 농촌최저생활보장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보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도 인상할 계획임.
 - 현재 전국 농촌 최저생활보장의 최저 보장 기준은 1년에 1,032위안이고 전국의 평균 보조금 지급 기준은 월 30위안임.
-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 최저생활보호대상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농촌개발 방식으로 빈곤퇴치를 지원한다는 개발형 빈곤퇴치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선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빈곤인구와 빈곤지역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1986년 농촌지역의 빈곤선은 206위안으로 당시 농촌주민 순소득 424원의 1/2이었으나 2006년의 경우 693위안으로 당시 농촌주민 순소득의 1/5이 되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촌 빈곤선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임.
 - 2007년 중앙재정의 빈곤퇴치 자금은 144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농촌의 절대빈곤인구는 1978년 2.5억 명에서 2006년 2,148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2006년 현재 1인당 순소득이 693위안보다 높고 924위안보다 적은 농촌 저소득인구는 3,550만 명이 존재함.

20 1980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달리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 농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원칙에 따라 농민 개인, 집단,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농민의료 상호공제제도임. 중국 정부는 2003년에 처음으로 전국의 304개 현(시)를 선정하여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매년 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시행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6 토지도급경영제의 안정과 농촌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구 분	주요 내용
토지도급경영제의 안정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국 농촌의 기본적인 농업경영제도인 토지도급경영제(家庭承包經營制)의 안정 및 개선 · 토지도급 기간 연장이후 농가의 토지도급경영권 증서 확보 · 농촌토지도급계의 규범화된 관리: 토지도급경영권 등록제도 확립 · 농촌토지도급관련 분쟁해결 시범사업 지속 추진, 도급기간내 토지조정이나 도급지 회수 등의 행위를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 ·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 활성화, 토지도급계약 관리 부문의 중개서비스 강화
토지에 대한 권리 보장	· 토지수용제도 개혁 시범사업 지속 추진, 토지수용 절차 규범화,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조정, 토지수용 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수립, 분쟁중재 및 판결시스템 구축 · 농촌 집단건설용지의 엄격한 관리, 도시주민의 농촌택지 및 주택 구입 제한
집단임지재산권제도개혁	· 토지도급경영제 방식으로 임지의 집단소유권을 유지한 채 임지의 사용권과 임목의 소유권을 농가에 도급
농촌금융체제 개혁	· 농업발전은행의 농업지원 강화, 농업은행 개혁, 농촌신용사개혁 심화 · 우정저축은행의 농업관련 업무 확대 · 소액 신용대출조직 육성하여 신용대출과 연합담보대출 활성화 · 담보방식의 개선, 유효 저당물의 범위 확대, 정부, 기업, 은행의 3자가 참여하여 농촌 신용대출 담보체계 모색 · 농촌 신용대출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및 감독제도 제정 · 농작물보험 운영메커니즘 개발과 발전 모형 모색
농촌채무 상환	· 공익성 채무의 해결: 현금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자금지원 보장, 농촌 의무교육 관련 채무(普債) 해결 시범사업 전개(3년 내 해결 목표) · 생산경영성 채무: 시장원리에 따라 협상을 통해 해결
농민공의 권익보호	· 대도시 호적제도 개혁, 안정적인 직장과 거주지가 있는 농민의 도시주민 등기 허용 방안 모색 · 농민공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과 지불보장체계 확립 · 농민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립

자료: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

바. 토지도급경영제도의 안정 및 농촌개혁의 심화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토지도급경영제의 실시를 중국 농촌개혁의 최대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도급경영제의 안정과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1호문건은 농촌토지도급경영제의 규범화된 관리를 위해 토지도급경영권 등록제도 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분쟁해결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임.

- 또한 도급기간 내 토지조정이나 도급지의 회수 등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용을 촉구하는 한편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을 관리하는 단위의 토지유동화 중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토지도급경영제의 안정을 전제로 향후 일정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 ①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장, ②향·진 조직 개혁과 현·향 재정관리체제 개혁, ③임지(林地) 재산권 제도개혁, ④농촌금융체제 개혁, ⑤농촌의 채무상환, ⑥농민공의 권익보장 등을 제시하였음.

1.3. 평가 및 시사점

- 중국 공산당과 정부(국무원)가 2004년 이후 5년째 올해도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1호문건을 채택함으로써 올해 집권 제2기를 시작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제1기(2002.11~2007.10)에 이어 당면한 삼농문제의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음.
- 2004~2008년 발표된 중앙1호문건은 각각 농민소득 증대 촉진(2004년), 농업 생산 능력(capacity) 제고(2005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2006년), 농업현대화(2007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2008)을 주제로 하였음.
- 후진타오 정부가 2004~2008년 까지 5년 연속 삼농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것은 집정이데올로기인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²¹에 입각하여 당면한 삼농문제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임.
- 중앙1호문건에서는 식량안보, 농업의 기초지위 강화, 삼농문제 해결을 이른바 ‘3가지 시종일관(三個始終)’ 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삼농문제 해결이 향후 오랜 기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될 것임을 시사하였음.

21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일관되게 유지했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대체하여 ①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완화, ②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③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핵심내용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집정이데올로기로 제시하였음.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투입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以工補農), 도시가 농촌을 인도(以城帶農)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임.²²
 - 특히 지난 5년 동안 각종 농민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신하고 올해 중앙1호문건에서도 농업의 기초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 2008년 중앙1호문건을 비롯해 각종 문건에 나타난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 《농업과 농촌경제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2004~2007년 중앙1호문건에서 제시된 농정방향 및 추진과제와 일맥상통하며 획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 2008년 중앙1호문건을 비롯해 각종 문건에 나타난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는 2008년 한 해에 국한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격이 강함.
 - 올해 중앙1호문건의 주제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민소득 증대 촉진’은 지난 5년 동안의 중앙1호문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바 있으며 《농업과 농촌경제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중장기 추진과제임.
 - 2004-2008년 중앙1호문건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중국 삼농문제 해결의 기본 사고체계인 동시에 정책체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2008년과 향후 일정기간 동안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식량증산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조절을 위해 식량작물의 수출제한조치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농수산물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국내 식품 공급에서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의존도 심화되고 있음.

22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03.10.11-14)에서 도농 통합발전 목표가 제시된 후 제4차 전체회의(2004.9.16-19)에서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以工補農), 도시가 농촌을 인도(以城帶農)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제5차 전체회의(2005.10.8-11)에서 통과된 ‘11.5계획’에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를 명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공급국인 중국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국내 곡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에 대한 곡물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전형진 hjchon@krei.re.kr

[참고자료]

- 《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中共中央,國務院,[2008]1號, 2008.1.30)
- 《關於公布2008年稻穀和小麥最低收購價格的通知》(國家發展與改革委員會,發改電[2008]51號, 2008.2.8)
- 孫政才. 2007.12.22. “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 確保農產品有效供給 促進持續增收”-在全國農業工作會議上的講話.
- 溫家寶. 2008.3.5. 《政府工作報告》(在第十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報告)
- 財政部. 2008.3.5. 《關於2007年中央和地方預算執行情況與2008年中央和地方預算草案的報告(摘要)》(在第十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報告)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8.3.5. 《關於200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0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摘要)》(在第十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報告)
- 《農業部《關於貫徹落實中共中央國務院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的意見》(農業部, 農發[2008]1號. 2008.1.29)
- 中央一號文件解讀①: 三農工作面臨什麼樣的機遇和挑戰. 2008.2.18.
- 中央一號文件解讀②: 加大三農投入, 力往哪兒使. 2008.2.18.
- 中央一號文件解讀③: 農產品供給, 如何長期有保障. 2008.2.18.
- 中央一號文件解讀④: 農業硬件, 固本強基是關鍵. 2008.2.18.
- 中央一號文件解讀⑤: 農業科技, 搭好平臺服好務. 2008.2.18.
- 中央一號文件解讀⑥: 基本公共服務, 邁向城鄉均等化. 2008.2.21.
- 전형진, 리경호. 2007. 『중국농업동향』, M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곡물수출 제한조치의 파급영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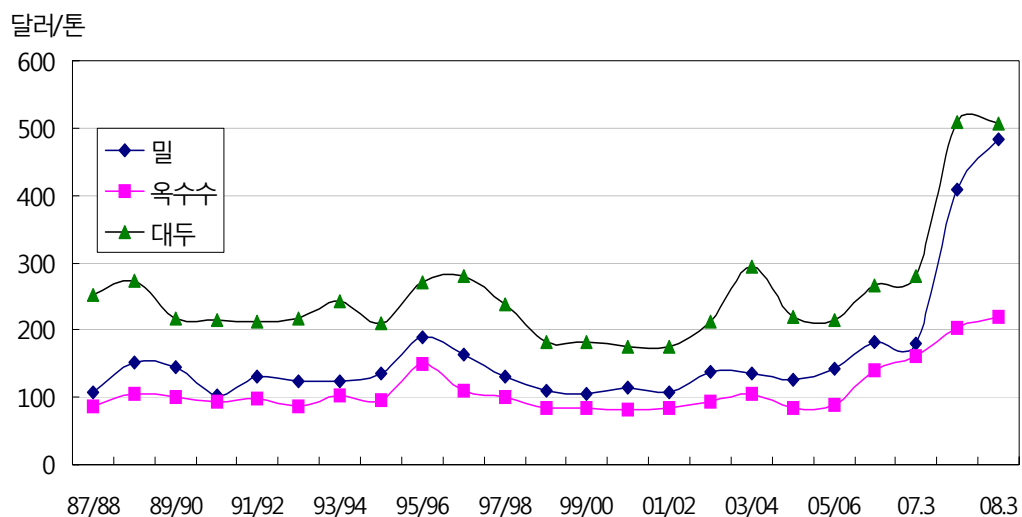
2.1. 개요

□ 2006년 중반부터 주요 곡물인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 곡물가격이 현물 및 선물시장에서 모두 급등하여 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밀, 옥수수, 대두의 시카고 선물거래소 가격(CBOT)를 가중평균한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2002~2004년 초반까지 상승하다 2004년 중반부터 안정세를 보였으나 2006년 중반부터 다시 급등하여 2008년 2월에는 2006년 1월 대비 179.7%나 상승했음(김용택 외, 2008; 김병률 외, 2008).

○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2008년 3월물 인도분 선물가격 기준으로 밀, 옥수수, 대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69.8%, 36.9%, 81.7% 상승하였음. 2005/06년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240%, 149%, 137% 상승하였음.

그림 1 주요 곡물의 국제 선물가격 변화 추이



자료: 성명환(2008), p.97 표4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 7 주요 곡물의 국제 현물 및 선물가격 변화 추이

단위: 달러/톤(C&F), 달러/톤

품 목	2005/06	2006.3	2006/07	2007.3	2008.2	2008.3	증감률(%)		
							전전년 동월	전년 동월	전월 대비
국제현물가격									
옥수수	—	141	—	234	327	358	153.9	53.0	9.5
대 두	—	264	—	345	634	633	139.7	83.5	-0.2
대두박	—	—	—	316	519	511	—	61.7	-1.5
국제선물가격									
밀	142	—	181	179	409	483	—	169.8	18.1
옥수수	88	—	140	160	203	219	—	36.9	7.9
대 두	214	—	267	279	508	507	—	81.7	-0.2

주 1. 국제현물가격은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으로 미국산 기준이며, 국제선물가격은 캔사스 상품거래소(KCBOT) 가격임.

2. 국제선물가격 중 밀은 2등급 기준, 곡물연도는 6~5월이고 2008년 3월 12일 기준가격임. 옥수수는 2등급 기준, 대두는 1등급 기준이며 곡물연도는 모두 9~8월이고 2008년 3월 12일 기준가격임.

자료: 성명환(2008), p.93 표2, p.95 표3을 참조하여 재구성

○ 2008년 3월 12일 현재 옥수수, 대두, 대두박의 현물가격(운임포함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53.0%, 83.5%, 61.7% 상승하였음. 2006년 3월 가격과 비교하면 옥수수는 153.9%, 대두는 139.7%나 상승하였음(표 7 참조).

○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²³

- 1990년대 이후 곡물의 소비증가가 생산증가를 상회하여 국제 곡물재고량 감소: 2006/07년도에 16.2% 수준으로 하락
- 기후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주요 곡물생산국의 작황 부진
- BRICs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고속성장으로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수요 증가, 유가 상승으로 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디젤) 원료용 곡물 수요 급증
- 2000년 이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수송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곡물 생산비 증가
-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와 가수요 및 투기수요의 증대

23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추세와 원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병률·이명기·유찬희(2008) 참조

표 8 중국의 주요 식량작물 수출입 현황

단위: 만 톤

품 목	식량작물 전체		곡물 및 제분제품		쌀		밀		옥수수		대두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1985	600	932	-	-	-	102	541	-	9	634	0.1	114
1990	1,372	563	-	583	6	33	1,253	-	37	340	0.1	94
1995	2,070	103	-	64	165	6	1,163	23	526	12	30	38
2000	1,357	1,401	315	1,378	25	296	92	19	0.3	1,048	1,042	22
2001	1,738	903	344	876	29	187	74	71	4	600	1,394	26
2002	1,417	1,514	285	1,482	24	199	63	98	0.8	1,168	1,132	31
2003	2,283	2,230	208	2,195	26	262	45	251	0.1	1,639	2,074	30
2004	2,998	514	975	473	77	91	726	109	0.2	232	2,023	35
2005	3,286	1,059	627	1,014	52	69	354	61	0.4	864	2,659	41
2006	3,186	723	359	605	73	125	61	151	6.5	310	2,827	40
2007	3,238	1,039	156	991	49	134	10	307	3.5	492	3,082	48

주: 식량작물은 대두 포함, 곡물 및 제분제품은 대두 제외.

자료: 中國統計出版社. 2007. 『2007中國農村統計年鑒』; 農業部. 2007. 『2007中國農業發展報告』; 農業部. 2008.2.4. “2007年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http://www.agri.gov.cn/xxfb/t20080204_968293.htm).

□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내 수급 및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2007년 12월 이후 곡물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2006년 중반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중국 국내가격과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밀, 옥수수 등 곡물과 밀가루, 전분 등 곡물 가공제품의 수출이 대폭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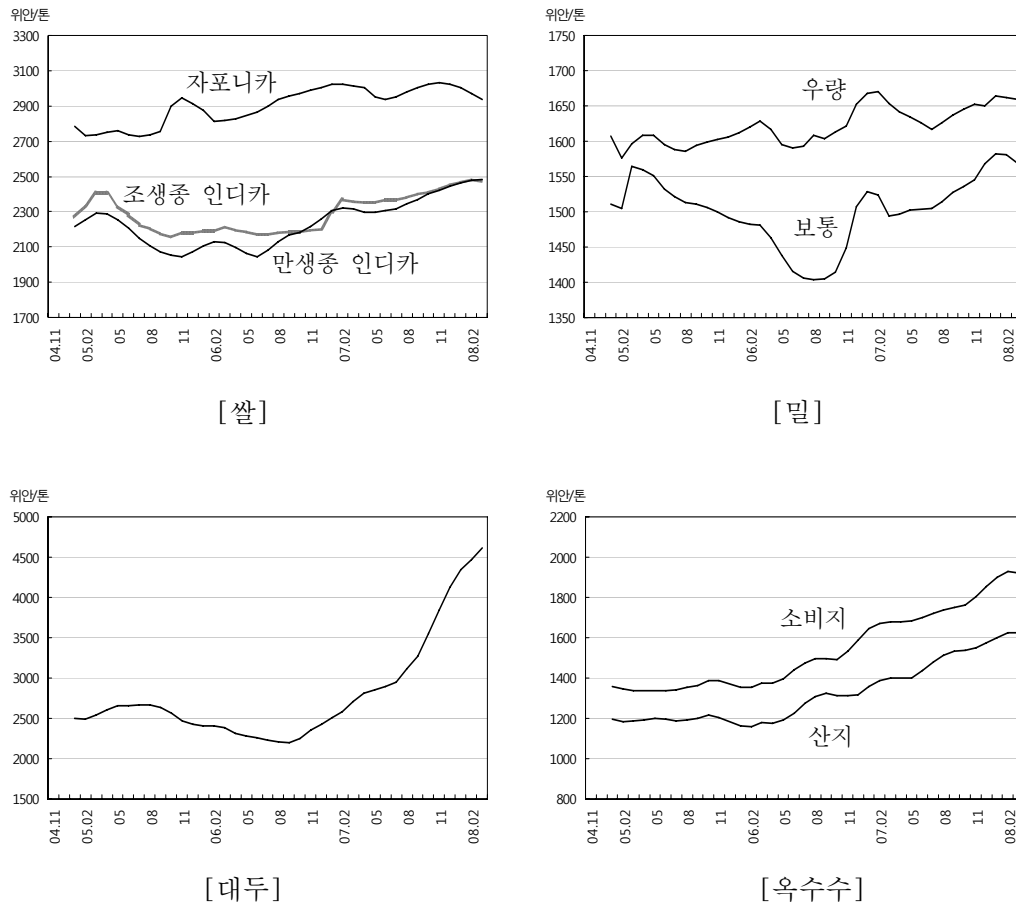
- 2007년도 중국의 곡물 수출은 991.2만 톤으로 전년대비 62.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5.7만 톤으로 56.7% 감소하여 835.4만 톤의 순 수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실적임.

- 품목별로 보면 2007년도 쌀, 밀, 옥수수, 대두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7.2%, 103.3%, 58.8%, 20% 증가했음.

○ 2007년도 중국의 곡물가격은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후반기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음.

- 조생종 및 만생종 인디카쌀, 자포니카쌀, 밀, 옥수수, 대두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2006년에 비해 각각 10.1%, 11.4%, 1.4%, 7.2%, 18.5%, 25.0% 상승했음.

그림 2 주요 식량작물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세



주: 대두는 흑룡강성(黑龍江省)의 중등품 수매가격, 그래프는 3개년 이동평균 추세를 나타냄.
 자료: 農業部. 품목별 시장모니터링 정보(市場監測信息)(<http://www.agri.gov.cn/xxfb/>)

－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의 2007년 평균 수매가격도 2006년에 비해 10.3% 상승, 품목별로는 각각 5.3%, 8.0%, 19.8% 상승하였음.

○ 2007년도 3월부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억제선인 3%를 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년대비 4.8%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이 중국 거시경제 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 특히 2007년 11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6.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품가격과 곡물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2%, 6.6%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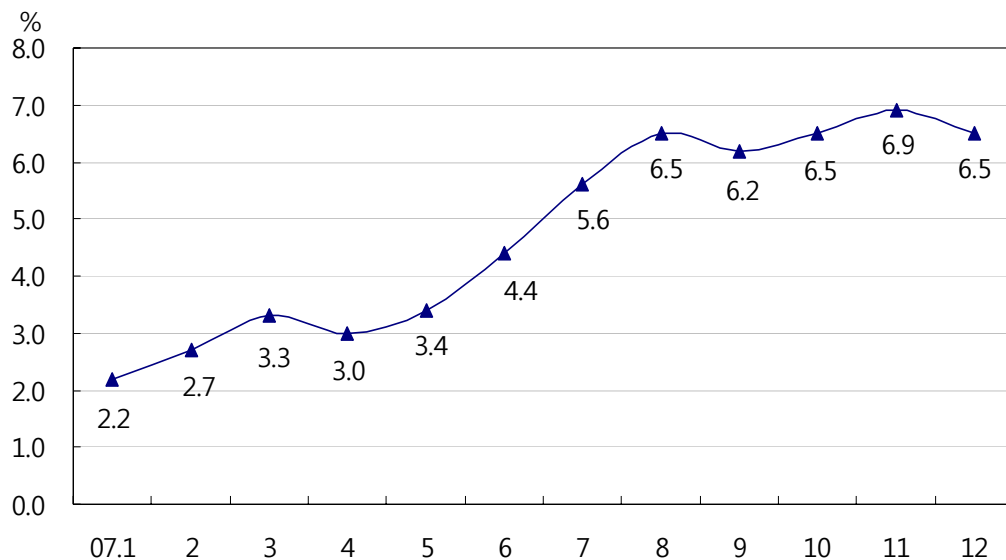
표 9 2007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구 분	전 국	도 시	농 촌
소비자물가지수(CPI)	4.8	4.5	5.4
식품가격	12.3	11.7	13.6
- 식량	6.3	6.4	6.2
- 육류, 가금육 및 그 제품	31.7	31.6	31.8
- 유지	26.7	25.5	28.3
- 가금의 알	22.9	23	22.8
- 신선채소	7.3	6.6	9.4
- 신선과일	0.1	-0.2	1
술, 담배 및 그 용품	1.7	1.8	1.6
의류	-0.6	-0.9	0.2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1.9	1.9	2.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2.1	1.7	2.8
교통, 통신	-0.9	-1.6	0.6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1	-0.7	-1.6
거주	4.5	4.5	4.4

자료: 國家統計局. 2008.2.28. “200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그림 3 2007년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07년 중국의 식품가격은 전년대비 12.3% 상승했으며, 전체 CPI 상승률 4.8% 가운데 4.0%가 식품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었음.²⁴
- 중국은 국내 곡물 수급 및 식품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2007년 12월부터 수출세 환급제도 폐지, 수출관세 부과, 수출쿼터제 등 3가지 곡물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2.2. 곡물수출 제한조치

가. 수출세 환급 폐지

- 중국은 수출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세무총국 명의의 문건²⁵에 의거하여 1994년부터 수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국내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세제혜택을 실시해왔음.
- 2002년 1월부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공동명의 문건²⁶의 규정에 따라 쌀, 밀, 옥수수와 그 제분제품(HS-8단위, 표 10 참조) 16개 품목의 수출시 해당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13%의 수출세 환급률을 적용해왔음.

표 10 수출세 환급 적용 품목

번호	HS-8	품목명칭	번호	HS-8	품목명칭
1	10011000	밀(듀럼종)	9	10061091	벼(인디카/기타)
2	10019010	밀(종자용)	10	10061099	벼(기타)
3	10019090	밀(기타)·혼합밀	11	10062010	현미(인디카)
4	10051000	옥수수(종자용)	12	10062090	현미(기타)
5	10059000	옥수수(기타)	13	10063010	정미(인디카) (연마·광택여부 불문)
6	11042300	옥수수(가공곡물)	14	10063090	정미(기타) (연마·광택여부 불문)
7	10061011	벼(인디카/종자용)	15	10064010	쇄미(인디카)
8	10061019	벼(기타/종자용)	16	10064090	쇄미(기타)

자료: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出口大米,小麥,玉米增值稅實行零稅率的通知》(財稅[2002]46號, 2002.3.16)

24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의 가중치가 약 33% 정도로 식품가격, 그 가운데 곡물가격이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5 《國家稅務總局關於印發‘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的通知》(國稅發[1994]031號, 1994.2.18)

26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出口大米,小麥,玉米增值稅實行零稅率的通知》(財稅[2002]46號, 2002.3.16)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12월 14일 발표된 공동명령의 문건²⁷에 의거하여 12월 20일부터 쌀, 밀, 옥수수, 콩 등 84개 품목(HS-10단위)의 곡물 원료 및 제분 제품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였음.

표 11 중국의 수출세 환급 폐지 품목

번호	HS-10	품목명칭	번호	HS-10	품목명칭
1	1001100001	밀(듀우럼종)*	31	1006309001	정미(기타)* (연마·광택여부 불문)
2	1001100090	밀(듀우럼종)**	32	1006309090	정미(기타)** (연마·광택여부 불문)
3	1001901001	밀(종자용)*	33	1006401001	쇄미(인디카)*
4	1001901090	밀(종자용)**	34	1006401090	쇄미(인디카)**
5	1001909001	밀(기타)·혼합밀*	35	1006409001	쇄미(기타)*
6	1001909090	밀(기타)·혼합밀**	36	1006409090	쇄미(기타)**
7	1002001000	호밀(종자용)	37	1007001000	수수(종자용·식용)
8	1002009000	호밀(기타)	38	1007009000	수수(기타/식용)
9	1003001000	보리(종자용)	39	1008100000	메밀
10	1003009000	보리(기타)	40	1008200000	좁쌀
11	1004001000	귀리(종자용)	41	1008901000	곡물(기타/식용)
12	1004009000	귀리(기타)	42	1008909000	곡물(기타)
13	1005100001	옥수수(종자용)*	43	1101000001	밀가루(밀·혼합밀)*
14	1005100090	옥수수(종자용)**	44	1101000090	밀가루(밀·혼합밀)**
15	1005900001	옥수수(기타)*	45	1102100000	호밀가루
16	1005900090	옥수수(기타)**	46	1102200001	옥수수가루*
17	1006101101	벼(인디카/종자용)*	47	1102200090	옥수수가루**
18	1006101190	벼(인디카/종자용)**	48	1102901101	쌀가루(인디카)*
19	1006101901	벼(기타/종자용)*	49	1102901190	쌀가루(인디카)**
20	1006101990	벼(기타/종자용)**	50	1102901901	쌀가루(기타)*
21	1006109101	벼(인디카/기타)*	51	1102901990	쌀가루(기타)**
22	1006109190	벼(인디카/기타)**	52	1102909000	곡분(기타)
23	1006109901	벼(기타)*	53	1103110001	밀(분쇄물·조분)*
24	1006109990	벼(기타)**	54	1103110090	밀(분쇄물·조분)**
25	1006201001	현미(인디카)*	55	1103130001	옥수수(분쇄물·조분)*
26	1006201090	현미(인디카)**	56	1103130090	옥수수(분쇄물·조분)**
27	1006209001	현미(기타)*	57	1103191000	귀리(분쇄물·조분)
28	1006209090	현미(기타)**	58	1103192101	쌀(인디카/분쇄물·조분)*
29	1006301001	정미(인디카)* (연마·광택여부 불문)	59	1103192190	쌀(인디카/분쇄물·조분)**
30	1006301090	정미(인디카)** (연마·광택여부 불문)	60	1103192901	쌀(기타/분쇄물·조분)*

주: *은 킬로그램 이내, **은 킬로그램 초과

자료: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取消小麥等原料及其制粉出口退稅的通知》(財稅[2007]169號, 2007.12.14)

27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取消小麥等原料及其制粉出口退稅的通知》(財稅[2007]169號, 2007.12.14)

표 11 중국의 수출세 환급 폐지 품목(계속)

번호	HS-10	상품명칭	번호	HS-10	상품명칭
61	1103192990	쌀(기타/분쇄물·조분)**	73	1104299000	곡물(기타/가공곡물)
62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조분)	74	1104300000	곡물 배아(가공곡물)
63	1103201001	펠리트(밀의것)*	75	11043000001	13% 세율의 곡물배아(가공곡물)
64	1103201090	펠리트(밀의것)**	76	11043000002	17% 세율의 곡물배아(가공곡물)
65	1103209000	펠리트(기타 곡물)	77	1108110000	밀(전분)
66	11041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78	1108120000	옥수수(전분)
67	1104191000	보리(압착·플레이크)	79	1201001000	대두(종자용)
68	1104199000	기타곡물 (압착·플레이크)	80	1201009100	대두(콩나물용/비종자용/ 파쇄여부 불문)
69	1104220000	귀리(가공곡물)	81	1201009200	검정 대두(비종자용/ 파쇄 여부불문)
70	1104230001	옥수수(가공곡물)*	82	1201009300	청대두(비종자용/파쇄여부 불문)
71	1104230090	옥수수(가공곡물)**	83	1201009900	대두(기타/비종자용/파쇄 여부불문)
72	1104291000	보리(가공곡물)	84	1208100000	대두 분말

주: *은 킬터량 이내, **은 킬터량 초과.

자료: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取消小麥等原料及其制粉出口退稅的通知》(財稅[2007]169號, 2007.12.14)

나. 수출관세 부과

- 중국 재정부는 2007년 12월 30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밀, 옥수수, 쌀, 대두 등 식량작물 원료 및 제분제품 57개 품목(HS-8단위)에 대해 5~25%의 수출관세 부과 조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표 12 참조).
- 중국 세관(中國海關總署)은 2008년 1월 4일 공포된 1호 문건²⁸을 통해 이 조치를 공식 확인하였음.
- 단,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대만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음.²⁹

28 《關於對糧食原料及其制粉征收出口暫定關稅》(海關總署公告 2008年 第1號, 2008.1.4)

표 12 수출관세 부과 품목 및 세율

번호	HS-8	품목명칭	세율 (%)	번호	HS-8	품목명칭	세율 (%)
1	10011000	밀(듀우럼종)	20	30	11022000	옥수수가루	10
2	10019010	밀(종자용)	20	31	11029011	쌀가루(인디카)	10
3	10019090	기타 밀·혼합밀	20	32	11029019	쌀가루(기타)	10
4	10020010	호밀(종자용)	20	33	11029090	곡분(기타)	10
5	10020090	호밀(기타)	20	34	11031100	밀(분쇄물·조분)	25
6	10030010	보리(종자용)	20	35	11031300	옥수수(분쇄물·조분)	10
7	10030090	보리(기타)	20	36	11031910	귀리(분쇄물·조분)	25
8	10040010	귀리(종자용)	20	37	11031921	쌀(인디카/분쇄물·조분)	10
9	10040090	귀리(기타)	20	38	11031929	쌀(기타/분쇄물·조분)	10
10	10051000	옥수수(종자용)	5	39	11031990	곡물(기타/분쇄물·조분)	10
11	10059000	옥수수(기타)	5	40	11032010	펠리트(밀의 것)	25
12	10061011	인디카 벼(종자용)	5	41	11032090	펠리트(기타 곡물)	10
13	10061019	벼(기타/종자용)	5	42	11041200	귀리(압착·플레이크)	20
14	10061091	인디카 벼(기타)	5	43	11041910	보리(압착·플레이크)	20
15	10061099	벼(기타)	5	44	11041990	기타곡물 (압착·플레이크)	5
16	10062010	인디카 현미	5	45	11042200	귀리(가공곡물)	20
17	10062090	기타 현미	5	46	11042300	옥수수(가공곡물)	5
18	10063010	인디카 정미 (연마·광택여부 불문)	5	47	11042910	보리(가공곡물)	20
19	10063090	기타 정미 (연마·광택여부 불문)	5	48	11042990	곡물(기타/가공곡물)	5
20	10064010	쇄미(인디카)	5	49	11043000	곡물 배아(가공곡물)	5
21	10064090	쇄미(기타)	5	50	11081100	밀(전분)	25
22	10070010	수수(종자용·식용)	5	51	11081200	옥수수(전분)	10
23	10070090	수수(기타/식용)	5	52	12010010	대두(종자용)	5
24	10081000	메밀	20	53	12010091	대두(콩나물용/비종자용/ 파쇄여부 불문)	5
25	10082000	좁쌀	5	54	12010092	검정 대두(비종자용/ 파쇄여부불문)	5
26	10089010	곡물(기타/종자용)	5	55	12010093	청대두(비종자용/파쇄여 부불문)	5
27	10089090	곡물(기타)	5	56	12010099	대두(기타/비종자용/파쇄 여부불문)	5
28	11010000	밀가루(밀·혼합밀)	25	57	12081000	대두 분말	10
29	11021000	호밀가루	25				

자료: 《2008年我國對原糧及其制粉征收出口暫定關稅》(財政部新聞辦公室, 2007.12.30)

29 《關於對糧食出口加征出口關稅》(海關總署公告 2008年 第3號, 2008.1.14)

표 13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품목

번호	HS-10	품목명칭	번호	HS-10	품목명칭
1	1001100001	밀(듀우럼종)	27	1006101990	벼(기타/종자용)
2	1001100090	밀(듀우럼종)	28	1006109101	벼(인디카/기타)
3	1001901001	밀(종자용)	29	1006109190	벼(인디카/기타)
4	1001901090	밀(종자용)	30	1006109901	벼(기타)
5	1001909001	밀(기타)·혼합밀	31	1006109990	벼(기타)
6	1001909090	밀(기타)·혼합밀	32	1006201001	현미(인디카)
7	1103110001	밀(분쇄물·조분)	33	1006201090	현미(인디카)
8	1103110090	밀(분쇄물·조분)	34	1006209001	현미(기타)
9	1101000001	밀가루(밀·혼합밀)	35	1006209090	현미(기타)
10	1101000090	밀가루(밀·혼합밀)	36	1006301001	정미(인디카) (연마·광택여부 불문)
11	1103201001	펠리트(밀의것)	37	1006301090	정미(인디카) (연마·광택여부 불문)
12	1103201090	펠리트(밀의것)	38	1006309001	정미(기타) (연마·광택여부 불문)
13	1005100001	옥수수(종자용)	39	1006309090	정미(기타) (연마·광택여부 불문)
14	1005100090	옥수수(종자용)	40	1006401001	쇄미(인디카)
15	1005900001	옥수수(기타)	41	1006401090	쇄미(인디카)
16	1005900090	옥수수(기타)	42	1006409001	쇄미(기타)
17	1102200001	옥수수가루	43	1006409090	쇄미(기타)
18	1102200090	옥수수가루	44	1102901101	쌀가루(인디카)
19	1103130001	옥수수(분쇄물·조분)	45	1102901190	쌀가루(인디카)
20	1103130090	옥수수(분쇄물·조분)	46	1102901901	쌀가루(기타)
21	110419901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47	1102901990	쌀가루(기타)
22	1104230001	옥수수(가공곡물)	48	1103192101	쌀(인디카/분쇄물·조분)
23	1104230090	옥수수(가공곡물)	49	1103192190	쌀(인디카/분쇄물·조분)
24	1006101101	벼(인디카/종자용)	50	1103192901	쌀(기타/분쇄물·조분)
25	1006101190	벼(인디카/종자용)	51	1103192990	쌀(기타/분쇄물·조분)
26	1006101901	벼(기타/종자용)			

자료: 《2008年出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商務部,海關總署公告 2007年 第101號, 2007.12.29)

다. 수출쿼터제

- 상무부와 세관은 2007년 12월 29일 공포한 문건을 통해³⁰ 밀, 옥수수, 쌀 및 그 제분제품을 포함한 47종 상품(HS-8단위 471개 품목; HS-10단위 품목으로는 656개 품목)의 2008년도 수출허가증관리 품목 목록을 발표하였음.
- 문건은 수출허가증관리 품목을 세분하여 수출쿼터허가증관리 품목, 수출쿼터입찰 품목, 수출허가증관리 품목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옥수수, 쌀, 밀 및 그 제분제품 51개 품목(HS-10단위)을 수출쿼터허가증관리 품목으로 분류하였음(표 13 참조).
- 문건은 옥수수가루, 밀가루, 쌀가루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수출쿼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상무부는 2008년 1월 19일 수출쿼터허가증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옥수수, 밀, 쌀의 제분제품 21개 품목(HS-10단위)의 수출쿼터 신청조건과 신청절차에 관한 문건³¹을 공포하였음.
- 공고 발표 이후 쿼터를 할당받지 못한 수출기업은 일률적으로 신규 수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2.3. 파급영향 및 전망

- 중국의 곡물 수출은 곡물 수출제한 조치 실시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입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순 수출 상태임. 또한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와 밀은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벼와 대두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였음.
- 곡물 수출제한 조치 실시 이후 2008년 1~3월 동안 곡물가격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지난 1월 설(春節) 식품수요 증가와 중남부지방의 폭설로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물가가 7.1% 상승한데 이어 2월에는 8.7%나 상승하여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월에도 8.3% 상승하였음.

30 《2008年出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商務部,海關總署公告 2007年 第101號, 2007.12.29)

31 《2008年糧食制粉出口配額申請條件和申請程序》(商務部公告 2008年 第4號, 2008.1.19)

표 14 식량 수출입 실적, 2008년 1~2월

단위: 만 톤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순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곡물 전체 ¹	67.3	-71.5	37.8	-10.5	29.5	-84.8
쌀 제품 ²	34.5	35.6	13.9	13.4	20.7	56.0
옥수수 제품 ³	6.3	-96.5	359톤	-	6.2	-96.5
밀 제품 ⁴	17.1	-36.4	2,148톤	-96.7	16.9	-17.0
대두 제품	12.2	60.1	546.4	51.4	-534.2	-

주 1. 대두 제품 미포함.

2. 쌀, 쌀가루, 벼 및 벼종자 포함

3.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

4. 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

자료: 農業部. 2008.4.11. “2008年1-2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http://www.agri.gov.cn/xxfb/t20080411_1013964.htm)

○ 2008년 1~3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8.0%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3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치임. 이 가운데 도시와 농촌은 각각 7.8%, 8.7%의 상승률을 나타냈음.

- 동 기간 식품가격은 21.0%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6.8 퍼센트 포인트가 식품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었음.

○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곡물의 수출원가를 높여 수출을 제약하고 국내 곡물 및 식품가격 안정에 효과를 나타낼 지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르며 중국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음.

- 중국의 곡물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임. 따라서 이번 조치가 다분히 심리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의 실현 여부는 중국의 곡물수급 상황, 특히 올해 작황 및 생산량 그리고 국제 곡물가격 동향 등 내외부적 여건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중국은 1999~2003년 까지 4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식량안보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증산정책에 힘입어 식량생산은 2004~2007년까지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식량수급에서 심각한 불균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식량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중국의 국내 곡물가격이 상승한 것은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과 사료용 및 대체연료용 곡물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보면 3년 연속 11%의 고성장으로 경기과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애그플레이션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한 것임.
 -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와 천시원(陳錫文)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과 중국 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각각 2008년 3월 5일 개최된 제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정부공작보고, 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소그룹 토론회에서 곡물수출 중단계획을 밝혔음.
 -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올해 물가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9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식량의 공업용 사용과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천시원 주임은 국내 식량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년의 식량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금년의 중점정책은 물가안정인데 식량가격이 이미 앞서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상 모든 식량수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부연 설명하였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거시 경제의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이 주요한 목적인 이번 조치는 그 목적을 가시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완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수출세 환급제도의 부활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같은 맥락에서 수출통제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수출쿼터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2008년 한 해 동안 실시를 명시한 수출관세 부과조치도 올해 물가안정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연장 시행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작성자: 전형진 hjchon@krei.re.kr

[참고자료]

- 農業部. 2007. 『2007中國農業發展報告』
- _____. 2008.2.4. “2007年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_____. 2008.4.11. “2008年1-2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_____. 품목별 시장모니터링 정보(市場監測信息)(<http://www.agri.gov.cn/xxfb/>)
-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國家統計局. 2008.2.28. “200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中國統計出版社. 2007. 『2007中國農村統計年鑒』
- 《國家稅務總局關於印發‘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的通知》(1994.2.18, 國稅發[1994]031號)
-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出口大米,小麥,玉米增值稅實行零稅率的通知》(財稅[2002]46號, 2002.3.16)
-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取消小麥等原料及其制粉出口退稅的通知》(財稅[2007]169號, 2007.12.14)
- 《2008年出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商務部,海關總署公告 2007年 第101號, 2007.12.29)
- 《2008年我國對原糧及其制粉征收出口暫定關稅》(財政部新聞辦公室, 2007.12.30)
- 《關於對糧食原料及其制粉征收出口暫定關稅》(海關總署公告 2008年 第1號, 2008.1.4)
- 《關於對糧食出口加征出口關稅》(海關總署公告 2008年 第3號, 2008.1.14)
- 《2008年糧食制粉出口配額申請條件和申請程序》(商務部公告 2008年 第4號, 2008.1.19)
- 김용택·김배성·성명환. 2008.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세농업전망2008 (I)』-한국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37-57.
- 김병률·이명기·유찬희. 2008.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세계농업뉴스』 제 91호(2008년 3월호): 3-23.
- 성명환. 2008. “세계 곡물 가격 동향”, 『세계농업뉴스』 제91호(2008년 3월호): 91-97.

3. 제1, 2차 농업센서스 주요 결과 비교

3.1. 개요

□ 제1차 전국 농업센서스(1996)

- 중국 국무원은 1994년 10월 29일 ‘제1차 전국 농업센서스 실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第一次全國農業普查的通知; 國發[1994]60號)’를 하달하고 1997년 제1차 전국 농업센서스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음.
- 《통지》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 규모 및 구조, 농지의 분포 및 사용 현황, 생산성 고정자산의 규모와 구조, 농촌노동력의 수, 자질, 종사분야 및 유동 상황, 향진기업 및 진(鎮)의 제반 현황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명시하였음.
- 《통지》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공동부담 하에 1994~1996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상반기에 전국 농업센서스를 실시하고, 이후 1997년부터 10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음.
- 제1차 전국 농업센서스는 이탈리아 정부와 FAO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1994년부터 3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7년 1.1~1.31일 동안 ‘제1차 전국 농업센서스 방안(第一次全國農業普查方案)’, ‘제1차 전국 농업센서스 방법(第一次全國農業普查辦法)’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농촌가구 2.14억 가구, 행정 촌(村) 74만 개, 향(鄉)·진(鎮) 43,000개, 향진기업 140만 개를 대상으로 38개 항목, 687개 지표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음.
- 제1차 농업센서스 결과는 『第一次全國農業普查資料綜合提要』(1998)로 출판되었고, 전국 농업센서스 관공실(辦公室)은 2001년 8월 26~30일에 걸쳐 제1차 농업센서스 결과를 공보(公報)로 발표하였음(총 4호).

□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2006)

- 중국 국무원은 2005년 4월 29일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실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第

二次全國農業普查的通知；國發[2005] 13號)’를 하달하고 2006년 말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음.

- 《통지》는 2010년 실시 예정인 세계 농업센서스 방안을 참조하여 ①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및 농가의 생산·경영 현황, ②향·진, 촌민위원회와 지역사회 여건, ③농지 이용 현황, ④농업·농촌의 고정자산투자 현황, ⑤농촌노동력의 취업 및 유동 현황, ⑥농민 생활수준 등 6가지의 조사내용을 명시하였음.

○ 제2차 농업센서스는 2005년 4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1.1~1.31일 동안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방안(第二次全國農業普查方案)’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음.

- 2006월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농촌가구 22,592만 호(이 중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22,108호), 향(鄉) 15,365개, 진(鎮) 19,391개, 637,011개 촌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영도소조 관공실은 2008년 2월 21~29일에 걸쳐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결과를 발표하였음(총 6호).
-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최종 결과는 2008년 말 『第二次全國農業普查資料綜合提要』, 『第二次全國農業普查資料匯編』로 발행될 예정임.

3.2. 제1, 2차 농업센서스 결과 비교³²

가.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규모와 구조³³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경제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농촌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촌가구 중

32 전국 농업센서스 관공실이 2001년 8월 26~30일에 걸쳐 발표한 《關於第一次全國農業普查快速匯總結果的公報》(第一~第四號),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영도소조 관공실이 2008년 2월 21~29일에 걸쳐 발표한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一~第六號)의 주요 통계를 참조하였음.

33 제2차 농업센서스에서는 농가(農業生產經營戶) 또는 농업경영체(農業生產經營單位)를 ‘농지 또는 단독 시설에서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가구와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 ①0.1무(=20평) 이상의 농지, 양식수면을 경영하는 가구와 단위, ②1무 이상의 임지, 목초지를 경영하는 가구와 단위, ③소, 말, 돼지, 양 등 중대형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와 단위, ④토끼 등 소동물 및 가금류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와 단위, ⑤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및 자가소비액이 500원 이상인 가구와 단위

에서 농가의 비중은 줄고 비농가가 증가했으며, 농가도 전업농가의 비중은 줄고 겸업농가의 비중은 증가하였음.

- 1996년 말 전체 농촌가구 21,455.7만 호 가운데 농가와 비농가는 각각 90.5%와 9.5%를 차지하였음. 이 중 전업농가는 62.8%, 겸업농가는 37.2%(농업위주 겸업농 30.6%, 비농업위주 겸업농 6.6%)를 차지하였음.
- 2006년 말 전체 농가는 20,106만 호로 1996년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이 중 농업소득 위주의 농가 비중은 58.4%로 1996년에 비해 7.2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였음.

표 15 농가 및 농업경영체 수

구 분	농가 수				농업경영체 수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만 호	%	만 호	%	만 개	%	만 개	%
합 계	약19,400	100.0	20,016	100.0	35.6	100.0	39.5	100.0
업종구분								
재배업	—	—	18,414	92.0	14.4	40.5	7.0	17.9
임업	—	—	411	2.1	11.4	32.0	9.9	25.1
축산업	—	—	990	4.9	3.6	10.1	4.4	11.1
어업	—	—	149	0.7	6.3	17.7	4.3	10.8
서비스업	—	—	52	0.3	—	—	13.9	35.1
전업 및 겸업								
전업농가	—	62.8	—	58.4	—	—	—	—
겸업농가	—	37.2	—	41.6	—	—	—	—
지역구분								
동부지역	약 7,400	약 38	6,550	32.7	17.3	48.6	19.3	48.9
중부지역	약 7,000	약 36	6,060	30.3	11.8	33.1	9.0	22.8
서부지역	약 5,000	약 26	6,128	30.6	6.5	18.3	8.7	22.0
동북지역	—	—	1,278	6.4	—	—	2.5	6.3

주 1. 동부지역은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산둥성, 광둥성, 해남성, 중부지역은 산서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서부지역은 내몽고자치구, 강서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저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Ning하자치구, 신강자치구, 동북지역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나타냄.

2.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북지역의 요녕성은 동부지역에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중부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음.

자료: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26. “關於第一次全國農業普查快速匯總結果的公報(第二號)”; 國家統計局, 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2.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二號)”.

- 농가의 지역분포를 보면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중부와 서부지역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996년 말 동부지역의 농촌가구 수는 8,740.9만 호로 전국의 40.7%를 차지했고, 중부와 서부지역은 각각 7,420.8만 호, 34.6%, 5,294.1만 호, 24.7%를 차지하였음.
- 1996년 말 동부지역의 농촌가구 중 농가비중은 84.7%, 중부와 서부지역은 각각 94.5%와 95.8%를 차지하였음. 또한 동부지역 농가 중 전업농은 55.2%, 농업위주 겸업농은 34.9%, 비농업위주 겸업농은 9.9%를 나타냈으며 중부지역은 각각 66.7%, 28.6%, 4.7%, 서부지역은 각각 70.3%, 26.0%, 3.7%를 나타냈음.
- 2006년 말 중국의 농업경영체 수는 39.5만 개로 1996년에 비해 10.6% 증가했음. 업종별로는 재배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업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지역별로는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동부지역에서 농업경영체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가운데 재배업 비중은 1996년 40.5%에서 2006년 17.9%로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농업관련 서비스업이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지역적으로는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순으로 농업경영체 수가 많게 나타나 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발전의 지역격차를 반영하고 있음.

표 16 농업경영체의 소유구조 및 지역분포, 1996년

소유구조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개	%	개	%	개	%
합 계	173,183	100.0	117,869	100.0	365,299	100.0
국유경제	11,543	6.7	16,475	14.0	8,760	13.4
집단경제	84,247	48.7	86,318	73.2	42,046	64.4
민영경제	3,786	2.2	1,151	1.0	1,032	1.6
개체경제	48,161	27.8	10,769	9.1	-	15.0
연합경영	24,304	14.0	3,055	2.6	3,629	5.6
외상투자	338	0.2	44	0.04	18	0.03
기타	804	0.5	57	0.05	23	0.04

주: 기타는 홍콩, 마카오, 대만 자본의 투자를 나타냄.

자료: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26. “關於第一次全國農業普查快速匯總結果的公報(第二號)”.

- 개혁개방 이래 농업경영체의 소유구조는 국유 및 집단 소유의 공유제(公有制)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점차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로 전환하여 개체경제(個體經濟; 우리의 개인사업자), 민영경제(私營經濟), 외상투자경제(外商經濟; FDI), 각종 연합경영(聯營) 등이 발전하고 있음.
- 1996년 말 35.7만 개의 농업경영체 가운데 국유 및 집단소유가 각각 3.7만 개, 21.3만 개로 전체의 70.0%를 차지하였음. 이외에 개체 및 민영이 7.5만 개로 21.0%, 외상투자자 0.1만 개로 0.4%, 연합경영체가 3.1만 개로 8.7%를 차지하였음.
- 각 지역별로도 농업경영체의 소유제는 공유제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가 발전한 동부지역이 중서부지역에 비해 비공유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나. 농촌노동력 및 농업종사 인구

- 개혁개방 이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진전으로 농촌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촌노동력의 유출이 증가하고 농업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말 중국의 농촌노동력은 53,1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농업종사자는 34,874만 명으로 1996년 말 42,441만 명에 비해 17.8% 감소하였음.
- 2006년 말 중국의 농촌취업자는 47,852만 명으로 농촌노동력의 90.1%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제1차 산업 종사자는 70.8%, 제2, 3차 산업 종사자는 각각 15.6%, 13.6%를 차지했음.
- 지역별로는 경제가 발전한 동부지역과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중부지역의 농업종사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으로 낙후한 서부지역의 경우 오히려 2006년 말 농업종사자수가 1996년 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노동력의 유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청장년층 남성 노동력의 대량 유출로 농업종사자의 부녀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1996년 말 전국 농업종사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2006년 남녀 비율은 46.8:53.2로 부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음. 이러한 추세는 각 지역에서 동일하

게 나타났으며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여 동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2006년 말 전국 농촌노동력 가운데 51세 이상이 25.0%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전국 농업종사자 중에서는 이보다 높은 32.5%로 농촌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2006년 농촌노동력과 농업종사자의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32.7%와 41.1%, 중학교 졸업이 49.5%와 45.1%로 절대 다수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준으로 노동력의 질이 아직도 매우 낮은 실정임.

표 17 농촌노동력 및 농업종사자

	농촌노동력					농업종사자				
	전국	동부	중부	서부	동북	전국	동부	중부	서부	동북
합계(만 명)										
1996년	—	—	—	—	—	42,441	14,914	15,524	12,003	—
2006년	53,100	19,828	14,582	15,142	3,548	34,874	9,522	10,206	12,355	2,791
성별구성(%)										
1996년	—	—	—	—	—	47.3:41.6	—	—	—	—
2006년	50.8:49.2	50.9:49.1	50.4:49.6	50.9:49.1	52.0:48.0	46.8:53.2	44.9:55.1	45.7:54.3	48.6:51.4	49.7:50.3
연령구성(%)										
20세 이하	13.1	13.2	13.8	12.8	11.1	5.3	4.2	4.9	6.4	6.4
21-30세	17.3	18.8	15.4	16.9	18.4	14.9	13.5	13.8	16.5	17.2
31-40세	23.9	23.4	23.7	24.5	24.6	24.2	22.0	24.5	25.3	25.4
41-50세	20.7	21.4	20.9	19.1	23.5	23.1	25.0	23.5	20.6	25.3
51세 이상	25.0	23.2	26.2	26.7	22.4	32.5	35.3	33.3	31.2	25.7
학력수준(%)										
문맹	6.8	4.6	6.7	10.7	2.6	9.5	7.7	8.9	12.8	2.9
초등학교	32.7	28.3	29.8	41.0	33.2	41.1	38.5	37.0	47.0	39.0
중학교	49.5	53.9	52.0	39.7	56.7	45.1	48.8	49.2	36.7	54.6
고등학교	9.8	11.8	10.4	7.5	6.4	4.1	4.8	4.7	3.3	3.2
전문대이상	1.2	1.4	1.1	1.1	1.1	0.2	0.2	0.2	0.2	0.3

주: 농업종사자 1996년 전국 성별 구성은 경제활동인구의 농촌취업자 비율 88.9%의 남녀 비율을 나타냄.

자료: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29. “關於第一次全國農業普查快速匯總結果的公報(第三號)”; 國家統計局, 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2.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二號)”.

표 18 농촌취업자 수, 2006년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농촌취업자수(만 명)	47,852	17,652	13,043	13,927	3,230
제1차 산업(%)	70.8	52.4	76.8	86.0	80.1
제2차 산업(%)	15.6	28.8	10.6	5.2	7.8
제3차 산업(%)	13.6	18.8	12.6	8.5	12.1

자료: 國家統計局,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7.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五號)”.

- 농촌취업자 중 고향에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향을 떠나 현(縣) 내부, 성(省) 내부 그리고 성 외부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1996년 말 전국 농촌취업자 56,085만 명 가운데 고향 농촌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가 48,863만 명으로 87.1%를 차지하였고, 기타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가 7,223만 명으로 12.9%를 차지했음.
 -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지역에 비해 경제가 발전한 동부지역에서 고향 이외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 수가 높게 나타났음. 1996년 말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농촌취업자 중 고향 농촌 지외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 수의 비중은 각각 15.2%, 12.1%, 10.4%를 차지하였음.
- 유출 농촌노동력 취업자는 21~40세 사이의 청장년층 남성 노동력이 많고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말 유출 농촌노동력 취업자수는 13,181만 명으로 남녀 비율은 각각 64%와 36%, 21~40세의 청장년층 비율은 66%,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비율은 80.1%를 차지하였음.
 - 지역으로 보면 중부지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부지역, 동부지역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농촌노동력의 유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표 19 유출 농촌노동력 수 및 구성, 2006년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유출 농촌노동력 취업자 수(만 명)	13,181	3,846	4,918	4,035	382
성별구성(%)					
남성	64.0	65.8	62.8	63.1	70.2
여성	36.0	34.2	37.2	36.9	29.8
연령구성(%)					
20세 이하	16.1	14.2	17.6	16.1	16.7
21-30세	36.5	36.1	36.6	36.7	35.4
31-40세	29.5	27.3	29.3	32.2	25.4
41-50세	12.8	15.4	11.9	11.1	15.3
51세 이상	5.1	7.0	4.6	3.9	7.2
학력수준(%)					
문맹	1.2	0.9	1.1	1.7	0.5
초등학교	18.7	15.0	16.5	24.9	20.1
중학교	70.1	70.9	73.0	65.5	71.8
고등학교	8.7	11.4	8.4	6.9	5.9
전문대 이상	1.3	1.8	1.0	1.0	1.7

자료: 國家統計局,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7.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五號)”.

○ 유출 농촌노동력의 약 50%는 성 경계를 벗어나 주로 제2, 3차 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말 전체 유출 농촌노동력 가운데 성 외부 원거리 지역으로의 취업자가 49.3%를 차지했음. 지역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한 동부지역은 성 내부 지역으로의 취업이 높은 반면(81.4%), 경제가 낙후한 중부와 서부지역은 성외부 지역으로의 취업 비율이 높았음(각각 67.6%, 59.6%).

- 2006년 말 전체 유출 농촌노동력의 56.7%는 제2차 산업에, 40.5%는 제3차 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추세는 동부, 중부, 서부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표 20 유출 농촌노동력의 취업 지역 및 구조, 2006년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유출 농촌노동력의 취업 지역(%)					
향(鄉) 외부 현 내부	19.2	29.9	13.5	15.2	26.9
현(縣) 외부 시 내부	13.8	18.4	9.9	12.4	31.5
시(市) 외부 성 내부	17.7	33.1	9.0	12.8	24.2
성(省) 외부	49.3	18.6	67.6	59.6	17.4
유출 농촌노동력의 취업 구조(%)					
제1차 산업	2.8	2.5	2.2	3.6	4.2
제2차 산업	56.7	55.8	57.1	58.4	44.3
제3차 산업	40.5	41.7	40.7	38.0	51.5

자료: 國家統計局,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7.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五號)”.

다. 농업기계화 및 시설농업

- 개혁개방 이래 중국 농업의 성장과정에서 전통적인 생산요소(노동, 토지)의 투입은 감소하고, 현대적인 생산요소(농기계, 화학비료 등)의 투입은 증가하고 있음. 2006년 말 현재 5종의 주요 농업기계의 장비 수준이 1996년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

표 21 주요 농기계 수량

단위: 만 대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1996	2006	1996	2006	1996	2006	1996	2006	2006
중대형트랙터	68	140	26	36	29	29	13	31	44
－ 부속 농기구	－	147	－	34	－	33	－	32	48
소형트랙터	1,180	2,550	504	868	518	1,003	158	395	284
－ 부속 농기구	－	2,509	－	587	－	1,342	－	338	242
복합수확기	11	55	7	23	4	24	1	4	4

자료: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26. “關於第一次全國農業普查快速匯總結果的公報(第三號)”; 國家統計局, 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2.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二號)”.

표 22 농작업의 기계화 수준

단위: %

구 분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1996	2006				
총 경지면적 중 비중						
- 기계갈이	42.1	59.9	73.8	60.2	39.3	77.5
- 기계관개	26.6	26.6	54.9	32.0	13.1	12.7
- 분수관개	-	1.8	2.8	2.9	0.7	1.0
- 점적관개	-	0.8	0.2	0.3	2.0	0.1
총 파종면적 중 비중						
- 기계파종	16.2	32.6	36.1	26.2	23.3	59.1
- 기계수확	12.0	24.9	34.9	30.5	10.4	26.3

주: 각 지역별 통계는 2006년 말 수치임.

자료: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26. “關於第一次全國農業普查快速匯總結果的公報(第三號)”; 國家統計局, 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2.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二號)”.

- 2006년 말 중대형 트랙터 수는 140만 대로 1996년 말에 비해 107.5% 증가, 소형트랙터 수는 2,550만 대로 116.4% 증가, 중대형 트랙터 부속 농기구는 147만 대로 110.9% 증가, 소형 트랙터 부속 농기구는 2,509만 대로 201.7% 증가, 복합수확기는 55만 대로 391.4% 증가했음.

○ 현대적인 투입요소의 투입 증대로 농작업의 기계화율도 향상되고 있음.

- 2006년 말 현재 기정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59.9%로 1996년에 비해 17.8퍼센트 포인트 증가, 기계 파종면적과 기계 수확면적은 1996년에 비하여 각각 16.4퍼센트 포인트, 12.9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음.
- 그러나 기계화 관개면적은 전체의 26.6%로 1996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06년 말 전국 온실면적은 81천 ha, 큰 비닐시설 면적은 465천 ha, 중소 비닐시설 면적은 231천 ha임. 지역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한 동부지역에 시설면적이 집중되어 각각 38.3%, 56.3%, 45.0%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재배 농작물은 채소와 과일이 대부분으로 각각 723천 ha, 137천 ha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 원예 묘목 과 식용균 재배면적이 각각 47천 ha, 46천 ha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 채소와 과일 재배면적은 경제가 발전한 동부지역에 집중 분포하여 각각 53.3%, 56.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3 시설농업 현황, 2006년

단위: 천 ha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온실면적	81	31	11	21	18
대규모 비닐시설	465	262	75	63	65
중소규모 비닐시설	231	104	48	57	22
종류별 시설면적					
채소	723	385	123	101	114
식용균	46	22	14	8	2
과일	137	77	23	16	21
원예 묘목	47	17	12	12	6

자료: 國家統計局, 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2.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二號)”.

라. 경지면적

- 중국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984년 전국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시작하여 1996년 완료하였으며 국토자원부, 국가통계국, 전국농업센서스 관공실은 《關於土地利用現狀調查主要數據成果的公報》(2001.8.1) 형식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1996년 10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발표된 토지이용 현황조사 수치인 130,039.2천 ha는 매년 발표되던 통계연보 수치보다 3,506.8만 ha가 많은 수치임.
- 중국 통계당국은 1996년 이후 위의 현황조사 수치를 경지면적 관련 공식통계로 채택하여 경지면적 통계데이터를 통일하였음.
-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에서는 국토자원부가 2006년 실시한 토지변경조사 결과를 경지 관련 통계로 채용하였음. 국토자원부, 국가통계국, 국무원 제2차 전국 농업센서스 영도소조 관공실은 관련 통계를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六號)》(2008.2.29)을 통해 발표하였음.

표 24 농경지 분포 현황

단위: 천 ha

	1996년		2006년	
	면적(천 ha)	비중(%)	면적(천 ha)	비중(%)
전국 경지면적	130,039.2	100.0	121,775.9	100.0
지역구분				
동부지역	36,955.9	28.4	26,395.2	21.7
중부지역	56,118.9	43.2	28,991.6	23.8
서부지역	36,964.5	28.4	44,937.9	36.9
동북지역	—	—	21,451.2	17.6
종류별 면적				
논	—	—	31,667.9	26.0
관개지	—	—	22,963.3	18.9
밭	—	—	67,144.7	55.1
경사도 구분				
0-15°	—	—	106,591.8	87.5
15-25°	—	—	11,143.2	9.2
25° 이상	6,071.5	4.7	4,040.9	3.3

자료: 國土資源部, 國家統計局,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1. “關於土地利用現狀調查主要數據成果的公報(第5號)”; 國土資源部, 國家統計局, 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9.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第六號)”.

○ 2006년 말 중국의 경지면적은 1억 2,177.6만 ha로 1996년에 비해 6.4%, 826.3만 ha 감소하였음.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부와 중부지역 경지면적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서부지역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2006년 말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의 경지면적이 36.9%로 가장 많고 동부, 중부, 동북 지역은 각각 21.7%, 23.8%, 17.6%를 차지하였음.

— 2006년 말 전체 경지면적에서 밭 면적이 비교적 많은 55.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논과 관개지 면적이 각각 26.0%와 18.9%를 차지했음.

— 경지의 경사도는 0-15°가 전체 경지면적의 87.5%를 차지했으며, 25° 이상은 3.3%로 1996년에 비해 1.4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였음.

○ 2006년 말 중국의 경지면적은 1억 2,177.6만 ha로 1996년에 비해 6.4%, 826.3만 ha 감소하였음.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부와 중부지역 경지면적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서부지역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199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경지면적은 0.106ha에 불과하였으며 0.13ha 보다 큰 12개 성은 주로 동북, 서북, 서남지역 등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식량 생산량이 낮은 지역에 분포하였음.
- 1인당 경지면적이 1무(=200평=0.067ha) 이하인 7개 성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와 동남연해지역의 4개 성으로 자연조건이 양호하고 식량생산량이 많지만 경지면적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임.

작성자: 전형진 hjchon@krei.re.kr

[참고자료]

《關於開展第一次全國農業普查的通知》(國務院, 國發[1994]60號, 1994.10.29)

《關於開展第一次全國農業普查的通知》(國務院, 國發[2005]13號, 2005.4.29)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26~30. “關於第一次全國農業普查快速匯總結果的公報(1~4號)”.

國家統計局, 國務院第二次全國農業普查領導小組辦公室. 2008.2.21~29. “第二次全國農業普查主要數據公報(1~6號)”.

國土資源部, 國家統計局, 全國農業普查辦公室. 2001.8.1. “關於土地利用現狀調查主要數據成果的公報(第5號)”

4. 식품안전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4.1. 법률 제정 추진 배경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 이에 중국 정부는 현행 식품안전관련 법률과 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련의 정책조치를 단행하였음.
 - 특히 식품안전 관리의 근간이 될 식품안전법 제정에 착수하여 현재 국무원은 원칙적으로 이 법 초안을 심의하여 통과시킨 상황임.
- 중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995년 10월 30일 『식품위생법』(이하 식품위생법이라 칭함)을 제정 공포하였음.
 - 이 법률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품안전 법률체계의 핵심을 계승 발전시켜 식품안전에 대하여 중요하면서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다해 왔음.
 - 그러나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단히 변화함에 따라 현행 식품안전 법률체계의 일부 조항은 지금의 식품안전 추세의 발전 수요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현행 식품위생법의 문제점
 - 식품표준이 불완전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며, 표준 가운데 일부 지표는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음.
 - 식품생산경영자로 하여금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음.
 - 식품생산경영자를 식품안전에서 제일의 책임자로 하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엄격하지 못하여 불안전 식품을 생산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미약함.
 - 식품검사기구 또한 규범화되어 있지 못하고 검사방법과 규정도 통일적이지 않아 검사

결과가 충분히 공정하지 못한 점도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불완전한 법률체계로 인해 최근 중국에서는 저질분유 사건, 돼지고기 물 주사 사건, 소라 중독 사건, 가짜 오리알 사건, 중금속 광어 사건 등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음.
 - 이 밖에도 중국농산물이 품질문제로 수출장해를 겪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중국식품의 국제적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사고는 중국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전국의 인민대표 3000여 명은 식품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의안, 의견 및 건의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음.
 - 2008년 3월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도 천여 명에 가까운 인민대표가 식품안전 및 위생 입법과 관련한 19건의 의안과 78건의 건의를 공동 제출하였음.
- 식품위생법 개정 작업은 2004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어왔음.
 - 2004년 7월 21일 소집된 국무원 제59차 상무위원회와 2004년 9월 1일 국무원이 발표한 “식품안전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을 토대로 2004년 7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식품위생법 수정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착수하였음.
 - 2005년 11월과 2007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계 대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법 수정(초안)이란 명칭을 식품안전법(초안)으로 변경하였음.
 - 식품안전법(초안)은 2007년 10월 31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음.
- 2008년 4월 15일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국내외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식품안전법(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포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5월 20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4.2.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가. 법률체계

-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법률적 체계는 이미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상황임.
-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는 『상품 품질법』, 『표준화법』, 『계량법』, 『소비자권익 보호법』, 『농산물 품질안전법』, 『형법』, 『식품위생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동물방역법』 등이 있음.
- 식품안전 관련 행정법규에는 ‘식품 등 상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특별규정’, ‘공업 상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인증인가조례’,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동물의약품 관리조례’, ‘농약 관리조례’, ‘수출화물 원산지조례’, ‘표준화법 실시조례’, ‘무면허경영 조사처리단속법’,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 조례’, ‘위험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입관리 조례’ 등이 있음.
- 식품안전 관련 규칙으로는 ‘식품 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 실시 세칙(시행)’, ‘공업품 생산허가 관리조례 실시조치’, ‘식품위생허가증관리조치’, ‘식품첨가제 위생관리 조치’, ‘수출입 육류산물 검사검역관리 조치’,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관리조치’, ‘유통영역 식품안전 관리조치’, ‘농산물 산지안전 관리조치’, ‘농산물 포장과 표식 관리조치’,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록등기 관리규정’ 등이 있음.

나. 조직체계

-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는 생산, 유통, 가공, 위생, 수출입, 검사, 인허가 및 인증 등 각 단계 및 영역별로 분리 시행되고 있음.
 - － 현재 농산물 재배관련 규정은 농업부에서, 식품생산 및 가공관련 규정은 품질검사검역부에서, 유통 및 판매 과정은 공상부에서 각기 분산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이 식탁에 오른 후의 위생 및 관련 규정은 위생부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식품의 원료 및 재료가 되는 농산물의 품질 안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부를 수장으로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주관부문이 농산물의 안전표준, 산지 및 생산, 포장과 표시, 검사와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국가식품안전감독관리국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08년 3월 1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가의 식품 및 약품의 관리감독을 위생부가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및 약품의 관리감독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음.
 - 이는 식품과 약품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관계되므로 식품안전의 종합적인 감독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관리와 약품관리의 관계를 순조롭게 하며, 식품과 약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부가 식품안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식품안전의 중대사고의 책임을 규명토록 한 조치임.
 - 따라서 위생부는 식품안전 기준과 약품법전 제정을 통해 국가의 기본 약품제도를 수립하는 반면,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은 식품위생 허가를 책임지고 요식업, 식당 등 소비 채널의 식품안전을 관리 감독하며 약품의 과학적인 연구와 생산, 유통, 사용 및 약품안전 등을 관리 감독함.
- 결국 위생부는 식품안전의 종합적인 감독 책무를 수행하고,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그리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농산물 생산 채널과 식품생산가공 채널, 식품유통 채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국가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중국은 식품품질안전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중국의 식품표준화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무원은 유관 행정부문과 분담하여 식품표준화작업을 관리하고 있음.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의 식품인증인가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음.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시장정돈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고, 인증행위를 규범화

하며 식품과 농산물의 인증인가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논밭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의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인증인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인증은 사료상품인증, 우수농업규범(GAP)인증, 무공해농산물인증, 유기농식품인증, 식품품질인증, HACCP 관리시스템인증, 녹색식품인증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중국은 국내 식품감독관리를 위해 식품검사계측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국가급 검사기구를 수장으로 하고, 성급과 부문의 식품검사기구를 주체로 하며 시와 현급 식품검사기구가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식품안전검사계측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다. 수출식품 관리체계

○ 중국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총괄하고 있음.

- 수출 농식품은 『수출입상품 검사법』 규정에 의거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하부조직인 식품출입국검사검역국의 통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수출 농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수출입검사검역국은 전국 32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농식품 수출기업은 반드시 식품출입국검사검역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출하고자 하는 농식품은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함.

4.3. 식품안전법(초안)의 주요 내용

가. 법률의 요지

○ 식품안전법(초안)의 최대 핵심 사항은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의 총책임을 맡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점임.

○ 먼저 지방정부가 총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부문은 각각의 책임을 지며, 생산기업이 일선 책임자가 되는 식품안전의 3중 책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규정은 농산물 재배는 농업부문이, 식품 생산·가공은 품질검사부문이, 유통 판매는 상업부문이, 그리고 제품이 최종 식탁에 오르는 것은 위생부문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식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야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다음으로 식품안전법(초안)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음.

- 위반자는 해당 제품 가치의 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징하고, 식품경영자가 가짜 식품 또는 불안전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 손실 보상은 물론이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 가격의 10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결국 새 식품안전법(초안)은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위법 행위가 범죄를 형성할 경우, 규정에 의거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 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생산·경영의 도구, 설비, 식품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고 상품가치 금액의 10배에서 2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법률의 구성

- 식품안전법(초안)(2007년 9월 4일고)은 총 10장, 순서에 따라 총칙,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검사검역, 식품생산경영, 식품수출입,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관리감독, 법률책임 및 부칙으로 구성됨.
- 제1장 “총칙”은 8조로 구성되며 이 법 제정의 목적을 명기하였음. 법 작용의 대상은 식품 및 식품첨가제의 생산(가공), 경영(유통 및 음식서비스), 식품포장재료, 용기, 식품생산도구 및 설비, 식품세척제, 소독제 등 식품관련제품의 생산과 경영, 그리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관련 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전체 식품안전관리감독기구와 직책에 대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대하여 총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

- 식품안전 위험평가, 식품안전 표준제정, 식품안전 정보 발표,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유관식품검사검역기구의 인가조건 및 검사검역 규범의 제정은 국무원의 수권기관이 일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장 “식품안전 위험평가”는 제9조부터 11조까지로 구성되며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의 수립을 명기하고 있음.
- 제3장 “식품안전표준”은 제12조부터 18조까지로 구성되며 식품안전표준은 유일한 강제 집행의 표준으로 국가표준과 지방표준으로 구분되며 기타 식품안전 관련 강제성 표준은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장 “식품검사검역”, 제19조부터 23조까지로 구성되며 국무원이 인증한 관리감독부문이 인가한 식품검사검역기관만이 식품검사검역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식품검사검역기구에 대한 인가조건과 절차는 국무원의 수권기관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5장 “식품생산경영”은 제24조부터 49조까지로 총26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식품의 생산과 경영에 관한 각종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하고 종업원의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 음식서비스제공자 또한 제품 구입 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외부판매 음식 포장에는 음식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연락전화번호 및 식품제조가공일시와 보증기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5장에서는 식품리콜제도를 구축하여 식품생산자는 그 생산한 식품에 불안전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표하고 관련 생산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음.
- 제6장 “식품수출입” 제51조부터 56조까지로 식품수입과 수출 및 경영자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수입부문에 있어서 수입상은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은 식품안전의 국가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증하여야 하며, 중국과 수출국간 체결한 협정과 의정서 규정

에 따른 검사 검역 요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출부문에서는 수출하는 식품이 수입국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증하고 중국과 수입국간 체결한 협의와 의정서에 규정한 검사검역 요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밖에 출입국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식품 수입상과 수출상의 식품통관기록제도를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음.

○ 제7장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처치”는 제56조부터 64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8장 “관리감독”은 제65조와 66조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식품의 생산, 유통 및 음식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하여 각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식품안전 정보공포제도 수립 규정은 새로운 조항임.

○ 제9장 “법률책임”은 제77조에서 91조까지로 구성되며, 각 주체의 법률책임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 끝으로 이 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기존의 『식품위생법』은 폐지하도록 하였음.

다. 식품위생법과의 차이와 관계

○ 식품안전법(초안)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개정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이 두 법률의 차이와 연관성은 우선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이란 두 개념의 함의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식품안전은 종합적 개념임.

- 식품안전은 식품위생, 식품품질, 식품영양 등 관련 내용과 식품의 파종, 재배,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소비 등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임.
- 반면에 식품위생, 식품품질, 식품영양 등은 위에서 언급한 전체 개념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못함. 식품위생, 식품품질, 식품영양 등은 내재와 외연상 교차하는 부분이 많아 식품안전의 중복 관리감독을 발생시킴.

○ 둘째, 식품안전은 사회적 개념임.

- 국가와 시대에 따라 식품안전의 당면과제와 관리 수요가 다르게 나타남. 선진국의 식품안전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은 모조 저질식품이나 유해식품의 불법 생산 경영 같은 시장경제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치중함.
- 중국의 식품안전문제는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 셋째, 식품안전은 정치적 개념임.

-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식품안전은 기업과 정부의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임. 식품안전과 생존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일성과 강제성을 지니며 통상적으로 정부 보장 또는 정부 강제에 범주에 속함.
- 반면에 식품품질 등은 발전권과 관련이 있고 단계성과 선택성을 지니며 통상적으로 상업적 선택 또는 정부 계몽의 범주에 속함.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는 식품안전의 개념이 식품위생과 식품품질의 개념을 대체해 나가는 추세이며 식품안전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초안)과 식품위생법의 내용은 이상과 같은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함.

-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의 구축, 식품안전표준 제정과 내용의 규범화, 식품검사기구의 조건과 책임의 강조, 식품 생산경영의 각종 행위의 엄격한 규정, 식품첨가제 사용에 대한 요구 증가, 식품리콜제 등 새로운 내용의 확립, 식품수입상과 그 제품, 식품수출상과 그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 확립,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처리기구의 건립, 식품안전 관리감독의 주체의 규범화와 정부직능부문의 위법 책임 확대, 기업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의 강화와 처벌방식의 과학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4.4. 파급영향 및 시사점

- 식품안전법(초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안전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생산 업체에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이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의 초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였음.

- 또한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한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사용이 금지됐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범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식품의 불량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생산 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됨.
- 식품안전법(초안)에는 식품의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수립을 통해 소비자의 신고정신을 고취하고 생산자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의식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초안에서는 생산 및 유통업자가 식품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했음.
- 또한 리콜된 식품은 즉각 폐기처분해 문제의 식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였음.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법 제정을 비롯하여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대폭 강화해나가고 있음.
- 최근 중국정부는 국제식품법전표준을 참고하여 농산품 및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표준 1800여 항목과 항업표준 2900여 항목을 제정 공표하였음.
- 이로써 중국농산물의 공급과 품질안전은 완전히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각국 선수, 심판 및 관중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체제를 재정비하여 중국 식품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임으로써 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정부는 앞으로 수출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불합격된 식품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중국산 농식품 소비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 온 실정임. 식품안전법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중국 농식품의 품질

-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구비한 중국산 농식품의 소비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산 원료농산물 수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가공농산물을 포함한 중국산 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
 - 또한 식품안전법 제정 공포는 중국에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식품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식품안전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전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식품안전법 시행 이후 훨씬 강화된 검사검역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작성자: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cgchung@krei.re.kr

[참고자료]

- 農業部信息中心. 2007.10.17. “我國農產品質量安全基本情況與最新進展”(http://www.csh.gov.cn)
- 國務院新聞辦公室. 2007.8.20. 《中國的食品質量安全狀況(白皮書)》
- 『食品安全法(草案)』
- 『農產品質量安全法』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1. 2007년 농업·농촌경제 동향³⁴

1.1. 생산 동향

- 2007년도 식량생산은 기상재해가 빈번했고 병충해 발병률이 높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50,150만 톤을 생산하여 전년 보다 350만 톤 증가했음.
 - － 1985년 이래 처음으로 2004년부터 4년 연속 증산을 실현했으며 4년 동안 증산한 식량은 모두 6,685만 톤에 달함.
 - － 2007년 벼 생산량은 1.87억 톤으로 전년대비 400만 톤 증가했고 이 중 흑룡강성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40만 톤이 증산되었음. 그러나 옥수수 생산량은 1.47만 톤으로 전년대비 감소했고 특히 길림성은 가뭄피해가 심해 180만 톤 감산되었음.
- 식량증산과 함께 농업생산구조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2007년도에는 ‘식량작물 생산이 증가하면, 경제작물 생산이 감소(糧上經下)’하거나 반대로 ‘경제작물 생산이 증가하면 식량작물 생산이 감소(經上糧下)’하는 국면에서 벗어났음.
 - － 2007년도 경제작물의 총생산량, 단위당 생산량, 수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음.
 - － 특히 면화는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재배농가가 증가했고 재배면적도 549만 ha로 전년대비 약 67,000ha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비 27만 톤 증가한 700만 톤을 기록했음.
- 2007년도 유지작물의 재배면적은 1,340여 만 ha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했고 생산량도

34 陳勁松. 2008. “2007年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與2008年展望,” 『中國農村經濟』 第2期와 方言. 2008. “2007年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與2008年展望,” 『宏觀經濟管理』 第1期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陳勁松은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에 재직하고 있으며, 方言은 中國國家發展與改革委員會 農村經濟司 副司長을 역임하고 있음.

- 2,950만 톤으로 전년대비 100만 톤 감소했음. 특히 여름에 수확하는 유채씨(油籽) 생산량은 2년 연속 감소했는데 2007년 재배면적은 620.4만 ha로 전년대비 18.1만 ha 감소했고 생산량은 1,140만 톤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음.
- 장강유역에서 유채와 경합관계가 있는 밀이 우량종자보조금 지급과 최저수매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유채에 비해 수익이 현저하게 높아 밀 재배가 증가했음.
 - 또한 밀 수확은 기계화 수준이 높아 노동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유채 수확은 기계화수준이 낮아 많은 노동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지 못했음.
- 2007년도 대두 재배면적은 838만 ha로 전년대비 74여 만 ha 감소하여 8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생산량도 전년대비 200여 만 톤 감소(13%)하여 1,400만 톤에 미치지 못했음.
- 대두 주산지인 동북지역에서 대두보다 소득이 높은 옥수수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대두 재배면적이 감소했으며 특히 흑룡강성에서만 40.2만 ha가 감소했음.
 - 동북지역의 기온으로 봄철 파종이 지연된 데다 여름에는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에 불과해 작황이 좋지 않아 단수가 20%이상 감소했음.
- 2007년 식용 당(糖) 재배면적은 188만 ha로 전년대비 13.4만 ha 증가하여 생산량도 1.1억 톤으로 전년대비 800여 만 톤 증가했으며 이 중 광서자치구에서만 600만 톤이 증산되었음. 2007년 채소 생산량은 59,9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544만 톤 증가(2.6%)했으며 과일 생산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 2007년 육류, 가금의 알(家禽蛋), 유제품류 생산량은 각각 8,130만 톤, 3,030만 톤, 3,650만 톤으로 각각 전년대비 1.0%, 2.9%, 10.5%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모두 감소하였음. 수산물 생산량은 5,400만 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음.

1.2. 생산요소

- 2007년도 중국의 농기계 총 동력은 7.6억 킬로와트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고, 농

업기계화 수준도 현저하게 향상되었음.

- 2007년 기경, 기계파종, 기계수확 총 면적은 1.63억 ha에 달했고 농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40.7%로 전년대비 1.4% 증가했음.
- 세부적으로 기경, 기계파종, 기계수확 면적은 각각 6,968만 ha, 5,226만 ha, 4,087만 ha로 기계화 수준은 각각 57%, 33%, 27%에 달했음.

○ 2007년 말 중국의 화학비료(요소비료,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복합비료 등) 출하가격은 2006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음.

- 요소비료는 최근 공급 과잉으로 2007년 전반기에도 2006년에 이어 가격이 대폭 하락했지만 후반기에 반등했으며,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칼륨비료는 수급불균형, 운송장애 등의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였음.
- 2007년도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한 것은 국제가격의 상승, 화학비료 생산비용 상승, 원재료 부족, 수출확대(특히 요소비료) 등이 주요 원인임. 특히 중국 정부는 수급조절을 위해 요소비료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 화학비료를 비롯해 농약, 디젤유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은 2007년도 농산물 가격상승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 최근 5년 동안 농자재 가격의 상승은 1무(=200평=0.067ha)당 식량 생산비용을 23.9%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출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농촌노동력 중 특히 일정한 문화적 소양과 지식수준을 갖춘 청년층 노동력이 재배업, 축산업 등 전통적인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도시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노동력의 감소는 물론 노령화와 부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호남성 래양시(來陽市) 수동장향(水東江鄉)과 마수향(馬水鄉) 지역의 청년노동력 중 도시를 포함해 타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력 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음. 절강성 등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서는 소득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전통적인 재배업 등에 종사하려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농업생산성의 하락은 물론 농촌사회의 발전도 영향을 받을 것임.

1.3. 농산물 가격

- 2007년 중국의 주요 농산물가격은 대부분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었음.
 - 2007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4.8% 상승했는데 이 중 85.4%에 해당하는 4.1%는 식품가격의 상승(전년대비 12.3%) 때문이며 식품가격의 상승은 주로 돼지고기와 식물 식용유 가격의 상승이 주도했으며 다음으로 과일, 수산물, 식량 순임. 이중 돼지고기 가격은 2007년 한 해 평균 48.3% 상승했음.
 - 2007년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은 돼지의 사육기간이 길고, 사료가격의 상승 및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발생 등의 영향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2006년 말 산 돼지 수가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한데 이어 2007년 상반기에 전국 25개 성에서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하여 더욱 더 감소하였음.
 - 시간의 추이에 따른 품목별 가격상승 추세를 보면, 2007년 7월 현재 식량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6.0% 상승했고, 식용 식물유, 육류 및 가공류 관련제품, 가공의 알, 수산물, 신선채소는 각각 30.1%, 45.2%, 30.6%, 5.4%, 18.7% 상승한 반면, 신선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2.2% 하락했음.
 - 2007년 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계란의 도매시장 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7.7%, 48.0%, 44.5%, 1.2% 상승했고, 해수어와 담수어의 도매가격은 각각 3.4%, 9.9% 상승했음. 과채류와 엽채류의 도매시장가격도 각각 18.8%, 23.9% 상승하였고, 과일 도매시장 가격도 13.4% 상승했음.
- 유지작물(대두 포함)을 제외하면 2007년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리고 면화와 유지작물을 제외하면 국내 생산량은 모두 수요량을 초과했고 면화, 식물 식용유, 대두는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량을 충족시켰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의 상승 외에 2007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요 농산물의 수급이 겨우 균형을 유지하였고, 일부 품목은 장기간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었음.

- 식량 생산은 2004년 이후 4년 연속 증산을 실현했지만 소비도 매년 증가하여 2006년 5억 톤을 초과했으며 2007년에도 식량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따라서 2007년에 식량생산량이 5억 톤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급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공급부족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었을 뿐임.
 - 품목별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밀과 쌀의 소비는 약간 감소한 반면 옥수수 소비는 급증하였음. 대두를 제외하고 밀, 쌀, 옥수수는 수급 균형을 유지했거나 약간의 비축을 실현하였음.
 - 식량의 식용소비는 도시인구의 경우 증가한 반면 농촌인구의 식용 식량소비량은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음. 이는 1인당 식량소비량 감소와 농촌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임.
 - 식량의 가공용 및 사료용 소비가 급증한 반면, 종자용 소비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 식용 식물유의 경우 1996/97년도 총 소비량은 860만 톤, 1인당 소비량은 7.1~7.5kg, 2006/07년도 총 소비량은 2,300만 톤, 1인당 소비량은 18kg로 10년 동안에 배로 증가하였음. 이와 함께 최근 식물유 가공업도 빠르게 발전하여 가공용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국제시장 가격 상승은 중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7년 곡물의 국제시장 현물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7% 상승하였고, 선물가격도 평균 41% 상승하였음. 이 중 대두의 국제시장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36%, 42% 상승하였음. 국제시장의 농산물 가격상승은 수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고 (예를 들어 2007년 말 수입대두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은 연초 대비 87% 상승), 이는 다시 국내시장 가격상승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 반응하여 일부 면화재배 농가들이 곡물로 작목을 전환하여 결국 면화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했음.
 - 국제시장에서 곡물가격, 유지작물 가격이 대폭 상승한 원인은 다음과 같음. ①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가의 육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대두 등 사료 수요가 급증하였음. ②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씨 등 전통적인 사료작물과 유지작물들이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대량 사용되어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③

대두 등 사료작물의 생산 부족으로 밀이 사료용으로 사용되면서 밀 수요가 급증하였음. ④고유가의 영향으로 화학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여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였음. ⑤세계의 식량재고량 감소가 국제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

○ 2006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시장 및 국내시장의 농산물가격 상승 추세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예시하는 것일 수도 있음.

- 국내적으로는 공업화, 도시화 수준 제고 등으로 1990년대의 농산물 수급균형 상태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제 식량시장은 과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던 국면을 마감하고 수급모순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량가격 상승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향후 10년 동안 세계 곡물수요는 매년 2.6%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참고로 1980, 1990년대에는 매년 1.6%의 증가 속도를 나타낸 바 있음.

○ 최근 중국의 농산물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식과 함께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 첫째,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식품가격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협상가격차의 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의 주요 농산물가격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줄곧 저가격 수준을 유지한 반면 농자재 가격은 대폭 상승하였음. 또한 농민들의 비농업 취업이 증가하여 농외소득이 증가하여 농업의 비교수익이 감소했음. 최근 농산물가격 상승은 농업생산비용 상승에 대한 시장에서의 보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협상가격차의 형성과 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둘째, 농산물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할 있는데 이는 농산물가격과 비농산물 가격의 연쇄적인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농업부문임.
- 셋째,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화폐현상으로서 특정 상품의 수급관계를 통해 초래되는 것이 아님. 또한 식품소비가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식품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도화선(導火線)이 될 수 있음. 이는 농산물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화선 역할을 하는 농산물도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식량이었지만 이번에는 돼지고기임.

- 넷째,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농촌의 가격 상승률이 도시보다 높았다는 점임. 2007년 7월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5.6%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농촌과 도시는 각각 6.3%, 5.3% 상승하였음. 이러한 현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농촌주민들의 소비구조 특히 식품소비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급자족적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음. 또한 농산물가격 상승이 농민들에 줄 수 있는 이득도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함.
- 다섯째, 농촌지역의 잉여 노동력이 이미 대량적으로 도시로 유출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식품소비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면 농산물 특히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예를 들면 축산물)생산이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현재의 농업생산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여섯째,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농산물가격이 동시에 대폭 상승하는 경우 국제시장을 통해 국내시장의 과부족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은 국제시장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1.4. 농산물 무역

- 2007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동시에 증가했고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커서 농산물 무역적자가 증가했음.
-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781.0억 달러로 전년대비 23.0% 증가했으며 이 중 수출은 370.1억 달러로 전년대비 17.8% 증가, 수입은 410.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1% 증가했음. 농산물 무역적자는 40.8억 달러로 전년대비 5.1배 증가했음.
- 2007년 중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로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냈음. 주요 수입 농산물은 식용 유채씨와 식용 식물유, 면화, 설탕, 축산물, 수

산물로 면화와 설탕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냈음.

- 곡물 수출은 991.2만 톤으로 전년대비 62.5%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옥수수과 밀 제품임. 수입량은 155.7만 톤으로 전년대비 56.7% 감소했으며 주로 보리제품임. 곡물 순수출은 835.4만 톤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했음.
- 식용 유채씨 수입은 839.7만 톤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했고, 면화와 설탕 수입은 각각 261.5만 톤, 119.3만 톤으로 각각 전년대비 31.3%와 12.6% 감소했음.
- 채소 수출량과 수입액은 각각 817.3만 톤, 62.1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1.6%, 14.5% 증가했음. 과일 수출량과 수입액은 각각 477.3만 톤과 37.5억 달러로 전년대비 28.9%, 51.4% 증가했고, 수입량은 134.7만 톤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음.
- 축산물 수출은 40.5억 달러로 전년대비 8.7% 증가했고, 수입은 64.7억 달러로 전년대비 42.2%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24.3억 달러로 전년대비 1.9배 증가했음. 수산물 수출은 97.4억 달러로 전년대비 4.1% 증가했고, 수입은 47.2억 달러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50.2억 달러로 전년대비 0.7% 감소했음.

○ 2007년 중국 농산물의 수출입 상대국을 보면 수출대상국 상위 5대 시장은 일본, 유럽 27개국, 미국, 동유럽, 한국 순임. 수입대상국 상위 5대 시장은 미국, 동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27개국 순임.

- 2007년 중국의 수출액 기준 상위 3개 수출지역은 산둥성, 광둥성, 요녕성이고, 수입액기준 상위 3개 수입지역은 강소성, 광둥성과 산둥성임.

○ 2007년 중국의 농산물 무역적자가 증가한 이유는 ①품질문제로 수산물 수출이 제약을 받았고, ②국내시장의 육류공급 부족으로 육류 관련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이 증가했고, ③2006년에 콩기름, 종려기름, 유채기름의 수입관세 할당이 취소되었고 국내수요도 급증하여 식용 식물유와 대두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1.5. 향진기업

○ 2007년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6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고, 이윤 총액은 1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 납세 총액은 7,200억 위안

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음. 수출총액은 3조 2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2% 감소했음.

- 2007년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에서 공업부문 부가가치는 70.4%를 차지했으며 연간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대규모 공업부문이 향진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음.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향진기업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제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진기업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전년대비 약간 증가했으며 성장속도는 향진기업의 평균 성장속도보다 빠름. 2007년 말 전국의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총 1억 5,000만 명에 달함.

○ 2007년 비농업부문에 취업한 농촌노동력은 2억 1,000만 명을 초과했으며, 그동안 많은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현시적인 농촌 잉여노동력은 이미 거의 다 이전했고 현존하는 농촌 잉여노동력은 비농업부문의 취업이 어려운 중년 이상의 여성노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농업 및 농촌지역 비농산업의 발전과 도시의 농민공을 주요 노동력으로 고용하는 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농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민공들의 합법적이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1.6. 농민소득

○ 2007년 농촌주민의 1인당 순 소득은 4,140위안으로 9.5%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1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것임.

- 2007년 농민소득의 증가는 ①농산물 판매소득이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②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③제2차 또는 제3차 산업 경영소득, 즉 비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④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한 특징이 있음.

- 그러나 2007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3,786위안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비율은 3.33 : 1로 전년보다 확대되었음.

- 농촌 주민의 소비수준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도시의 소비지출액이 총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농촌보다 크며 다만 양자의 증가속도 격차는 전년대비 축소되었음.

1.7. 주요 농업·농촌정책 추진 상황

- 2007년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투자액은 4,3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21억 위안 증가(27.1%) 했으며 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인프라 구축, 농업 생산능력 제고, 농촌건설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농촌개혁 등의 사업 분야에 사용되었음. 대표적인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음.
 - 식량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량직불제 및 농자재종합직불제의 시행, 우량종자 보조금제도, 농기계구매보조금제도, 적정시비보조금제도 등 직접지불 및 보조 규모를 확대하여 식량재배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음. 또한 11개 식량주산지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채종자보조도 시작했음.
 - 국채 투자 및 중앙재정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인프라구축에 사용된 자금은 360억 위안이며 이 중 농촌의 ‘물, 도로, 가스, 전기’에 사용된 자금이 300억 위안에 달함.
 - 농촌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위한 ‘2면제 1보조(兩免一補)’³⁵에 모두 279억 위안이 사용되었음.
- 대규모 농업재정 투자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의 기초가 취약한 것은 중국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벽임. 여기서 농업의 기초에는 수리시설, 경지, 수자원 등 유형적인 것 이외에도 농업기술, 농민들의 자질, 동식물 방역체계, 농업생태환경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음.
 - 10년 전과 비교하여 중국의 농경지 면적은 8.3백만 ha가 감소했으며, 1인당 경지면적도 0.093ha 감소했음.
 - 농경지의 비옥도도 저하되어 중저급지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0개성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토양의 유기질 함유 비율은 1990년대 초에 비해 0.35% 감소했음. 또한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가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절반 이상의 농경지가 관개시설이 미비하여 매년 농작물의 재해면적이 2,010만 ha에 달하고 있음.

35 농촌 의무교육기간내의 빈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하고, 각종 잡비를 면제해주는 한편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정책

- 2007년 여름에는 회하(淮河)유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중국 농업이 아직도 “하늘에 의지해 밥을 먹는(靠天吃飯)”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설명해주고 있음. 또한 농업기술 보급체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기술 및 문화 수준도 낮아 중국 농업이 단기간 내에 기술진보를 통해 농업성장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국무원은 2007년 7월 30일 돼지고기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상황에서 ‘양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시장공급을 안정시킬 데 대한 의견(國務院關於促進生豬生產發展穩定市場供應的意見)’을 하달하였음.
- 《의견》에서 명시한 번식 가능한 암돼지 사육시 보조금 지급, 우량종 번식체계 구축, 표준화사업 추진 등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 2007년 9월부터 양돈산업이 점차 회복되고 가격도 안정화 되었음.
- 국무원 판공청은 2007년 9월 22일 유지작물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유지작물의 생산을 촉진할 데 대한 의견(國務院辦公廳關於促進油料生產發展的意見; 國辦發 [2007] 59號)’을 하달하였음.
- 《의견》은 유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유지작물 주산지 현(縣)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유지작물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우량품종 및 선진기술 보급사업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국무원은 2007년 9월 27일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데 대한 의견(國務院關於促進奶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 國發 [2007] 31號)’을 하달하였음.
- 《의견》은 우량종 젖소의 번식과 보급을 강화하고 젖소 사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표준화 및 규모화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였음.
- 중국 정부는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재배 농가들의 수익성을 보장

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중점 지역, 중점 식량품종에 대해 최저수매가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 2005년 처음으로 남부지역의 벼 주산지에서 벼 최저수매가격제도를 실시한 이래 2006년에는 일부 밀 주산지에서도 최저수매가격제도를 실시했고 2006년 12월 중순에는 흑룡강성 일부 지역에서도 자포니카 벼에 대한 최저수매가격제도를 실시했음.
- 2007년에는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수매가격으로 사들인 식량과 수입 밀 방출을 확대하는 한편 경매를 통해 정부비축용 식용유와 옥수수를 판매하였음.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돼지고기를 방출하고 돼지고기 비축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대두와 식용 식물유 비축제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유지작물 선물시장 육성책을 제시하였음.

○ 2007년 한 해 동안 향(鄉)·진(鎭) 조직 개혁, 농촌 의무교육제도 실시, 현(縣)·향(鄉) 재정관리체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촌종합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하였음.

- 안휘성, 하남성 등 9개 성·자치구시와 기타 22개 성·자치구시의 일부 현·시에서 농촌종합개혁을 시범 실시하였음.
- 중앙 및 지방재정 565억 위안을 할당하여 농촌지역의 의무교육기간에 재학중인 1.5억 명의 잡비를 면제해주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 3,800만 명의 교과서 구입비용과 780만 명의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해주었음. 농촌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40여만 개의 학교가 정상 운영되도록 하였음.
- 농촌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신형 농촌금융기관 시범 운영사업을 실시지역을 전국 31개 성·자치구시로 확대했으며, 촌진(村鎭)은행, 대출회사 및 농촌자금협동조합(農村資金互助社) 등 31개 신형 농촌금융기관이 개업 허가를 획득하였음. 농촌지역의 협동금융조직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협동은행 113개, 농촌상업은행 17개와 1,824개의 현·시를 단위로 하는 법인을 재건하였음. 또한 중국 우정저축은행이 농촌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중국 농업발전은행은 기능을 확대했고 중국 농업은행은 전반적인 개혁(整體改造), 상업경영(商業運作), 적기출시(擇機上市)라는 3가지 개혁목표를 확립했음. 이외에도 농업보험 시범지역을 더욱 확대하였음.
- 임지(林地) 사용권과 임목(林木) 소유권, 경영권, 수익권, 처치권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임지권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음. 2007년 말 현재 중국 전체 임지면적의 27.5%에 해당하는 4,422만 ha가 개별 농가에 도급되었음.

[참고자료]

- 陳勁松. 2008. “2007年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與2008年展望,” 『中國農村經濟』 第2期.
- 方言. 2008. “2007年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與2008年展望,” 『宏觀經濟管理』 第1期.

2. 가격 동향

2.1. 2007~2008년 1분기 도매시장가격

가. 식량작물³⁶

- 2007년도 중국의 곡물가격은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후반기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음(그림 2 참조).
- 조생종 인디카쌀, 만생종 인디카쌀, 자포니카쌀, 밀, 옥수수, 대두의 2007년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 2006년에 비해 각각 10.1%, 11.4%, 1.4%, 7.2%, 18.5%, 25.0% 상승하였음.
-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의 2007년 평균 수매가격도 2006년에 비해 10.3%, 품목별로는 각각 5.3%, 8.0%, 19.8% 상승하였음.

□ 벼(稻穀)

- 2007년 조생종 인디카 벼 가격은 전체적으로 등락속에 상승추세를 나타냈으며, 만생종 인디카 벼는 급등 추세, 자포니카 벼는 하락추세를 보였음.
- 2007년 1~3월 동안은 비축 벼의 공매로 조생종 인디카 벼는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었으나 2분기에 소폭의 등락세를 보였으며, 3분기에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후 4분기에 소폭 하락하였음. 2007년 조생종 인디카 벼의 톤당 평균가격은 1,584위안으로 전년대비 11.0% 상승하였음.
- 2007년 1~2월 동안 만생종 인디카 벼 가격은 낮은 가격을 유지했지만 3~7월 동안 급등하였으며, 8~9월에는 고가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였고, 10~12월에는 소폭 등락하였음. 2007년 만생종 인디카 벼의 톤당 평균가격은 1,680위안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였음. 주요한 가격상승 요인은 개별 산지의 생산량이 적었고 조생종 벼 가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36 農業部. 품목별 시장모니터링정보(市場監測信息)(<http://www.agri.gov.cn/xxfb/>)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 2007년 1~4월 동안 자포니카 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5~7월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으며, 8~10월에 또다시 하락하다 11~12월 다소 상승추세를 나타냈음. 2007년 동북지방 자포니카 벼의 톤당 월 평균가격은 1,782위안으로 전년대비 8.5% 하락하였음. 주요한 가격하락 요인은 흑룡강성의 자포니카 벼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 2008년 1~3월 벼 수매가격은 운송비 보조, 벼 최저수매가격 인상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음.
 - 조생종 인디카 벼, 만생종 인디카 벼, 동북지방 자포니카 벼, 남부지방 자포니카 벼 주산지의 톤당 수매가격은 각각 1,700위안, 1,740위안, 1,800위안, 1,750위안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0~14%, 4~5%, 1~7%, 3~4% 상승하였음.
 -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은 정책적 요인으로 1월 말 동북지방 자포니카 벼의 판매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출하는 한편, 재정부는 2월 20일 운송비보조 재무관리방법을 하달하였음. 또한 국무원은 3월 27일 소집된 ‘전국 농업 및 식량생산업무 TV 전화회의(全國農業和糧食生產工作電視電話會議)’에서 벼 최저수매가를 전년보다 kg당 0.14위안을 인상하도록 하였음.

□ 쌀(大米)

- 2007년 중국의 쌀 가격은 초반에 하락하다 후반기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음.
 - 2007년 1~4월까지(조생종 인디카 쌀은 5월까지)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5월 이후(조생종 인디카 쌀은 6월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섰음. 자포니카 쌀은 11~12월에 다소 하락하였음.
 - 2007년 조생종 인디카 쌀, 만생종 인디카 쌀, 자포니카 쌀의 톤당 월 평균가격은 각각 2,359위안, 2,396위안, 2,992위안으로 각각 전년대비 9.2%, 8.2%, 2.1% 상승하였음.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은 생산비 및 운송비의 증가와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 때문이었음.
- 식량소비의 하락, 동북지방 쌀의 시장출하 증대, 정미공장의 영업 증가 등의 원인으로 2008년 1~3월 쌀 도매시장 가격은 상승 후 미약하지만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08년 1~3월 조생종 인디카 쌀의 톤당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각각 1,740위안, 1,760위안, 1,75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8.2%, 9.0% 상승하였음.
- 동기간 만생종 인디카 쌀의 톤당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각각 2,462위안, 2,493위안, 2,467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5.6%, 5.1% 상승하였음.
- 동기간 자포니카 쌀의 톤당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각각 2,973위안, 2,937위안, 2,90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2.4%, 2.8% 하락하였음,

□ 밀(小麥)

-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던 보통 밀 가격은 2007년 말 이후 소폭 등락세를 보이고 있고, 우량 밀 가격은 미약하지만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원인은 2008년 들어 국가가 정기적으로 최저가수매 밀을 공매하고 있고 각지의 비축 밀을 방출하는 한편 농가비축 밀도 전년 동기보다 많아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임.
- 정주(鄭州) 식량도매시장 보통 밀의 톤당 가격은 2007년 12월 최고치인 1,610위안을 기록한 후 2008년 들어 1~3월 동안 1,573위안, 1,560위안, 1,574위안으로 소폭 등락세를 보였음. 1~3월 평균가격은 1,569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하였음.
- 정주식량도매시장 우량 밀의 톤당 가격은 2008년 들어 1~3월 동안 1,675위안, 1,660위안, 1,644위안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1~3월 평균가격은 1,660위안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가격을 나타내고 있음.

□ 옥수수(玉米)

- 2007년 이래 중국의 옥수수 가격은 국내 수요증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냈음.
- 2007년 12월 산지와 소비지의 톤당 도매시장 가격은 각각 1,619위안, 1,91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9%, 14.9% 상승하였음.
- 농가 판매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급격히 상승하여 2007년 12월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등 5대 주산지 성의 중등품 옥수수의 톤당 판매가격은 1,454위

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5% 상승하였음. 이중 산동성, 허북성, 허남성, 길림성의 경우 각각 23.8%, 26.5%, 19.6%, 17.6% 상승하였음.

○ 2008년 1~3월 동안 산지와 소비지의 옥수수 가격은 소폭 등락한 가운데 3월 중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 2월 중 산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톤당 1,638위안(전년 동기대비 15.2% 상승)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월 평균가격은 1,616위안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 산지 수매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길림성, 허룽강성, 요녕성의 2등급 옥수수 톤당 수매가격은 각각 1,390~1,430위안, 1,300~1,360위안, 1,500~1,550위안으로 각각 10~30위안, 40~60위안, 10~20위안이 상승하였음.

- 3월 중 소비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1,895위안으로 2월 대비 2.8% 하락하였음. 주요 원인은 설 이후 남부지방으로의 옥수수 운송이 회복되었고 국가 비축 식량의 공매로 시장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임.

□ 대두(大豆)

○ 중국의 대두 시장가격은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아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2007년 처음으로 3,000만 톤을 넘어 전년대비 9.0% 증가한 3,082만 톤을 기록했음.

- 2007년도 대두 수입은 주로 10~12월에 집중되었으며 3개월 동안 수입량(912만 톤)이 2007년 수입량의 29.6%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했음. 이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수입 대두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1% 잠정세율을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08년 1~3월 대두 주산지인 허룽강성의 기름용 대두 1kg당 수매가격은 각각 4,470위안, 4,648위안, 4,720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냈으며 각각 전년 동기대비 76.3%, 70.9%, 76.3%나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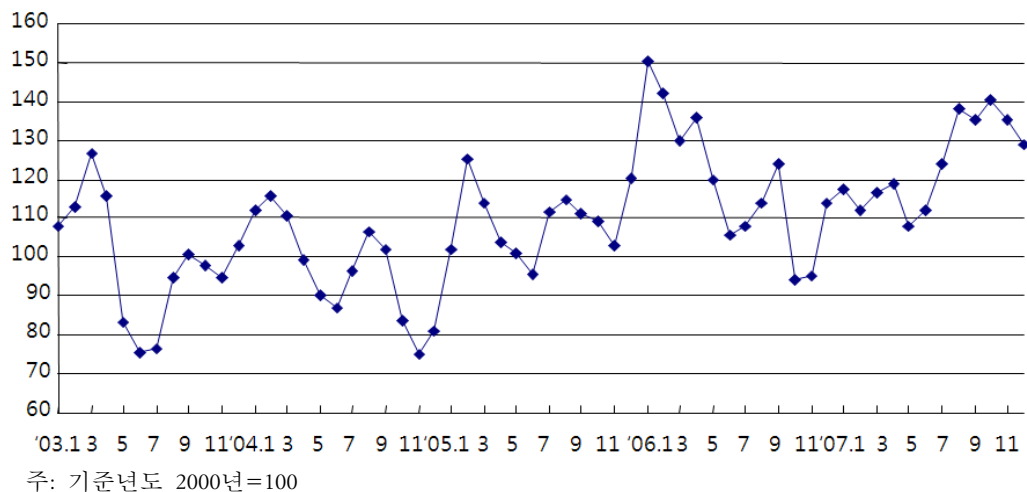
- 산동성 지역의 관세부과 후 톤당 수입대두 가격은 현지 중국산 대두 구매가격 비교하

여 2008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100위안, 200위안 정도 높았으나 3월에는 차이가 없었음.

나. 채소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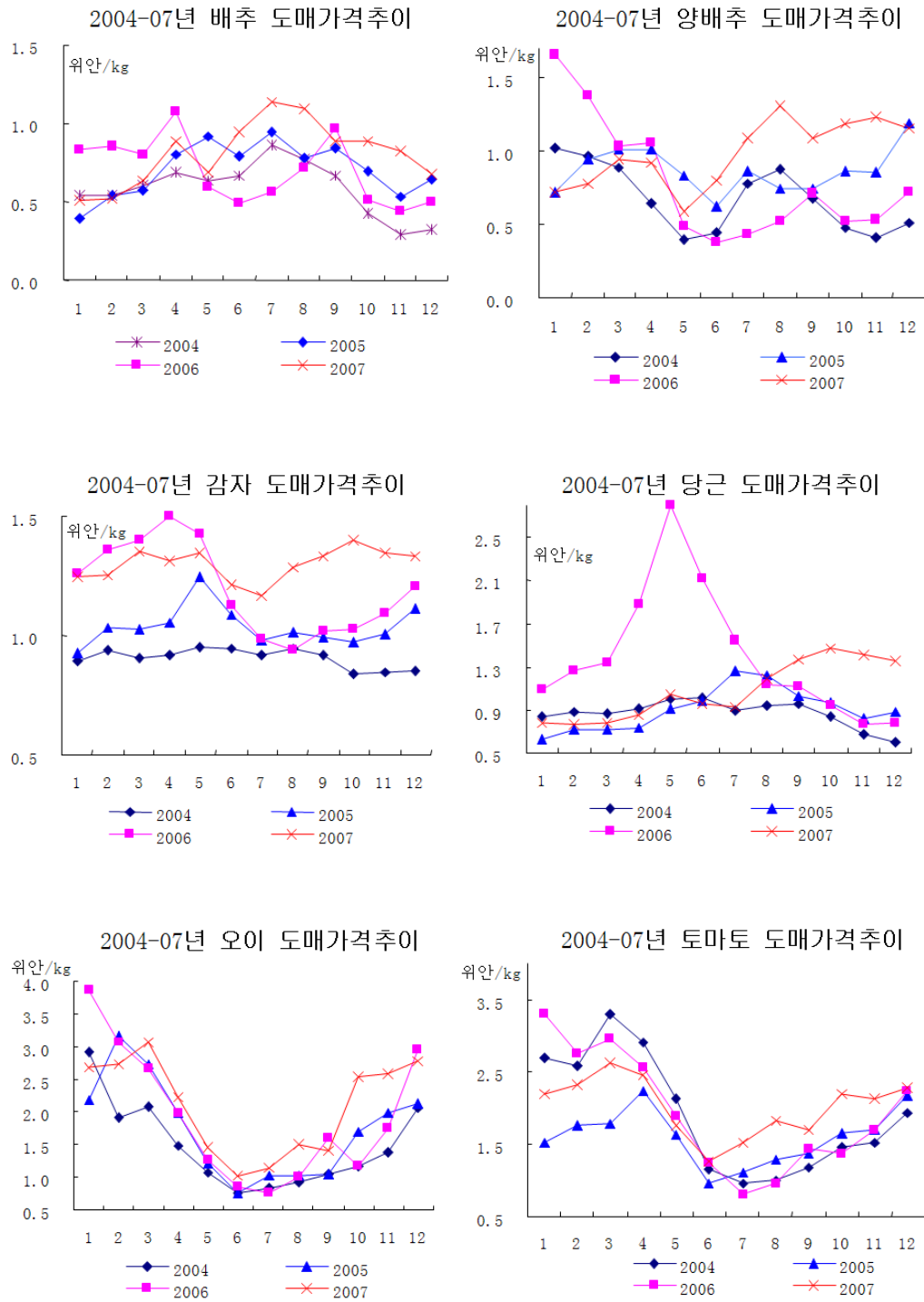
- 2007년 채소 도매가격지수(2000년=100)는 124.8으로 전년대비 4.7% 상승했으며 이는 2004년 이후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일 작았음.
- 2007년 성별 채소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사천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섬서성, 운남성, 강소성, 안휘성 등이고 5% 이상 하락한 지역은 길림성, 상해시, 감숙성, 광둥성, 흑룡강성, 귀주성, 천진시 등임.
- 2007년 채소의 품목별 가격 변화는 품목에 따라 등락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가격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채소 품목은 양배추, 유채,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금치, 배추, 호박 등이고,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한 품목은 당근, 동과(冬果), 대파, 상추, 토마토, 부추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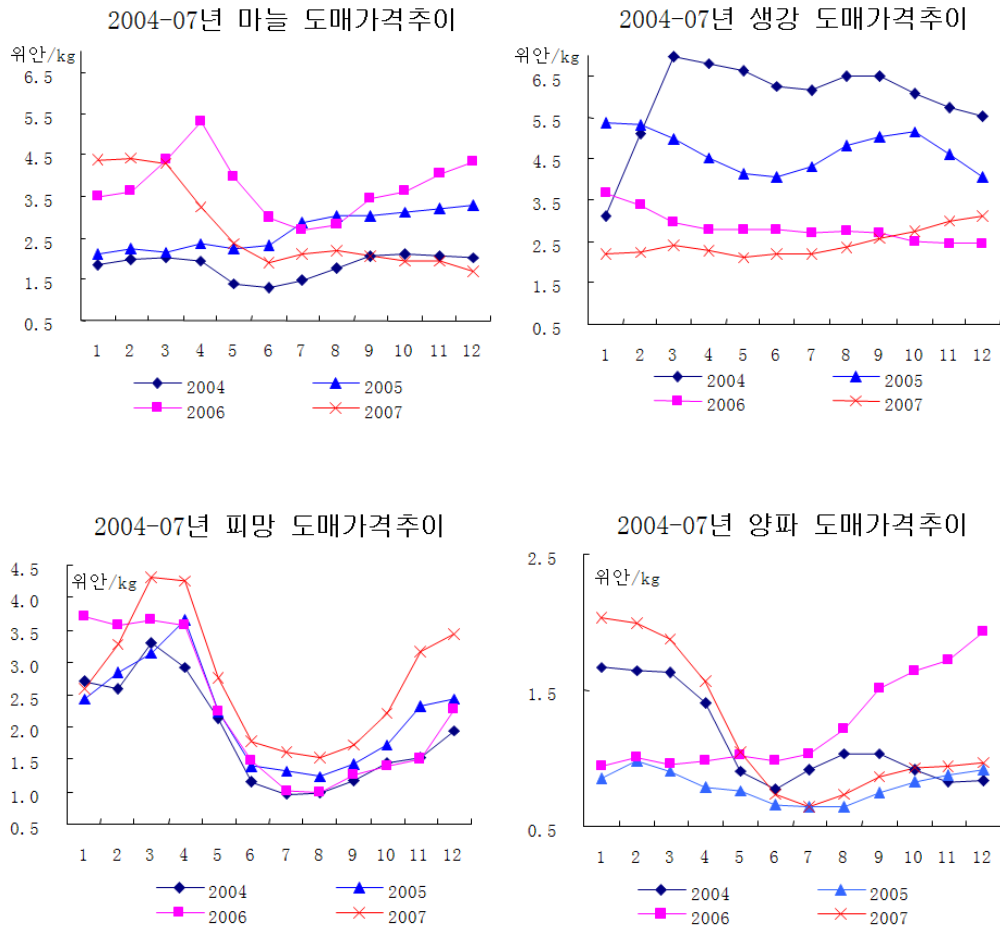
그림 4 채소류 도매가격지수 변화 추이, 2003~2007년



37 農業部. 2008.1.11. “2007蔬菜市場形勢”; 農業部. 각 연도,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農業部. 2008.4.21. “2008年一季度我國蔬菜市場形勢”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그림 5 채소류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4~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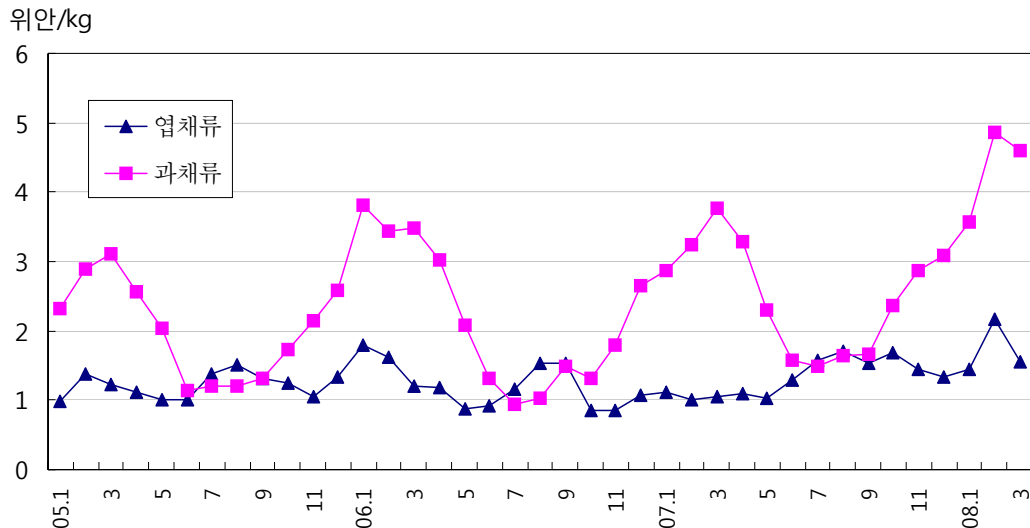




자료: 農産部. 2008.1.11. “2007年蔬菜市場形勢”(http://www.agri.gov.cn/xxfb/t20080111_953460.htm)

- 2008년 초 남부지방의 저온과 폭설로 채소 생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은 데다 수송이 원활하지 못해 2월 채소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 이래 가장 높았음.
- 2008년 1, 2월 채소 도매시장 가격지수(월 평균)은 각각 전월대비 12%, 31% 상승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1월 10일~2월 5일 사이에 남부지방에 저온현상이 나타나고 폭설이 내려 노지채소에 커다란 피해를 입혀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임. 폭설로 채소의 수송이 지연되었던 것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음.
- 2월 5일 이후 남부지방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날씨가 호전되어 3월 채소 도매 시장가격은 2월에 비해 12% 하락하였음(그림 6 참조).

그림 6 엽채류 및 과채류의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4~2008.3



자료: 農業部. 각 연도,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

다. 과일³⁸

- 2007년도 중국의 과일 도매시장 가격은 전년보다 다소 높았음.
 - － 품목별로는 감귤, 배, 열대과일의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지만 복숭아, 포도,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 －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산서성, 호북성, Ningxia回族自治区, 흑룡강, 신강위구르 자치구 등이며, 상승한 지역은 내몽고자치구, 섬서성, 호남성, 사천성, 하남성 등임.
- 과일 도매시장 가격의 주요 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생산원가의 상승과 저장운송비용의 상승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원가조사에 의하면 2006년 사과 생산원가는 1무(=200평=0.067ha) 당 1,488위안으로 전년보다 27.8% 상승하였고 가격은 37.5% 상승하였음. 농자재 가격도 2006년에 비해 상승하여 과일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38 農業部. 2008.1.11. “2007水果市場形勢”; 農業部. 2008.4.21. “2008年一季度我國蔬菜市場形勢”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 둘째, 소비수요의 증가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을 자극하였음.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2006년 과일 구매량은 2005년에 비하여 각각 6.1%, 11.1% 증가했으며 이는 2000년 이래 최대의 증가폭임. 2007년에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 소득 증가와 식품 영양 및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일소비가 도시주민의 식품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2006년 도시주민의 과일 소비지출은 1인당 240.2위안으로 식품 소비지출의 7.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1995년보다 1.4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것임. 2007년에도 식품 소비지출 중 과일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

표 25 과일 도매시장가격(전국 평균가격), 2007년

품목	도매가격 (위안/kg)	전년대비 증감률(%)	품목	도매가격 (위안/kg)	전년대비 증감률(%)
복숭아(백도)	2.94	43.93	감귤(복건성)	2.90	-7.50
밤	6.74	14.04	망고	9.26	-22.05
파인애플	3.21	4.48	키위	4.50	-6.66
딸기	8.46	-17.15	감귤	3.29	-2.61
사과(부사)	3.59	-11.03	레몬	10.85	-0.13
사탕수수	1.42	-9.50	깡깡	2.57	-8.29
감귤(광둥)	2.32	-16.94	비파	8.65	2.58
사과(국광)	2.15	-1.32	오렌지(臍橙)	4.76	-10.84
하미과(哈密果)	4.03	-8.17	산자(山楂)	3.75	48.65
호두	22.46	34.96	사과(蛇果)	11.29	-19.84
사과(홍바나나)	2.85	-2.21	석류	6.86	6.55
대추	6.93	7.75	감	2.98	13.69
사과(황원수)	2.87	19.75	복숭아	3.92	29.06
거봉포도	5.18	-1.20	오렌지(甜橙)	6.24	-8.24
여지	8.13	-9.16	(양자강 이남)		
용안	9.34	-0.32	수박	2.55	13.34
바나나	2.97	-8.18	참외	3.50	0.70
유자	3.34	-3.07	양매	11.32	57.87
살구	4.92	-29.33	양도	9.65	10.43
배(鴨梨)	1.93	-13.04	야자	4.51	-11.96
			앵두	37.43	-2.77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http://www.agri.gov.cn/xxfb/t20080111_953439.htm)

- 2008년 초 남부지방의 저온 현상과 폭설로 호남성, 호북성, 귀주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광둥성, 절강성 등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음.
 - 이들 지역에서 감귤, 오렌지, 껌깡, 유자 등의 과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감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지속적인 저온으로 화남(華南)지역의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바나나, 목과, 여름 오렌지 등이 피해를 입었음.
- 2008년도 1~3월 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 정도 높게 형성되었음.
 - 1월에는 남부지방의 저온과 폭설로 과일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3% 급등하였음. 배를 제외하고 모든 과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복숭아, 포도, 열대과일의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상승하였음.
 - 2월 가격은 1월에 비해 5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대비 18% 상승하였음. 이중 복숭아와 감귤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기타 과일은 상승하였음.
 - 3월 가격은 2월보다 12퍼센트 포인트 더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6% 상승하였음. 이 중 감귤과 열대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였으며 열대과일의 경우 30% 이상 하락하였음.
 - 품목별로 보면 복숭아, 배, 포도, 사과, 열대과일의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감귤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다소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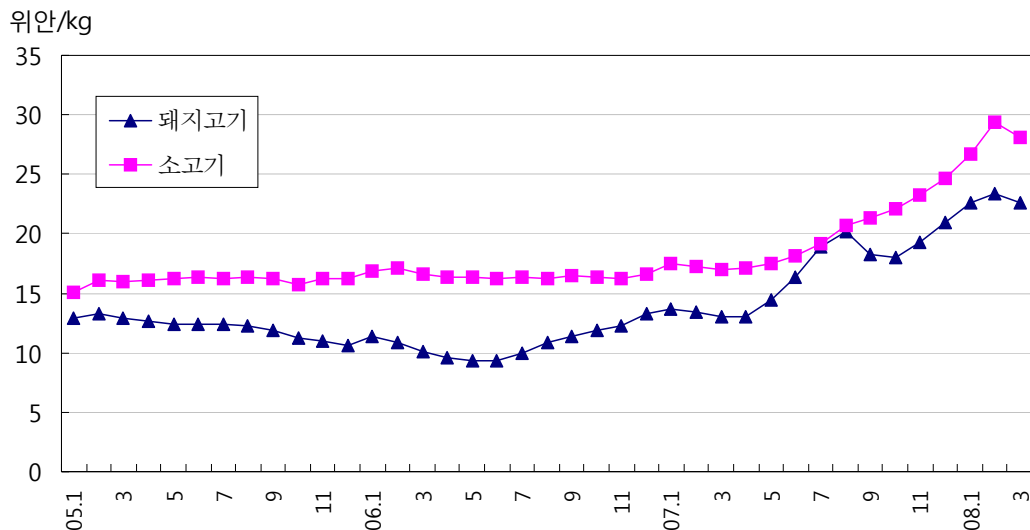
라. 축산물³⁹

□ 돼지고기(豬肉)

- 2007년 5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냈던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2008년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3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음(그림 7 참조).
 - 2008년 2월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23.4위안/kg으로 전월 대비 3.2%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무려 75.3%나 상승했음.

39 農業部. 각 연도,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農業部. 2008.4.22. “2008年一季度牛羊肉市場形勢”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그림 7 돼지고기, 소고기의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4~2008.3



자료: 農業部. 각 연도,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

– 3월 중 가격은 22.6위안/kg으로 2월 대비 3.3% 하락하였지만 하락폭이 미미하고 전년 동기대비 73.2%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지역적으로 보면 2008년 3월 중 가장 가격이 높은 호북성이 26.8위안/kg으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 2위를 차지한 복건성이 26위안/kg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음. 2월 가격과 비교하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세를 나타냈음. 비교적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는 북경시와 섬서성 지역의 경우 21위안/kg 안팎으로 하락세가 뚜렷하였음.

□ 소고기(牛肉)와 양고기(羊肉)

○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은 200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2월 신중국 건립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3월에는 다소 하락하였음(그림 7 참조).

– 2월중 소고기와 양고기의 도매시장 가격은 모두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음. 이 가운데 소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29.1위안/kg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70.5% 상승하였으며, 양고기는 29.5위안/kg으로 전년 동기대비 40.7% 상승하였음.

- 3월중 소고기, 양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2월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각각 28.1위안/kg, 29위안/kg으로 2월 대비 각각 3.6%, 1.7% 하락하였음.
-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은 2월 말, 3월 초부터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소고기 가격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월 둘째 주에 30.3위안/kg을 달성한 이후 넷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음. 양고기도 2월 넷째 주에 가장 높은 30.0위안/kg을 달성한 이후 3월 첫째 주부터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하락폭은 크지 않으며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2008년 1~3월 동안 소고기와 양고기의 주산지와 소비지 모두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컸음.
 -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복성성, 광둥성 등 소고기 주요 소비지 도매시장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57.2% 상승했으며, 양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1.8% 상승했음.
 - 하남성, 하북성, 산둥성, 안휘성,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주요 소고기 산지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79.2% 상승했음.
 - 산둥성, 신장위구르자치구, 하남성, 하북성, 내몽고자치구, 사천성, 강소성 등 주요 양고기 산지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56.9% 상승했음.

2.2. 2008년 1분기 생산자가격

- 전국 31,000개 농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산물 생산자가격 조사 결과 2008년도 1분기 농산물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5.5% 상승하였음.
 - 경종작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8%, 13.0%, 44.9%, 12.9% 상승했음.
- 동 기간 돼지고기, 소고기 생산자가격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62.1%, 37.3%나 상승하였으며 축산물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이 2008년 1~3월 농산물 생산자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

- － 경종작물 가운데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1.4% 상승하였으며, 이 중 대두는 전년 동기대비 36.5%나 급등하였음. 곡물 전체 생산자가격은 7.1% 상승했으며, 이 중 밀과 옥수수 가격의 상승률이 높아 각각 전년 동기대비 8.7%, 8.9% 상승하였음.

표 26 농산물 생산자가격 증감률, 2008.1~3월

구 분		증감률(%)	구 분		증감률(%)
경종작물	식량작물	11.4	임산물	목재	10.8
	곡물	7.1		죽재	13.4
	밀	8.7		임산부산물	14.0
	벼	3.5	축산물	산 돼지	62.1
	옥수수	8.9		소고기	37.3
	두류	36.5		산 양	36.9
	서류	13.0		가금	17.9
	면화	12.2		계란	15.9
	유지작물	33.4		유제품	36.8
	식용 당류	-3.5	수산물	해산물 전체	8.5
	채소	23.4		해수어	14.6
	과일	9.7		조개류	2.5
	차	8.9		양식업	16.9
	담배잎	14.2		담수어	16.1
				민물게·가재	30.7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國家統計局. 2008.4.18. “一季度全國農產品生產價格同比上漲25.5%”(http://www.stats.gov.cn)

[참고자료]

農業部. 품목별 시장모니터링정보(市場監測信息)(http://www.agri.gov.cn/xxfb/)

_____. 2008.1.11. “2007年蔬菜市場形勢”

_____. 각 연도, 각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_____. 2008.4.21. “2008年一季度我國蔬菜市場形勢”

國家統計局. 2008.4.18. “一季度全國農產品生產價格同比上漲25.5%”

3. 무역 동향

3.1. 2007년 농산물 무역

가. 개요

- 2007년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781.0억 달러로 전년대비 23.0% 증가
 - 수출액은 370.1억 달러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고, 수입액은 410.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1% 증가했음.
 -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커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적자액은 전년의 6.7억 달러에서 40.8억 달러로 5.1배나 증가했음.
- 2007년 동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284.0억 달러, 399.0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4.7%, 28.7%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수출입액의 76.7%와 94.4%를 차지하여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여전히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53.9억 달러, 15.1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26.0%, 17.8%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수출입액의 14.6%와 3.7%를 차지하였음.
 - 서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32.1억 달러, 7.8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36.0%, 22.7%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수출입액의 8.7%와 1.9%를 차지하였음.
- 2007년 농산물 수출실적 1위~3위는 산둥성, 광둥성, 요녕성이며, 수입실적 1~3위는 강소성, 광둥성, 산둥성임.
 - 2007년 산둥성, 광둥성, 요녕성의 농산물 수출액은 각각 99.0억 달러, 41.0억 달러, 30.2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5.8%, 4.8%, 26.4% 증가했음.
 - 2007년 강소성, 광둥성, 산둥성의 농산물 수입액은 각각 78.6억 달러, 76.1억 달러, 71.3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49.5%, 40.8%, 11.3% 증가했음.
- 2007년 중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은 아시아, 유럽, 북미 순이며, 최대 수입시장은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순임.

- 아시아는 2007년 중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3대 수입시장으로 대 아시아 수출은 223.2억 달러로 전년대비 15.5% 증가했고, 수입액은 101.3억 달러로 전년대비 27.4% 증가했음. 중국의 대 아시아 수출 및 수입은 중국 농산물 전체 수출입액의 60.3%와 24.7%로 각각 전년대비 1.2, 0.1퍼센트 포인트 감소했음.
 - 유럽은 2007년 중국의 2대 농산물 수출시장이자 제4대 수입시장으로 대 유럽 수출은 70.6억 달러로 전년대비 26.4% 증가했고, 수입액은 45.1억 달러로 전년대비 22.5% 증가했음. 중국의 대 유럽 수출 및 수입은 중국 농산물 전체 수출입액의 19.1%와 11.0%로 각각 전년대비 1.3퍼센트 포인트 증가하고 0.2퍼센트 포인트 감소했음.
 - 북미는 2007년 중국의 3대 농산물 수출시장이자 제2대 수입시장으로 대 북미 수출은 49.8억 달러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고, 수입액은 104.2억 달러로 전년대비 23.6% 증가했음. 중국의 대 북미 수출 및 수입은 중국 농산물 전체 수출입액의 13.5%와 25.3%로 각각 전년대비 0.2, 0.9퍼센트 포인트 감소했음.
- 2007년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대상국은 일본이며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 순으로 각각 83.7억 달러, 44.2억 달러, 36.1억 달러를 차지했음.
- 2007년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대상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이며 각각 91.3억 달러, 51.8억 달러, 48.2억 달러를 차지했음.

나. 곡물

- 2007년 중국의 곡물 수출은 991.2만 톤으로 전년대비 62.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5.7만 톤으로 56.7% 감소하여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835.4만 톤의 순 수출을 기록했음.
- 쌀 제품(쌀, 쌀가루, 벼 및 종자용 벼 포함)의 수출은 134.3만 톤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고, 수입은 48.7만 톤으로 33.2% 감소하여 전년대비 63.6% 증가한 85.6만 톤을 순 수출했음. 전체 쌀 제품 가운데 쌀(大米) 수출과 수입이 각각 97.1%, 95.8%를 차지했음.

- 옥수수 제품(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 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의 수출은 491.8만 톤으로 전년대비 58.7% 증가한 반면 수입은 3.5만 톤에 불과하여 전년대비 61.0% 증가한 488.3만 톤을 순 수출했음.
- 밀 제품(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의 수출은 307.3만 톤으로 전년대비 1.04배 증가하고, 수입은 10.1만 톤으로 83.6% 감소하여 전년대비 4.7배 증가한 297.2만 톤을 순 수출했음.
- 보리 제품(보리, 보리가루, 가공보리와 종자용 보리 포함)의 수입은 91.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7.3% 감소했음.

표 27 주요 곡물 수출입 실적, 2007년

단위: 만톤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순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곡물 전체	991.2	62.5	155.7	-56.7	835.4	2.3배
쌀 제품 ¹	134.3	7.2	48.7	-33.2	85.6	63.6
옥수수 제품 ²	491.8	58.7	3.5	-	488.3	61.0
밀 제품 ³	307.3	104.0	10.1	-83.6	297.2	4.7배

주 1. 쌀, 쌀가루, 벼 및 벼종자 포함

2.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

3. 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

자료: 農業部. 2008.2.4. “2007年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http://www.agri.gov.cn/xxfb/t20080204_968293.htm)

나. 축산물

- 2007년 축산물 수출액은 40.5억 달러로 전년대비 8.7%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64.7억 달러로 42.2% 증가하여 24.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9배 증가한 것임.

□ 돼지 및 가금 제품

표 28 축산물 수출입 실적, 2007년

단위: 억 달러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순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축산물 전체	40.5	8.7	64.7	42.2	-24.3	1.9배
돼지 제품 ¹	9.1	-7.6	4.7	1.9배	4.4	-
소 제품 ²	1.7	5.1	0.6	32.4	1.2	-
가금 제품 ³	10.6	13.6	9.6	1.0배	1.0	-

주 1. 산돼지, 종돈, 돼지고기, 가공 돼지고기, 돼지 내장 포함.

2. 산소, 종자용 소, 소고기, 가공 소고기, 소 내장 등 포함. 2007.1~11월 실적임.

3. 가금육 및 내장, 가공 가금육, 기타 산가금, 종자용 가금 포함.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我國牛羊肉貿易及國際市場形勢”; 農業部. 2008.2.4. “2007年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2007년 돼지 제품(산돼지, 종돈, 돼지고기, 가공 돼지고기, 돼지 내장 포함) 수출은 전년대비 7.6% 감소한 9.1억 달러, 수입은 1.9배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했다.
- 2007년 가금(家禽) 제품(가금육 및 내장, 가공 가금육, 기타 산가금, 종자용 가금 포함) 수출은 10.6억 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고, 수입은 9.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배 증가했음.

□ 소 제품

- 2007년 1~11월 소 제품(산소, 종자용 소, 소고기, 가공 소고기, 소 내장 등 포함) 수출은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음. 이 중 소고기가 전체의 39.9%, 가공 소고기가 39.6%, 산 소(종자용 소 제외)가 20.1%를 차지했음.
- 동 기간 소 제품의 수입은 5,559.2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4% 증가했음. 이 가운데 소고기가 22.2%, 가공 소고기가 7.1%, 소 내장이 18.6%, 종자용 소가 52.1%를 차지했음.
- 동 기간 소 제품의 수출입은 1.2억 달러의 순 수출을 기록했다.

- 2007년 1~11월 소고기 수입은 1,232.8만 달러(3,151.4톤)로 전년 동기대비 67.8%(2.0배) 증가했음. 주요 수입대상국은 호주로 1,966.6톤을 수입했으며 중국의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62.4%를 차지했음.
 - 동 기간 소고기 수출은 6,821.5만 달러(2.5만 톤)로 전년 동기대비 19.4%(3.1%) 증가했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 요르단, 쿠웨이트이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중국의 전체 소고기 수출액의 68.5%를 차지했음.
 - 동 기간 중국의 주요 소고기 수출지역은 길림성, 흑룡강성, 하남성, 요녕성, 북경시 등으로 이들 지역이 중국의 전체 소고기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8%임.
- 2007년 1~11월 가공 소고기 수입은 394.4만 달러(274.8톤)로 전년 동기대비 32.7%(39.5%) 증가했음. 주요 수입대상국은 뉴질랜드이며 산둥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음.
 - 동 기간 가공 소고기 수출은 6,766.3만 달러(2.7만 톤)로 전년 동기대비 6.2%(7.2%) 감소했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한국, 홍콩이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중국 전체 가공 소고기 수출액의 87.3%를 차지했음.
 - 동 기간 중국의 주요 가공 소고기 수출지역은 하북성, 산둥성, 광둥성, 천진시, 요녕성이며 이들 지역이 중국의 전체 가공 소고기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4%임.
- 2007년 1~11월 소 내장 수입은 1,033.8만 달러(7,050.1톤)로 전년 동기대비 41.2%(75.7%) 증가했음. 주요 수입대상국은 우르과이와 호주이며, 광둥성과 요녕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음.
 - 동 기간 소 내장 수출은 20.4만 달러(344.0톤)로 전년 동기대비 1.9배(1.2배) 증가했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태국과 대만이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모두 길림성과 상해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 1~11월 산 소(종자용 소 제외) 수출은 3,444.1만 달러(4.7만 두)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5.8% 감소)했음.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으로 동 기간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한 3,088.4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중국 전체 산 소 수출액의 89.7%를 차지했음.

- 동 기간 중국의 주요 산 소 수출지역은 하북성, 광둥성, 내몽고자치구, 북경시, 섬서성이며 이들 지역이 중국의 전체 산소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2%임.

○ 2007년 1~11월 종자 소 수입은 2,898.1만 달러(1.5만 두)로 전년 동기대비 19.3% 증가(2.1% 감소)했음. 주요 수입대상국은 호주로 2,135.9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중국 전체 종자 소 수입액의 73.7%를 차지했음.

- 동 기간 중국의 주요 종자 소 수입지역은 산둥성으로 725.1만 달러를 수입해 중국 전체 종자 소 수입액의 25.0%를 차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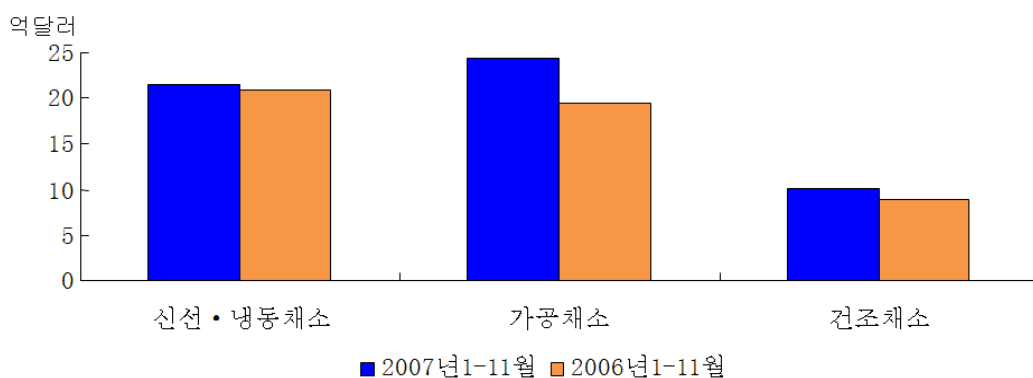
다. 채소

○ 2007년 1~11월 중국의 채소(신선·냉동채소, 가공채소, 건조채소를 포함) 수출은 55.8억 달러(736.7만 톤)로 전년 동기대비 13.5%(10.2%) 증가했음.⁴⁰

- 신선·냉동채소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21.4억 달러로 중국 전체 채소 수출액의 38.5%를 차지했음.

- 가공채소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5.6% 증가한 24.3억 달러로 중국 전체 채소 수출액의 43.6%를 차지했음.

그림 8 수출형태별 채소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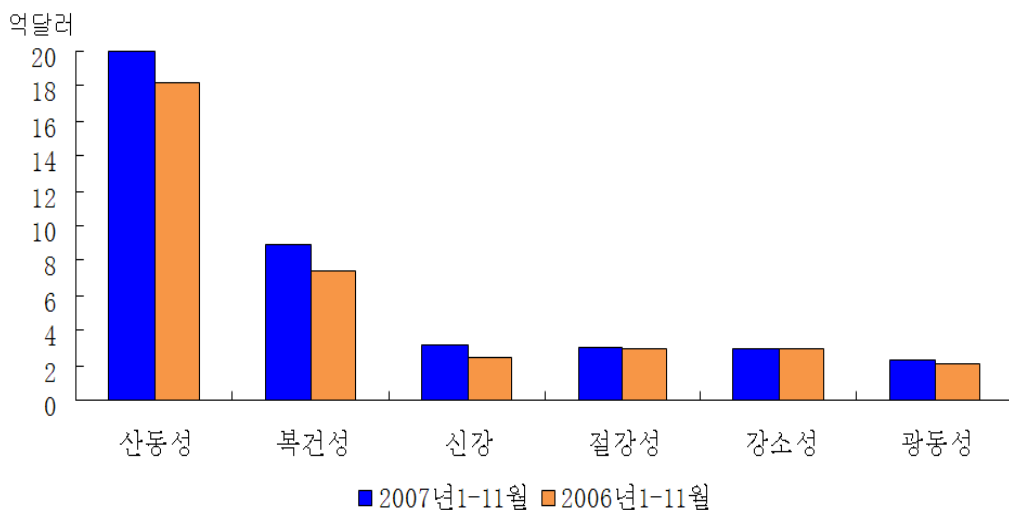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蔬菜市場形勢”

40 2007년 채소 수출은 62.1억 달러(817.3만 톤)로 전년대비 14.5%(11.6%) 증가했으며, 수입은 1.1억 달러(9.9만 톤)로 전년대비 17.4%(15.7%) 증가했음.

- 건조채소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한 1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채소 수출액의 18.0%를 차지했음.
- 2007년 1~11월 중국의 지역별 채소 수출실적은 산둥성, 복건성, 신강위구르자치구, 절강성, 강소성, 광둥성 순임.
- 동 기간 산둥성과 복건성의 채소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9.4%, 20.0% 증가한 19.9억 달러, 8.9억 달러를 기록했음. 절강성, 신강위구르자치구, 강소성, 광둥성의 수출도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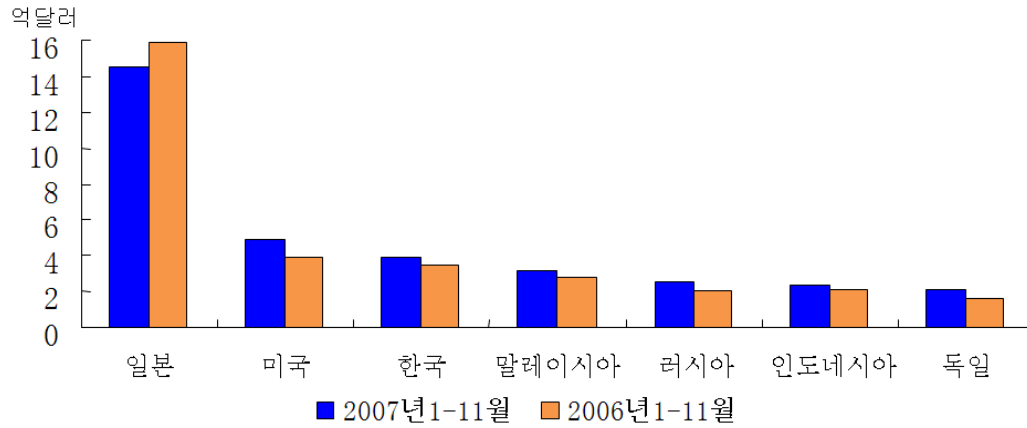
그림 9 지역별 채소 수출 현황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蔬菜市場形勢”

- 2007년 1~11월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임.
- 동 기간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채소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 13.7% 증가한 14.5억 달러, 8.4억 달러로 중국 전체 채소 수출액의 26.0%와 15.0%를 차지했음.
- 동남아국가연합 중 주요 수출 대상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며 미국, 한국, 러시아, 독일에 대한 채소 수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각각 전년 동기대비 22.3%, 13.0%, 25.7%, 28.3% 증가했음.

그림 10 수출대상국별 채소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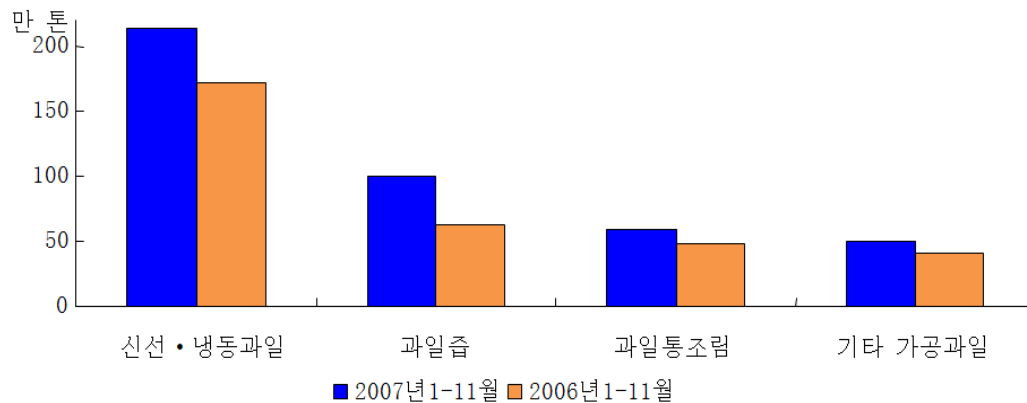
자료: 農産部. 2008.1.11. “2007年蔬菜市場形勢”

라. 과일

○ 2007년 1~11월 중국의 과일(신선·냉동과일, 과일즙, 과일통조림, 기타 가공과일 포함) 수출은 32.4억 달러(422.4만 톤)로 전년 동기대비 51.2%(31.0%) 증가했음.

－ 동 기간 과일 수입은 8.6억 달러(123.0만 톤)로 전년 동기대비 24.7%(6.3%) 증가하여 23.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3.8%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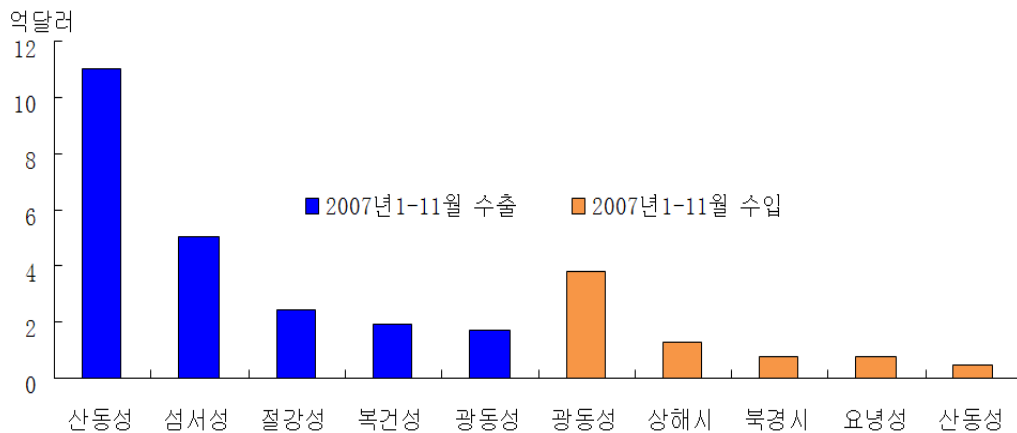
그림 11 수출형태별 과일 수출 현황



자료: 農産部.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

- 품목별 과일 수출구조를 보면 신선·냉동과일과 과일 가공제품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일 수입은 바나나, 키위, 감귤, 감귤즙, 포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 동 기간 신선·냉동과일 수출은 214.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4.8%를 차지했으며 중국 전체 과일 수출총량의 50.7%를 차지했음. 과일즙, 과일통조림, 기타 가공과일의 수출은 각각 99.7만 톤, 59.3만 톤, 49.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8.1%, 23.6%, 23.6%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과일 수출총량의 23.6%, 14.0%, 11.7%를 차지했음.
- － 동 기간 바나나, 키위, 감귤, 감귤즙, 포도 수입량은 각각 29.9만 톤, 11.6만 톤, 7.2만 톤, 5.7만 톤, 4.2만 톤으로 모두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했음.
- 2007년 1~11월 중국의 지역별 과일 수출실적은 산둥성, 섬서성,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순으로 각각 11.1억 달러, 5.0억 달러, 2.4억 달러, 2.0억 달러, 1.7억 달러를 수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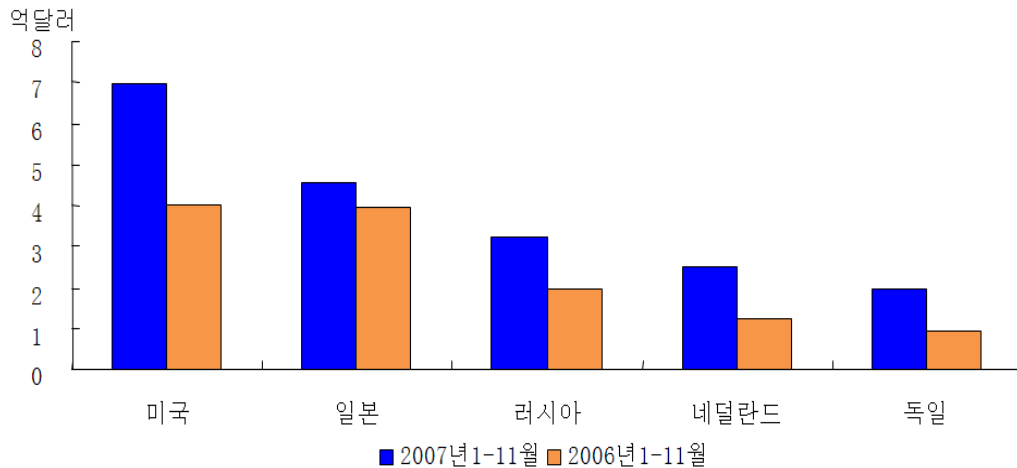
그림 12 지역별 과일 수출입 현황, 2007.1~11



자료: 農産部.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

- 2007년 1~11월 중국의 주요 과일 수출대상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독일 순으로 각각 65.7만 톤, 50.7만 톤, 38.0만 톤, 25.0만 톤, 19.1만 톤을 수출했으며 모두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 이들 국가로의 수출액은 각각 중국 전체 과일 수출액의 21.4%, 10.0%, 14.1%, 7.6%, 6.0%를 차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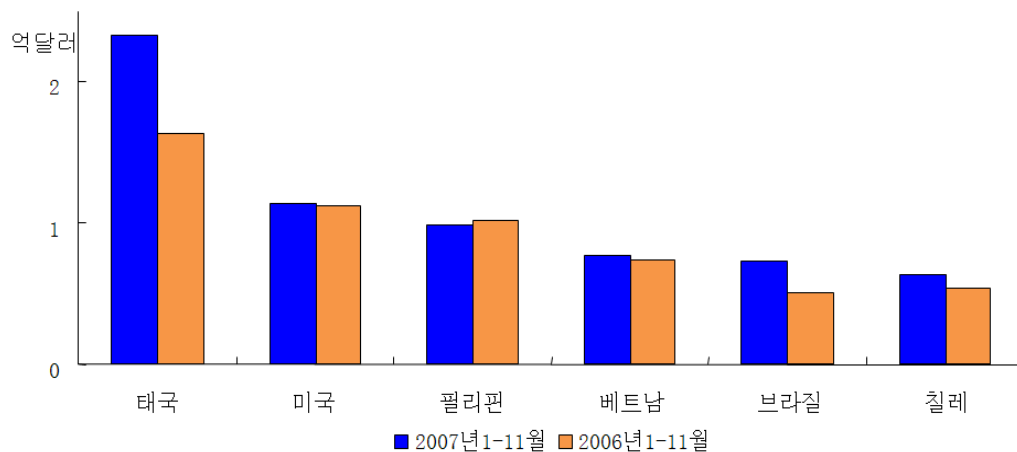
그림 13 수출대상국별 과일 수출 현황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

- 2007년 1~11월 중국의 주요 과일 수입대상국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칠레, 브라질 순임.
- 이들 국가로부터 과일 수입량은 각각 30.9만 톤, 29.6만 톤, 28.5만 톤, 9.8만 톤, 5.4만 톤, 4.2만 톤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 21.9% 증가, 9.2% 감소, 15.2% 감소, 22.6% 증가, 11.5% 증가했음.

그림 14 수입대상국별 과일 수입 현황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

표 29 중국·ASEAN 과일 무역 실적, 200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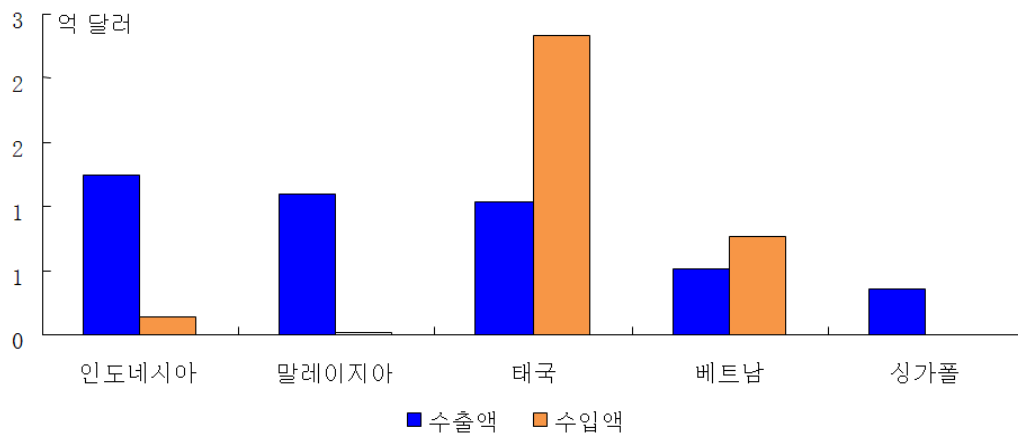
구 분	수량 (만 톤)	총량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억 달러)	총액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대 ASEAN 수출	99.6	23.6	16.6	4.8	14.9	24.4
대 ASEAN 수입	90.8	73.8	4.6	4.3	49.8	20.3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

○ ‘중국·ASEAN 간 경제협력체계 협의(中國與東盟全面經濟合作框架協議)’의 조기계획에 따라 중국과 ASEAN은 2004년부터 과일, 채소를 포함한 약 600여 종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하였음. 이 영향으로 2006년 중국과 ASEAN의 과일 무역총액은 8.39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3년 대비 68.5% 증가한 것임.

－ 중국은 ASEAN으로부터 주로 용안, 두리안, 여지, 바나나, 연무(蓮霧)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사과, 배, 감귤, 복숭아통조림, 대추 등을 수출하고 있음.

그림 15 중국·ASEAN 국가별 과일무역 실적(2007.1~11)



자료: 農業部.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

마. 기타

○ 2007년 중국의 식용 유지종자(oilseed)의 수출은 127.1만 톤으로 전년대비 4.7% 증가

- 했으며, 수입도 3,185.8만 톤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음.
- 이 중 대두 수출은 47.5만 톤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했고, 수입도 3,082.1만 톤으로 9.0% 증가했음.
- 2007년 중국의 식용 식물유 수출은 16.8만 톤으로 전년대비 58.1% 감소했으나 수입은 839.7만 톤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했음.
- 콩기름(大豆油) 수출은 6.6만 톤으로 전년대비 44.2% 감소했으나, 수입은 282.3만 톤으로 전년대비 83.0% 증가했음.
 - 유채기름(菜籽油)의 수출은 2.2만 톤으로 전년대비 85.0% 감소한 반면, 수입은 37.5만 톤으로 전년대비 7.5배 증가했음.
 - 종려기름(棕榈油)의 수입은 509.5만 톤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음.
- 2007년 중국의 면화 수출은 2.4만 톤으로 전년대비 51.6% 증가했고, 수입도 261.5만 톤으로 전년대비 31.3% 증가했음. 식용 당(食糖) 수출은 11.1만 톤으로 전년대비 28.4%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9.3만 톤으로 전년대비 12.6% 감소했음.
- 2007년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97.4억 달러로 전년대비 4.1% 증가했고, 수입은 47.2억 달러로 전년대비 9.7% 증가했음. 수산물의 무역수지 흑자는 50.2억 달러로 전년대비 0.7% 감소했음.

3.2. 2008년 1~2월 농산물 무역

- 2008년 1~2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146.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8.6% 증가했음.
- 수출액은 63.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했고, 수입액은 83.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7.4% 증가했음.
 -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에 11.5억 달러의 순 수출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20.6억 달러의 순 수입을 기록했음.

- 곡물 수출은 67.3만 톤으로 곡물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71.5%나 감소했고, 수입도 37.8만 톤으로 10.5%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9.5만 톤의 순수출을 기록했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84.8% 감소한 것임.
- 쌀 제품(쌀, 쌀가루, 벼 및 종자용 벼 포함)의 수출은 34.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5.6% 증가했고, 수입도 13.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6.0% 증가한 20.7만 톤을 순수출했음. 전체 쌀 제품 가운데 쌀(大米) 수출과 수입이 각각 99.7%, 97.5%를 차지했음.
- 옥수수 제품(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 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의 수출은 6.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96.5%나 감소했지만 수입이 359톤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96.5% 감소한 6.2만 톤을 순수출했음.
- 밀 제품(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의 수출은 17.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6.4% 감소했지만 수입도 2,148톤으로 96.7%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7.0% 감소한 16.9만 톤을 순수출했음.
 - 보리 제품(보리, 보리가루, 가공보리와 종자용 보리 포함)의 수입은 23.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했음.
- 식용 유지종자(oilseed)의 수출은 28.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했고, 수입은 572.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2% 증가했음.
 - 이 중 대두 수출은 12.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0.1% 증가했고, 수입은 546.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1.4% 증가했음.
- 식용 식물유 수출은 3.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9% 감소했으나 수입은 126.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했음.
 - 콩기름(大豆油) 수출은 1.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했고, 수입은 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3% 증가했음.
 - 유채기름(菜籽油) 수출은 1,333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1.4%나 감소했고, 수입도 2.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9.2% 감소했음. 종려기름(棕櫚油)은 73.2만 톤을 수입했음.

표 30 농산물 수출입 실적, 2008년 1~2월

단위: 만 톤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순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곡물 전체	67.3	-71.5	37.8	-10.5	29.5	-84.8
쌀 제품 ¹	34.5	35.6	13.9	13.4	20.7	56.0
옥수수 제품 ²	6.3	-96.5	359톤	-	6.2	-96.5
밀 제품 ³	17.1	-36.4	2,148톤	-96.7	16.9	-17.0
보리 제품	-	-	23.4	4.5	-	-
식용 유지종자	28.1	13.3	572.1	53.2	-544.0	-
대두 제품	12.2	60.1	546.4	51.4	-534.2	-
식용 식물유	3.1	-25.9	126.3	7.3	-123.2	-
콩기름	1.3	15.3	50.0	37.3	-48.7	-
유채기름	1,333톤	-91.4	2.2	-59.2	-2.1	-
종려기름	-	-	73.2	-0.7	-	-
면화	1,231톤	-63.4	33.2	20.5	-33.1	-
식용 당	1.2	-47.3	6.1	-37.3	-4.9	1.8배
채소	129.6	6.1	1.5	8.3	128.1	-
과일	90.0	3.1	28.3	20.9	61.7	-
축산물	6.4	12.0	11.3	51.5	-4.9	-
돼지 제품 ⁴	1.4	-2.2	1.5	3.1배	-0.1	-
가금 제품 ⁵	1.5	7.1	1.4	33.0	0.1	-
수산물	15.2	-6.0	7.0	23.8	8.2	-22.1

주 1. 쌀, 쌀가루, 벼 및 벼종자 포함

2.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

3. 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

4. 산돼지, 중돈, 돼지고기, 가공 돼지고기, 돼지 내장 포함

5. 가금육 및 내장, 가공 가금육, 기타 산가금, 종자용 가금 포함.

자료: 農業部. 2008.4.11. “2008年1-2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http://www.agri.gov.cn/xxfb/t20080411_1013964.htm)

○ 면화 수출은 1,231.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3.4% 감소했고, 수입은 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0.5% 증가했음. 식용당(食糖) 수출은 1.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7.3% 감소했고, 수입도 6.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3% 감소했음.

○ 채소 수출은 129.6만 톤(10.4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6.1%(4.1%) 증가했고, 수입도 1.5만 톤(0.2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8.3%(24.3%) 증가했음.

○ 과일 수출은 90.0만 톤(7.6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3.1%(23.4%) 증가했고, 수입도

28.3만 톤(2.1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20.9%(18.9%) 증가했음.

- 축산물 수출은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했고, 수입은 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5% 증가했음. 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배 증가하였음.
 - 돼지 제품(산돼지, 중돈, 돼지고기, 가공 돼지고기, 돼지 내장 포함)의 수출은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배 증가했음.
 - 가금(家禽) 상품(가금육 및 내장, 가공 가금육, 기타 산가금, 종자용 가금 포함)의 수출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했고, 수입은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0% 증가했음.
- 수산물 수출은 15.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했고, 수입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8% 증가했음. 수산물의 무역수지 흑자는 8.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1% 감소했음.

[참고자료]

- 農業部. 2007.11.2. “2007年前三季度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_____. 2008.1.11. “2007年蔬菜市場形勢”
- _____. 2008.1.11. “2007年水果市場形勢”
- _____. 2008.1.11. “2007年禽蛋市場形勢”
- _____. 2008.1.11. “2007年我國禽肉市場形勢”
- _____. 2008.1.11. “2007年我國牛羊肉貿易及國際市場形勢”
- _____. 2008.2.4. “2007年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_____. 각 연도,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 _____. 2008.4.11. “2008年1-2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_____. 2008.4.21. “2008年一季度我國蔬菜市場形勢”

4. 소득 동향

- 전국 31개 성·자치구·시의 6.8만 호의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1~3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1,494위안으로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3%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임금소득은 608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했음.
 - 그 중 노무수입이 35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했고, 현지 노무수입은 12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0% 증가했고, 외지 노무수입은 232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0% 증가했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농산물 판매소득은 55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 증가했음.
 - 그 중 경종작물의 판매소득은 28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했고, 임산물은 1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축산물은 236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0.7%, 수산물은 22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했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겸업소득은 182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했음.
 - 겸업소득의 구성을 보면 공업부문에서 얻은 소득이 37위안으로 2.1% 증가했고, 건축업은 2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했으며, 제3차 산업은 12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했음.
- 동 기간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 중 자산소득은 47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5%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89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1.3% 증가했음.

표 31 도시 및 농촌주민의 1인당 소득과 격차, 1978~2008.3

연 도	1인당 주민 소득(경상가격)		소득격차	
	농촌(A)	도시(B)	절대(B-A)	상대(B/A)
1978	133.6	343.4	209.8	2.57
1980	191.3	477.6	286.3	2.50
1985	397.6	739.1	341.5	1.86
1990	686.3	1,510.2	823.9	2.20
1995	1,577.7	4,283.0	2,705.3	2.71
2000	2,253.4	6,280.0	4,026.6	2.79
2001	2,366.4	6,859.6	4,493.2	2.90
2002	2,475.6	7,702.8	5,227.2	3.11
2003	2,622.2	8,472.2	5,850.0	3.23
2004	2,936.4	9,421.6	6,485.2	3.21
2005	3,254.9	10,493.0	7,238.1	3.22
2006	3,587.0	11,759.5	8,172.5	3.28
2007	4,140.0	13,786.0	9,646.0	3.33
2008.1~3	1,494.0	4,386.0	2,892.0	2.94

주: 농촌주민 소득은 순소득, 도시주민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나타냄.

자료: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編. 2007. 『2007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綜合司. 2008.4.24. “一季度我國農民人均現金收入實際增長9.1%”; 國家統計局綜合司. 2008.4.25. “一季度全國城鎮居民人均可支配收入實際增長3.4%”.

[참고자료]

國家統計局綜合司. 2008.4.24. “一季度我國農民人均現金收入實際增長9.1”

國家統計局綜合司. 2008.4.25. “一季度全國城鎮居民人均可支配收入實際增長3.4%”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編. 2007. 『2007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5. 2007년 향진기업 현황

5.1. 기본 현황 및 특징

○ 주요 경제지표들이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

- 2007년 전국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6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14.1% 증가하였음. 이 중 공업부문 부가가치는 4조 7,800억 위안으로 부가가치 총액의 70.4%를 차지하였음.
- 2007년 향진기업의 생산판매율은 94.7%로 전년대비 0.3% 증가했으며 이윤 총액은 1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 납세 총액은 7,2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음.

○ 향진기업의 규모화 진전

-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대규모 향진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3조 3,7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했음. 이는 연간 매출액 500만 위안 미만의 소규모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6.7% 포인트 높은 수치임.
- 대규모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중국 전체 공업부문 부가가치 총액의 70.6%를 차지했음. 이들 대규모 향진기업은 2007년도에 3,200억 위안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2조 3,830억 위안을 수출하여 중국 전체 향진기업 수출액의 78.9%를 차지했음.

○ 농산물가공업은 향진기업의 비교우위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서 농산물가공업의 부가가치가 대규모 향진기업 부가가치 총액의 31.5%를 차지하였음.

- 2007년도에 향진기업 중 농산물가공업은 수출 감소와 국내 시장진입 기준 강화로 하반기의 성장속도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안정적인 수출 확대

- 향진기업은 2006년 이후 빈번히 발생하는 무역마찰, 인민폐가치 절상 압력 등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부 지역 향진기업의 수출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성장도 발생하였지만 강소성, 절강성, 광둥성, 산둥성 지역의 향진기업은 수출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여 전국 향진기업의 수출을 선도하였음.

○ 제3차 산업의 발전

- 중국 정부가 서비스산업인 제3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향진기업 중 제3차 산업, 특히 농촌관광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여행, 휴가, 유통과 관련된 농촌지역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농촌 노동력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

- 2007년 말 중국 전체 향진기업의 종업원 수는 1억 5,000만 명에 이르며 2007년 한 해 동안 약 400~4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5.2. 향진기업의 성장요인

- 중국 정부는 농촌 노동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농산물가공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서부대개발프로젝트, 동북공업지역진흥정책, 중부지역 개발해 경제권의 발전, 주장 삼각주 확대 등 대규모 개발정책과 연계하여 향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고정자산 투자 확대 및 안정적인 수출 증대가 향진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역특색과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클러스터가 형성,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향진기업의 산업화 수준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 또한 향진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질 및 기술혁신 능력 향상에 주력하였음.

- 농업부가 2006년 ‘향진기업 서비스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데 관한 의견(關於加快鄉鎮企業服務體系建設的意見)’을 하달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향진기업의 발전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기초하여 금융담보, 인재교육, 창업지도, 과학기술 보급, 전문분야 협회 설치,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참고자료]

農業部. 2008.2.4. “2007年全國鄉鎮企業經濟運行情況”

Ⅲ. 농정연구 이슈⁴¹

1. 중국 농업의 성장요인 분석

- 趙芝俊, 張社梅(2006)⁴²는 30개 성·자치구시의 1985~2003년 시계열 통계자료를 이용해 중국의 농업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농업성장 과정에서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의 역할과 성장 기여율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중국 농업성장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율은 연평균 0.41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농업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분석기간 동안 요소투입의 증가는 중국 농업의 산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농업구조 조정과 자원배치의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 농업성장과정에서 그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陳衛平(2006)⁴³은 29개 성·자치구시의 1990~2003년 시계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Malmquist 지수법으로 중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기술진보와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변화 추세와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중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2.59% 증가했으며 이 중 기술진보지수는 연평균 5.48% 증가한 반면 기술효율성변화지수는 연평균 2.78% 하락하였음.
- 전체 29개 성·자치구시 중에서 운남성, 내몽고자치구, 상해시, 귀주성, 시장자치구(티벳)의 농업총요소생산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나머지 24개 성·자치구시는 모두 증가했음.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한 24개 성·자치구시는 대부분 기술효율성은 하락하고 기술진보가 농업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41 李周, 陳勁松, 操建華. 2007. “農業經濟研究進展綜述,” 『中國人文社會科學前沿報告』 4(2007年卷)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42 趙芝俊, 張社梅. 2006. “近20年中國農業技術進步貢獻率的變動趨勢,” 『中國農村經濟』 3.

43 陳衛平. 2006. “中國農業生產率增長, 技術進步與效率變化: 1990~2003年,” 『中國農村觀察』 1.

- 喬秦, 焦方義, 李楠(2006)⁴⁴은 1978~2004년 동안 중국 농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이한 토지제도는 농업생산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고 가격 및 조세제도의 개혁은 이익창출에 기여하여 농업생산자의 생산의 적극성을 자극한 것으로 나타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성장은 제도개혁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밝혔다.

2.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연구

- 개발도상국은 보편적으로 식량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1인당 평균 경작지가 부족한 개발도상국가임. 따라서 식량안보는 중국 농업경제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임.

2.1. 공급측면

- 何秀榮, 肖海峰, 朱啟榮, 李鵬(2004)⁴⁵은 중국의 도시 및 농촌주민의 식량안보(식품안전) 현황에 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식량안보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빈곤발생률을 활용한 결과 개혁개방 이래 중국 농촌의 빈곤발생률은 대폭 감소하였고 식량안보 수준은 부단히 제고되었음.
 - 1978년 중국 농촌에는 약 2.5억 명의 빈곤인구가 존재하여 빈곤발생률은 최고 33.1%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농촌 빈곤인구는 2,365만 명, 빈곤발생률은 1.8%로 감소하여 중국의 식량부족 인구는 1.8% 미만임.
- 최근 20년 동안 중국 도시 및 농촌주민의 식품소비가 다양화됨에 따라 영양섭취구조에서 식량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축산물과 유지작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적으로 식량안보가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경우 나타나는 특징임.

44 喬秦, 焦方義, 李楠. 2006. “中國農村經濟制度變遷與農業增長—對1978~2004年中國農業增長的實證分析,” 『經濟研究』 7.

45 何秀榮, 肖海峰, 朱啟榮, 李鵬. 2004. “中國國家層面的食物安全評估,” 『中國農村觀察』 6.

- 중국의 주민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1985년에 영양학자가 제시한 기준(1인 1일 2,600 칼로리, 단백질 72g, 지방 72g)에 도달했음. 최근 들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칼로리 기준으로도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이 또한 식량안보가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경우 나타나는 특징임.
- 중국 주민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 섭취량은 1인당 GNP 기준을 사용하거나 또는 구매력을 반영하여 수정한 1인당 GNP를 기준으로 하거나 동등한 소득 수준의 국가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남.
 - 이는 1978년 이래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량안보(식품공급)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어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의 식량안보(식품공급)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2. 수요측면

- 최근 몇 년 동안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소비와 관련한 많은 이슈 가운데 71.8%의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소액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周應恒, 彭曉佳(2006)⁴⁶는 강소성 도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지불의사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가상가치평가법(CVM)과 로짓(Logit)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음.
 - 강소성의 도시 소비자는 저장류농약 채소에 대하여 500g당 2.68위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대도시 소비자와 중소도시 소비자는 각각 500g당 2.42위안, 2.77위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Kevin Chen, 石敏俊, Getu Hailu(2004)⁴⁷는 중국 소비자들의 비유전자변형 유채기름

46 周應恒, 彭曉佳. 2006. “江蘇省城市消費者對食品安全支付願意的實證研究—以低殘留青菜為例,”『經濟學(季刊)』3.

47 Kevin Chen, 石敏俊, Getu Hailu. 2004. “對中國消費者非轉基因菜油支付願意的研究,”『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

(菜油)에 대한 지불의사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유전자변형 유채기름보다 평균 33%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4년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결과 62%의 소비자가 유전자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57%의 소비자는 가격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유전자변형 식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음. 이는 2003년 조사결과에 비해 각각 10퍼센트 포인트, 17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것임.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전자변형 식품의 소비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周應恒, 霍麗珊, 彭曉佳(2004)⁴⁸는 남경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구매의사 및 정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보 비대칭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잠재수요가 구매행위로 실현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음.

- 소비자들에게 사실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잠재수요를 구매행위로 전환시키는 한편 생산자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최종적으로 시장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임.

- 周潔紅(2004)⁴⁹은 절강성 도시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채소의 안전에 대한 태도, 인식 및 구매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채소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는 채소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 정도, 품질검사 표준에 대한 신임 정도, 학력 및 가구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3. 이중경제구조의 전환에 관한 연구

- 대규모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 전통적인 농업부문과 노동력의 흡수 능력이 충분하지

48 周應恒, 霍麗珊, 彭曉佳. 2004. “食品安全: 消費者態度, 購買願意及信息的影響—對南京市超市消費者的調查分析,” 『中國農村經濟』 11.

49 周潔紅. 2004. “消費者對蔬菜安全的態度, 認知和購買行為分析—基於對浙江省城市和城鎮消費者的調查統計,” 『中國農村經濟』 11.

못한 현대적인 공업부문의 존재가 이중경제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임. 이중경제구조의 전환은 잠재실업을 해소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경제성장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이중경제구조의 전환에 관한 연구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이동과 빈곤퇴치가 주요한 주제임.

3.1. 농촌 잉여노동력 문제

- 중국은 여전히 이중경제구조의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농촌 잉여노동력의 존재 여부가 이중경제구조 전환의 완성 여부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 농업경제학계에서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규모와 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
- 王檢貴, 丁守海(2005)⁵⁰는 고전학과 추정법, 신고전학과 추정법, 표준구조비교법 등 3가지 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농촌의 잉여노동력 규모를 추정하였음.
- 3가지 추정 방법 중 고전학과적인 추정법이 신뢰도와 해석력 모두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음.
- 고전학과적인 추정법은 잉여노동력을 농업노동력 수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과 경작방법에서 필요한 농업노동력 수의 차로 정의하였으며 중국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4,600만 명으로 추정하였음.

3.2. 농민공 부족(民工荒) 문제

-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대량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대도시 특히 동부연해지역의 대도시로 이동하여 취업하는 농민공의 도시유입 붐(民工潮)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음.
-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동부연해지역의 도시 및 일부 중서부지역에까지 농민공 부족 현상(民工荒)이 일어나고 있음.
- 2004년 이후 특히 노동사회보장부에서 ‘농민공 부족에 관한 조사 보고(關於民工短缺的

50 王檢貴, 丁守海. 2005. “中國究竟還有多少農業剩餘勞動力,” 『中國社會科學』 5.

調查報告)’를 발표한 이후 농민공 부족 문제가 점차 학술허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반적으로 농민공 부족 현상은 농민공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집약형 가공기업의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삼농문제의 영역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고,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하고 있음.

3.3.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빈곤문제는 이중경제구조의 전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의 하나로 샤플리(Shapley) 분해법을 이용하여 빈곤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균소득의 증가와 소득분배 두 가지로 분해하고 이들 요인이 빈곤상태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黃季焜, Scott Rozelle, 章奇(2004)⁵¹의 연구는 빈곤개선의 초기에는 평균소득의 증가가 빈곤 완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분배의 영향이 점차 커지는데 중국은 이미 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있음.
- 萬廣華, 張茵(2006)⁵²은 실증분석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중국의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빈곤 완화 속도가 감소하고 심지어 빈곤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음.

4. 농촌 토지 및 금융제도 연구

4.1. 토지시장

- 토지사용권의 안정과 토지유동이 토지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개혁과 농촌 토지제도

51 黃季焜, Scott Rozelle, 章奇. 2004. 中國的經濟增長,收入分配與貧困,” 林毅夫發展論壇, 2004.9.19. (<http://jlin.ccer.edu.cn/article/newwk.asp?CurPage=3>).

52 萬廣華, 張茵. 2006. “收入增長與不平等對我國貧困的影響,” 『經濟研究』 6: 112-123.

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의 하나임.

- 俞海, 黃季焜(2003)⁵³은 6개 성 15개 현시 180개 지역의 1980년대 초와 2000년의 토양실험 데이터와 이들 지역의 생산조직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토지사용권의 안정성, 농가 간 비정식 토지유통 등 토양의 지속적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토지사용권의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토양 비옥도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반대로 농가 간 비정식 토지유통은 장기적으로 토양 비옥도의 저하를 초래하였음.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들 모두 토양의 비옥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농촌 노동력의 기회비용의 증가가 토지의 비옥도 저하를 초래하지 않았음.
- 분배된 토지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재산권의 불안정성이 농민들의 토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의 적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계의 오래된 관심사항의 하나임.
- 許慶, 張元(2006)⁵⁴은 토지에 대한 장기투자를 ‘토지와 연계된 장기투자’와 ‘토지와 연계되지 않은 장기투자’로 구분한데 기초하여 이탈리아 ADELAIDE 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와 중국 농업부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와 연계된 장기투자’와 ‘토지와 연계되지 않은 장기투자’의 결정요인을 고찰하였음.
 - 전자는 도로, 관개시설, 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논두렁 보수, 수토보존, 토지개량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농기계, 생산수단, 운송수단 등이 포함됨.
 - 연구 결과 토지조정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의 장기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음. 먼저 사람이 줄어 토지를 적게 분배하는(減人減地) 토지조정의 경우 해당 농가의 ‘토지와 연계되지 않은 장기투자’는 대폭 감소하지만 ‘토지와 연계된 장기투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음,
 - 다음으로 사람이 늘어 토지를 많이 분배하는(增人增地) 토지조정의 경우 분배토지가 증가한 농가의 두 가지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53 俞海, 黃季焜. 2003. “土壤肥力變化的社會經濟影響因素分析,” 『資源科學』 2: 63-72.

54 許慶, 張元. 2006. “土地調整, 地權穩定性與農民長期投資激勵,” 『農業經濟導刊』 1.

- 농가의 장기적이 토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토지제도가 아니라 농산물가격, 농자재가격, 비농업 취업기회, 호적제도 등임.

4.2. 농촌 금융시장

- 郭沛(2004)⁵⁵는 1997~2000년 동안의 중국 농촌의 비제도권 금융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동 기간 비제도권 금융 규모는 광의로 계산할 경우 2,238억 위안에서 2,750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협의로 계산할 경우 2,000억 위안 정도를 유지하였음.
- 2001년 발표된 IFAD의 연구보고서는 중국 농촌에서 농민들이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약 4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음. 중국 농촌에서 민간금융의 역할이 확대된 것은 농촌의 금융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 중국 농촌에서 법률적 보호가 취약한 민간 대출이 활성화된 주요 원인은 정보의 우위, 연대보증제도, 독특한 계약집행 방식 등으로 이를 통해 계약의 효력이 보장되고 있음.
 - 첫째, 혈연, 지연, 종교, 신앙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형성된 작은 사회에서 정보의 공개성은 내부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음. 이에 반해 제도권 금융은 거래비용이 매우 높음.
 - 둘째, 민간 대출시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위험을 제어하고 계약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 셋째, 민간대출은 외부의 회계감사 및 위험분담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지만 사람 간의 계약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독특한 관리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계약의 내생적인 위험을 해소하고 있음.

5. 농촌사회 발전 연구

- 농촌통치구조의 개선과 농촌경제발전의 관계 또한 최근 중국 농업경제학계가 관심을

55 郭沛. 2004. “中國農村非正規金融規模估算,” 『經濟研究參考』 39.

갖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이 방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음.

- 沈艳, 姚洋(2006)⁵⁶은 1986~2002년 동안의 8개 성 48개 촌의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촌 선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총 효과와 부분 효과를 분석하였음.
- 최초로 이루어진 촌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총 효과와 부분 효과는 소득격차 지니계수를 각각 6.4~8.0%, 4.6~6.5% 하락시켰음.
- 선거가 치러진 당해 연도로부터 선거 후 2년 까지는 선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았지만 선거 후 3~6년 동안에는 선거가 소득분배 격차를 좁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선거는 일종의 학습과정으로서 1~2년 임기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촌민들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만약 제1회 선거의 결과만을 보면 부정적인 결론을 피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촌 선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완성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羅仁福, 張林秀, 黃季焜, 羅斯高, 劉承芳(2006)⁵⁷은 촌민위원회 위원장 직접선거와 농촌세제개혁이 공공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촌민위원회 위원장 직접선거는 농촌 공공투자의 증대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세제개혁은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농촌 공공투자 시 발생하는 단기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는 중국 정부가 농촌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촌민자치와 민주적인 관리체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張林秀, 羅仁福, 劉承芳, Scott Rozelle(2006)⁵⁸은 전국을 대표하는 샘플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촌사회의 공공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56 沈艳, 姚洋. 2006. “村庄选举和收入分配: 来自8省48村的證據,” 『經濟研究』 4.

57 羅仁福, 張林秀, 黃季焜, 羅斯高, 劉承芳. 2006. “村民自治, 農村稅費改革與農村公共投資,” 『經濟學(季刊)』 5(4); 1295-1310.

58 張林秀, 羅仁福, 劉承芳, Scott Rozelle. 2006. “中國農村社區公共物品投資的決定因素分析,” 『農業經濟導刊』 2.

- 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해당지역 농촌의 경제발전 수준이 공공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상공업이 비교적 발달한 농촌에서는 공공투자 활동이 비교적 많았으며 외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비교적 많은 농촌에서는 해당 농촌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들 외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 경우 촌민들은 공공투자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 실행의 관점에서 보면 상급 정부의 투자는 빈곤지역, 산간벽지, 농업생산조건이 열악한 지역 혹은 소수민족지역에 더욱더 많이 투자되어야 함. 이러한 투자전략은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격차를 축소하는데 도움이 됨.
- 周黎安, 陳輝(2005)⁵⁹는 7개 성, 591개 현 및 현급 시의 1999~2002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세제개혁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특징을 감안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설정하고 농촌 세제개혁이 농민소득 증대에 미친 정책효과를 추정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농촌 세제개혁의 농민 순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율은 최고 40% 이상이고 그 영향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6. 농업경제 연구방법론

- 최근 중국의 농업경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① 과거 생산자만을 강조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하고,
 - ② 과거 양적 성장만을 중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중시하며,
 - ③ 노동력의 절대적 잉여 문제만을 중시하던 시각에서 구조적 잉여 및 결핍을 동시에 고려하고,
 - ④ 특정 문제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 틀을 설정한 다음 영향 메커니즘(모형)과 영향요인(변수)을 확정하고 조사를 통해 획득한 1차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실증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59 周黎安, 陳輝. 2005. “中國農村稅費改革的政策效果: 基于雙重差分模型的估計,” 『經濟研究』 8.

IV. 정 책 자 료

1. 『농산물 품질안전법』 전문

주석령 제49호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이 2006년 4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포하고,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胡錦濤)

2006년 4월 29일

제1장 총칙

제2장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

제3장 농산물 산지

제4장 농산물 생산

제5장 농산물 포장과 표시

제6장 감독 및 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유지·보호하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률에서 “농산물”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상품을 의미한다. 본 법률에서 “농산물 품질안전”은 농산물의 품질이 사람들의 건강

과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의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은 업무분담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업무를 해당 인민정부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할당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의 수행시 사용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하는 한편 작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하는 동시에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고,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은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직책과 권한에 따라 마땅히 농산물 품질안전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농산물 생산의 표준화를 인도하고 확대해야 하며 우수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과학적인 품질안전 관리 방법을 널리 시행하고 선진적이고 안전한 생산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선전하고 인민대중의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들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인도하고 농산물 소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농산물 품질 안전 표준

제11조 국가는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강제성을 지닌 기술규범이다.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의 제정과 공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2조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마땅히 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여야 하며 안전한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에 근거해야 하며 적기에 수정되어야 한다.

제14조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은 농업행정부문과 유관부문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3장 농산물 산지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품종의 품종 특성과 생산지역의 대기, 토양, 유독유해물질 상황 등에 근거하여 특정 농산물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생산지역의 폐쇄를 제기하고 해당 행정구역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부문이 정한다. 농산물 생산 금지구역의 조정은 앞 조항이 규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각종 조치를 실시하여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표준화 생산 종합시범지역, 시범농장, 양식구역, 동식물 방역구역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17조 유독유해물질이 규정된 기준보다 초과한 지역에서는 식용농산물의 생산, 포획, 채집 및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금지한다.

제18조 농산물 산지에 폐수, 배기가스, 고체 폐기물 혹은 기타 유해유독물질을 배출하거나 흘려보내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금지한다.

제19조 농산물 생산지는 화학비료, 농약, 수의약, 농업용 비닐 등 화공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농산물 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농산물 생산

제20조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기술 요구사항과 조작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 제21조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비료, 수의기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비료 등 농업투입재에 대해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 제22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업투입재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투입재의 안전사용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 제23조 농업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과 농업기술 보급기관은 농업생산자에게 품질안전 지식과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제24조 농산물 생산기업과 농민 협동경제조직은 농산물의 생산 기록을 작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사실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1) 사용한 농업투입재의 명칭, 출처, 사용처, 용법, 용량 및 사용, 사용중지 날짜;
 - (2) 동물 전염병, 식물 병충해의 발생 및 방제 상황;
 - (3) 수확, 도축 또는 포획한 날짜
- 농산물의 생산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기록의 위조를 금지한다. 국가는 기타 농산물 생산자도 농산물 생산기록을 작성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제25조 농산물 생산자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농업투입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투입재 사용의 안전 간격기(間隔期) 혹은 휴약기(休藥期)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농업투입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제26조 농산물 생산기업과 농민협동경제조직은 스스로 혹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서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농산물은 판매를 금지한다.
- 제27조 농민협동경제조직과 농산물 품목협회는 그 구성원에게 적기에 생산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제어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5장 농산물 포장과 표시

- 제28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 판매자

의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하거나 부가적인 표지를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포장물 혹은 부가적인 표지에는 반드시 상품명, 산지, 생산자, 생산날짜, 유통기한, 품질등급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첨가제의 명칭도 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하도록 한다.

제29조 농산물의 포장, 신선도 유지, 저장, 운송 중 사용된 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재료는 국가의 강제적인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0조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표식을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법률의 필요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 동식물 및 그 상품은 검역합격 표지, 검역합격증명을 부착해야 한다.

제32조 판매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자는 무공해농산물 표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농산물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자는 그에 상응하는 농산물 품질 표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앞 조항이 규정한 농산물 품질 표지의 위조를 금지한다.

제6장 감독 및 검사

제33조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농산물은 판매를 금지한다.

- (1)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농약, 수의약 또는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한 것;
- (2)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약, 수의약 등 화학물질이 잔류하거나 혹은 중금속 등의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
- (3) 병원성 기생충, 미생물 혹은 생물독소 등을 포함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 (4) 국가의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을 사용한 것;
- (5) 기타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제34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의 품질안전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생산 중이거나 혹은 시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해 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출검사 결과는 국무원 농업행정부문 혹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에서 그 권한에 따라 공포해야 한다. 추출검사에 대

한 감독은 본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되 피검사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되고 추출하는 샘플의 수는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급 농업행정부문이 추출검사를 진행한 농산물은 하급의 농업행정부문이 중복해서 추출검사를 할 수 없다.

제35조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는 현존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반드시 상응하는 검사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 혹은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이 합격심사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제정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관은 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을 인증해야 한다.

제36조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는 추출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5일 내에 농산물 품질안전 추출검사를 실시한 농업행정부문 혹은 상위의 농업행정부문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농업행정부문과 유관부문이 인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피검사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는 빠른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37조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구를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을 발견했을 경우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농업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국가는 단체나 개인이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장려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본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관련부분은 고발이나 고소를 접수했을 경우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 과정에서 생산,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 및 파악할 수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차압,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관 단체와 개인은 제어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즉시 산지의 향급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기관은 이를 즉시 처리하고 상위 인민정부와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업행정부문은 즉시 동급의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과정에서 본 법률 제 33조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발견한 경우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에 의거하여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42조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표준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즉시 제정해야 하며,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가 유관부문이 지정한 국외의 관련 표준을 참고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제43조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담당자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감독을 실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44조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경우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적인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태가 심각한 경우 검사 자격을 박탈하고 손실을 야기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검사자격을 박탈한다.

제45조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농산물 산지에 폐수, 배기가스, 고체 폐기물 혹은 기타 유해유독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환경보호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6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의 규정에 위반되는 농업투입재를 사용한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이 농산물 생산기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위조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

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본 법률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대로 포장 및 표지를 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본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 재료를 사용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령하고 오염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해처리하고 무해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소각한다. 위법적인 소득은 몰수하고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이 본 법률 제 33조 제1항에서 제3항 혹은 제5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령하고 이미 판매한 농산물은 즉시 회수하며 법률을 위반하여 판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해처리하거나 혹은 소각한다. 위법적인 소득은 몰수하고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산물 판매기업이 판매한 농산물 중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앞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한 농산물 중 본 조항 첫 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판매한 농산물은 첫 번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농산물 판매자는 첫 번째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본 법률 제37조 첫 번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본 법률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 품질 표지를 위조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적인 소득은 몰수하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본 법률 제44조, 제47조에서 제49조, 제50조 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본 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행정 처벌 및 처벌기관에 대한 법률은 기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처벌할 수 없다.

제53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본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4조 본 법률 제33조에서 열거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의 손실을 야기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 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도 직접적으로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55조 돼지 도축의 관리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6조 본 법률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령 제11호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이 2007년 12월 6일 농업부 제15차 상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금일 공포하고,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 부장 손정채(孫政才)

2007년 12월 25일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

제3장 표지사용

제4장 관리 및 감독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농업법』, 『농산물 품질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품질과 특성을 보장하며, 농산물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률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상품을 의미한다. “농산물 지리적표시”라 함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상품 품질과 관련된 특성이 자연생태적 환경과 역사적 인문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지역명칭을 사용한 특유의 농산물 표시를 의미한다.

제3조 국가는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등록된 농산물 지리적표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농업부는 전국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사업을 책임진다.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과 전문가 평가사업을 책임진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일차적인

심사를 책임진다. 농업부가 설립한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심사를 책임진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재배업, 목축업, 어업 및 농산물 품질안전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은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 경비를 해당 부문의 연도별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6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보호 및 이용을 해당 행정구역의 농업·농촌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책, 자금 등의 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 구성원이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2장 등록

제7조 본 법률에 의거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농산물의 명칭은 지역명칭과 농산물에 통용되는 명칭으로 구성될 것;
- (2) 농산물이 독특한 품질 특성 혹은 특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 (3) 농산물의 품질과 특성이 주로 독특한 자연생태 환경과 역사적, 인문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
- (4) 농산물이 제한적인 생산지역 범위를 가질 것;
- (5) 산지 환경, 농산물의 품질이 국가의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할 것

제8조 현금 지방인민정부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의거하여 확정된 농민협동경제조직, 품목 협회 등의 조직이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이 된다.

- (1) 농산물 지리적표시 및 그 상품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
- (2)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를 위해 지도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구비한 자;
- (3)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

제9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조건을 갖춘 신청인은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서;
- (2) 신청인의 자격 증명;
- (3) 농산물의 전형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 및 품질 검정 보고서;
- (4) 산지 환경조건, 생산기술 규범 및 농산물 품질안전 기술규범;

- (5) 지역범위를 확정하는 문서와 생산지역 분포도;
- (6) 상품의 실물 견본 또는 견본 사진;
- (7) 기타 필요한 설명 및 증명자료

제10조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1차 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차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서류와 1차 심사의견을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1차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의견과 건의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신청서류와 1차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전문가 심사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전문가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조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경우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업부를 대표하여 공시한다. 공시내용에 대해 단체와 개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농업부는 등록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서'를 발급하고 등록 상품과 관련된 기술규범과 표준을 공포한다.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농업부가 등록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3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서는 장기간 유효하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서 소유자는 규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증서 소유자 또는 법정 대표인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 (2) 지역범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연생태 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농산물 지리적표시는 공공표지와 지역 상품명칭을 상호 결합한 표지제도이다. 공공표지의 기본 도안은 첨부한 도안과 같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사용범위는 농업부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장 표시의 사용

제15조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단체와 개인은 등록증서 소유자에게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생산·경영하는 농산물이 등록시 확정된 지역범위에서 생산될 것;
- (2) 등록 농산물과 관련된 생산·경영 자격을 취득하고 있을 것;
- (3) 규정된 품질 기술규범에 의거하여 엄격한 생산·경영 활동이 가능할 것;
- (4)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능력을 구비할 것

농산물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경영 연도와 등록증서 보유자의 서명이 포함된 농산물 지리적표시 사용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이 협의에는 사용하는 표시의 수량, 범위 및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기하여야 한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서 보유자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사용자로부터 사용비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6조 농산물 지리적표시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상품 및 그 포장에 농산물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2) 사용등록된 농산물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선전, 전람회 및 전시회 참가, 판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7조 농산물 지리적표시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등록증서 보유자의 검사 및 감독 자발적 수용;
- (2)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품질과 신용 보증;
- (3)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정확하고 규범화된 사용

제4장 관리 및 감독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강화하여 등록된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지역범위, 표시의 사용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부는 등록된 지리적표시 농산물 또는 등록증서 보유자가 본 방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농업부는 그 지리적표시 등록증서를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는 품질제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서 보유자 및 표시 사용자는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품질과 신용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농산물 지리적표시와 등록증서를 위조, 도용할 수 없다.

제21조 국가는 단체와 개인의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대한 감독을 장려한다.

제22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적이득 취득,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이 『농산물 품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농업부는 국외의 농산물 지리적표시를 중국에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보호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본 법률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도안: 공공표지 기본 도안



V. 농 업 통 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2	13.6	0.0	2,837.0	0.5	20.2	0.0	1,624.1	1.2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3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5	11.1
2003	237.1	33.0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7	3,365.3	10.1	297.9	21.3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1	2,051.0	18.3
2008.1	50.1	24.6	336.9	14.9	23.0	11.0	168.7	13.6
2008.2	80.4	32.9	607.6	13.2	49.1	32.1	324.7	15.1
2008.3	121.0	36.3	967.2	12.5	86.4	40.4	498.9	17.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2	1,070.6	0.0	6,304.0	17.0	6,150.3	0.0	29,646.9	20.7
1993	1,047.9	-2.1	7,258.9	14.4	6,834.1	11.1	28,218.7	24.2
1994	1,179.5	12.6	8,214.5	14.4	5,915.1	-13.4	29,214.5	20.2
1995	725.7	-38.5	9,839.0	7.4	1,647.5	-72.1	31,086.7	5.3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9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1.3	35.0	11,471.5	20.2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6	12,185.2	22.8	11,477.5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3	-31.4	36,872.6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1	386.5	-14.9	1,870.2	20.7	499.8	-53.5	3,140.9	15.9
2008.2	688.7	-20.0	3,534.8	19.5	964.8	-54.8	6,434.7	15.0
2008.3	1,015.3	-18.9	5,379.2	18.9	1,406.7	-55.7	9,741.3	14.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5.3	38.5	678.8	0.8	9.1	44.7	618.0	1.5
1993	6.7	19.5	694.7	1.0	9.9	28.9	622.3	1.6
1994	12.2	17.4	835.2	1.5	23.4	32.4	771.1	3.0
1995	44.9	27.9	1,081.5	4.1	43.3	27.3	775.5	5.6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2	1,133.5	5.2	91.6	33.8	1,043.1	8.8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6	1,178.1	9.7
2002	95.6	53.7	1,374.5	7.0	125.2	60.6	1,239.2	10.1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9	9.7	169.0	63.3	1,293.5	13.1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1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1	32.8	65.4	186.0	17.6	11.6	50.2	100.5	11.5
2008.2	48.5	60.4	334.7	14.5	25.9	52.7	193.3	13.4
2008.3	71.6	59.2	554.1	12.9	45.3	52.4	306.7	14.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941.9	88.0	3,404.0	27.7	6,017.0	97.8	14,197.7	42.4
1993	906.2	86.5	3,839.2	23.6	6,568.5	96.1	18,276.0	35.9
1994	932.5	79.1	4,475.3	20.8	5,495.0	92.9	19,030.8	28.9
1995	396.3	54.6	5,537.6	7.2	935.1	56.8	20,003.0	4.7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9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8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25.5	62.2	6,212.7	27.8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1	196.8	50.9	1,018.6	19.3	387.2	77.5	2,227.3	17.4
2008.2	382.0	55.5	2,038.7	18.7	775.9	80.4	4,571.9	17.0
2008.3	565.5	55.7	3,105.8	18.2	1,126.2	80.1	6,859.2	16.4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0.03	0.2	95.9	0.0	0.01	0.1	55.3	0.0
1993	0.1	0.3	89.1	0.1	0.02	0.1	23.8	0.1
1994	0.09	0.1	116.0	0.1	0.03	0.0	61.3	0.0
1995	1.1	0.7	155.5	0.7	0.7	0.4	76.7	0.9
1996	0.7	0.4	260.0	0.3	0.4	0.3	99.0	0.4
1997	1.9	1.0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6	121.0	2.6	1.0	0.4	86.3	1.1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9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6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3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7	2.0	0.5	93.0	2.2
2008.1	0.7	1.3	16.7	3.9	0.1	0.5	8.4	1.2
2008.2	1.2	1.4	31.5	3.7	0.2	0.4	16.0	1.3
2008.3	2.4	2.0	49.0	4.9	0.5	0.6	24.2	2.1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27.6	2.6	874.4	3.2	4.6	0.1	435.7	1.1
1993	27.8	2.6	631.6	4.4	5.4	0.1	347.0	1.6
1994	37.2	3.2	932.3	4.0	8.9	0.1	453.7	2.0
1995	35.1	4.8	1,224.1	2.9	10.1	0.6	555.5	1.8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3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4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1	11.0	2.9	286.4	3.8	5.0	1.0	88.8	5.6
2008.2	18.0	2.6	495.9	3.6	7.8	0.8	155.3	5.0
2008.3	27.1	2.7	758.2	3.6	11.6	0.8	242.5	4.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7.7	56.5	575.5	1.3	10.9	53.9	519.6	2.1
1993	17.9	52.3	450.0	4.0	20.7	60.3	445.3	4.6
1994	39.1	56.0	508.4	7.7	42.0	58.2	410.0	10.2
1995	48.9	30.5	499.8	9.8	66.5	41.9	355.9	18.7
1996	60.3	38.7	404.1	14.9	67.7	46	289.7	23.4
1997	37.3	18.6	344.9	10.8	37.3	15.6	279.2	1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2	217.5	25.3
1999	49.3	33.0	268.7	18.3	73.6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5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2	17.5	166.9	18.7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4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8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5	25.0
2008.1	0.8	1.5	6.5	11.8	0.6	2.7	6.1	9.8
2008.2	1.7	2.1	11.7	14.3	1.7	3.5	10.6	16.0
2008.3	2.6	2.1	18.8	13.7	2.8	3.2	17.4	16.1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60.9	5.7	1,618.5	3.8	113.0	1.8	14,770.0	0.8
1993	74.3	7.1	2,268.8	3.3	244.7	3.6	9,245.2	2.6
1994	98.0	8.3	2,086.9	4.7	372.4	6.3	9,350.2	4.0
1995	165.9	22.9	2,249.6	7.4	655.9	39.8	10,114.8	6.5
1996	226.4	22.6	2,748.7	8.2	773.6	37.4	10,206.4	7.6
1997	275.2	18.0	2,595.3	10.6	923.5	16.7	10,607.1	8.7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1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19.9	12.8	1,656.7	13.3	629.7	11.4	9,581.0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6.0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1	56.6	14.6	247.0	22.9	60.1	12.0	700.4	8.6
2008.2	93.7	13.6	477.8	19.6	106.1	11.0	1,509.8	7.0
2008.3	145.5	14.3	738.0	19.7	164.4	11.7	2,347.5	7.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2	0.7	4.8	1,486.8	0.0	0.3	1.3	431.2	0.1
1993	9.5	27.8	1,411.6	0.7	3.7	10.8	361.0	1.0
1994	18.5	26.4	1,552.9	1.2	6.8	9.4	357.3	1.9
1995	65.6	40.9	1,682.0	3.9	48.2	30.4	432.7	11.1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1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30.0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8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3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1	15.9	31.8	127.8	12.5	10.7	46.6	53.6	20.0
2008.2	29.0	36.1	229.8	12.6	21.3	43.4	104.7	20.3
2008.3	44.4	36.7	345.4	12.9	37.9	43.8	150.7	25.2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2~2008.3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2	40.3	3.8	407.2	9.9	15.7	0.3	243.6	6.4
1993	39.7	3.8	519.3	7.6	15.5	0.2	350.4	4.4
1994	111.7	9.5	720.0	15.5	38.7	0.7	379.9	10.2
1995	128.4	17.7	827.8	15.5	46.5	2.8	413.5	11.2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1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2	36.4	465.2	4.1	1,245.5	37.3
2004	910.5	37.6	2,264.3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2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1	122.0	31.6	318.3	38.4	47.6	9.5	124.3	38.3
2008.2	195.0	28.3	522.4	37.3	75.0	7.8	197.7	37.9
2008.3	277.2	27.3	777.1	35.7	104.4	7.4	292.1	35.7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11. 중국의 쌀 생산량, 수출입량 및 가격, 1983~2006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kg/ha)	생산량 (만 톤)	수출입량(만 톤)		시장가격 (위안/톤)			국제가격 (달러/톤)
				수입	수출	자포니카 쌀	조생종 인디카쌀	중만생종 인디카쌀	
1983	33,137.0	5,096.1	16,887.0	n.a.	56.6	n.a.	n.a.	n.a.	n.a.
1984	33,179.0	5,372.7	17,826.0	n.a.	118.9	n.a.	n.a.	n.a.	n.a.
1985	33,070.0	5,097.4	16,857.0	n.a.	101.9	n.a.	n.a.	n.a.	n.a.
1986	32,266.0	5,337.5	17,222.0	n.a.	95.6	n.a.	n.a.	n.a.	n.a.
1987	32,193.0	5,413.0	17,426.0	n.a.	98.9	n.a.	n.a.	n.a.	n.a.
1988	31,987.0	5,286.8	16,911.0	31.0	70.5	n.a.	n.a.	n.a.	n.a.
1989	32,700.0	5,508.6	18,013.0	n.a.	32.0	n.a.	n.a.	n.a.	304.6
1990	33,064.0	5,726.2	18,933.0	5.9	33.0	n.a.	n.a.	n.a.	277.4
1991	32,590.0	5,640.1	18,381.0	14.3	69.0	n.a.	n.a.	n.a.	301.0
1992	32,090.0	5,803.1	18,622.2	1.0	95.0	n.a.	n.a.	n.a.	278.9
1993	30,355.0	5,854.1	17,770.2	9.7	144.2	n.a.	n.a.	n.a.	248.2
1994	30,171.0	5,831.0	17,593.0	51.4	154.1	n.a.	n.a.	n.a.	288.2
1995	30,744.0	6,025.0	18,523.0	164.5	5.7	3,193.3	2,540.0	2,678.3	336.0
1996	31,406.0	6,212.0	19,510.0	77.4	27.7	3,193.3	2,540.0	2,678.3	352.1
1997	31,765.0	6,319.0	20,073.0	35.9	95.2	2,520.8	2,013.3	2,146.7	316.9
1998	31,213.8	6,366.2	19,871.3	26.0	375.6	2,400.0	1,966.7	2,125.8	316.0
1999	31,284.0	6,345.0	19,849.0	19.1	271.7	2,273.3	1,905.0	2,022.5	251.7
2000	29,962.0	6,272.0	18,791.0	24.9	296.2	1,919.2	1,552.5	1,675.8	206.7
2001	28,812.0	6,163.4	17,758.0	29.3	187.0	2,045.0	1,597.5	1,730.0	177.4
2002	28,202.0	6,189.0	17,454.0	23.8	199.0	1,985.8	1,650.8	1,745.8	196.9
2003	26,508.0	6,060.8	16,066.0	25.9	261.7	2,004.2	1,706.7	1,825.8	200.9
2004	28,379.0	6,310.6	17,908.8	76.6	90.9	2,815.0	2,444.2	2,604.2	244.5
2005	28,847.2	6,260.2	18,058.8	52.2	68.6	2,933.3	2,496.7	2,639.2	290.5
2006	29,294.6	6,232.3	18,257.2	73.0	125.3	3,027.5	2,470.0	2,615.0	311.2

주: 수출입량은 1993년 이후 버 포함; 시장가격은 중국 농업부의 160개 물가정보관측 현(縣) 평균가격; 국제시장가격은 태국 방콕 FOB가격(B급)임.

자료: 農業部. 2007. 『2007年中國農業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12. 중국의 밀 생산량, 수출입량 및 가격, 1983~2006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kg/ha)	생산량 (만 톤)	수출입량 (만 톤)		시장가격 (위안/톤)			국제가격 (달러/톤)
				수입	수출	중등품 밀	표준 밀가루	정제 밀가루	
1983	29,050.0	2,801.7	8,139.0	1,101.9	n.a.	n.a.	n.a.	n.a.	n.a.
1984	29,577.0	2,969.2	8,782.0	1,000.0	n.a.	n.a.	n.a.	n.a.	n.a.
1985	29,218.0	2,936.9	8,581.0	541.0	n.a.	n.a.	n.a.	n.a.	n.a.
1986	29,616.0	3,040.2	9,004.0	611.0	n.a.	n.a.	n.a.	n.a.	n.a.
1987	28,798.0	2,982.8	8,590.0	1,320.0	n.a.	n.a.	n.a.	n.a.	n.a.
1988	28,785.0	2,967.9	8,543.0	1,455.0	n.a.	757.5	n.a.	n.a.	n.a.
1989	29,841.0	3,043.1	9,081.0	1,488.0	n.a.	1,062.7	n.a.	n.a.	n.a.
1990	30,753.0	3,194.2	9,823.0	1,253.0	n.a.	886.7	n.a.	n.a.	n.a.
1991	30,948.0	3,100.4	9,595.0	1,237.0	n.a.	778.3	n.a.	n.a.	n.a.
1992	30,496.0	3,331.2	10,158.7	1,058.0	n.a.	770.0	n.a.	n.a.	n.a.
1993	30,235.0	3,518.8	10,639.0	645.0	29.1	804.2	n.a.	n.a.	n.a.
1994	28,981.0	3,426.0	9,930.0	732.8	26.8	1,135.8	n.a.	n.a.	n.a.
1995	28,860.0	3,542.0	10,221.0	1,162.7	22.5	1,685.0	2,425.0	2,801.7	n.a.
1996	29,611.0	3,734.0	11,057.0	829.9	56.5	1,735.0	2,425.0	2,801.7	n.a.
1997	30,057.0	4,102.0	12,329.0	192.2	45.8	1,455.8	2,292.5	2,684.2	n.a.
1998	29,774.1	3,685.3	10,972.6	154.8	27.5	1,328.3	2,126.7	2,542.5	128.5
1999	28,855.0	3,946.6	11,388.0	50.5	16.4	1,225.0	2,051.7	2,424.2	114.4
2000	26,653.0	3,738.4	9,964.0	91.9	18.8	998.3	1,799.2	2,171.7	118.6
2001	24,664.0	3,806.0	9,387.0	73.9	71.3	1,040.0	1,690.8	2,039.2	129.7
2002	23,908.0	3,777.0	9,029.0	63.2	97.7	1,047.5	1,716.7	2,046.7	150.8
2003	21,997.0	3,931.9	8,649.0	44.7	251.4	1,087.5	1,722.5	2,055.0	149.6
2004	21,626.0	4,251.9	9,195.2	725.8	108.9	1,450.8	2,205.8	2,520.8	161.3
2005	22,792.6	4,275.3	9,744.5	353.8	60.5	1,461.7	2,245.8	2,578.3	157.8
2006	22,961.4	4,549.7	10,446.7	61.3	151.0	1,419.2	2,249.2	2,613.3	199.7

주: 수출입량은 1993년 이후 밀가루 포함; 시장가격은 중국 농업부의 160개 물가정보관측 현(縣) 평균가격; 국제시장가격은 미국 걸프만 본선인도가격(2호 겨울 홍소맥).

자료: 農業部. 2007. 『2007年中國農業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13.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수출입량 및 가격, 1983~2006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kg/ha)	생산량 (만 톤)	수출입량 (만 톤)		시장가격 (위안/톤)	국제가격 (달러/톤)
				수입	수출		
1983	18,824.0	3,623.6	6,821.0	211.0	6.1	n.a.	n.a.
1984	18,537.0	3,960.2	7,341.0	5.5	95.1	n.a.	n.a.
1985	17,694.0	3,607.4	6,383.0	9.1	633.7	n.a.	n.a.
1986	19,124.0	3,705.3	7,086.0	58.8	564.0	n.a.	n.a.
1987	20,212.0	3,920.4	7,924.0	154.2	392.0	n.a.	n.a.
1988	19,692.0	3,928.0	7,735.0	10.9	391.2	564.2	n.a.
1989	20,353.0	3,878.1	7,893.0	6.8	350.2	776.7	n.a.
1990	21,401.0	4,524.1	9,682.0	36.9	340.4	686.7	n.a.
1991	21,574.0	4,578.2	9,877.0	0.1	778.2	590.0	n.a.
1992	21,044.0	4,532.6	9,538.3	n.a.	1034.0	625.0	n.a.
1993	20,694.0	4,963.0	10,270.4	0.1	1110.0	726.7	n.a.
1994	21,152.0	4,693.0	9,928.0	0.2	874.9	1004.2	107.4
1995	22,776.0	4,917.0	11,199.0	526.4	11.5	1576.7	124.0
1996	24,498.0	5,203.0	12,747.0	44.7	23.8	1481.7	165.1
1997	23,775.0	4,387.0	10,430.0	0.3	667.1	1150.8	117.2
1998	25,238.8	5,267.8	13,295.4	25.2	469.2	1269.2	102.0
1999	25,904.0	4,945.0	12,808.0	7.9	433.3	1092.5	91.7
2000	23,056.0	4,597.5	10,600.0	0.3	1047.9	887.5	88.4
2001	24,282.0	4,698.5	11,409.0	3.9	600.0	1060.0	89.6
2002	24,634.0	4,925.0	12,131.0	0.8	1167.5	1033.3	99.2
2003	24,068.0	4,813.0	11,583.0	0.1	1639.1	1087.5	105.2
2004	25,446.0	5,120.1	13,028.7	0.2	232.4	1288.3	111.7
2005	26,358.3	5,287.3	13,936.5	0.4	864.2	1229.2	98.5
2006	26,970.9	5,394.0	14,548.2	6.5	309.9	1276.7	122.1

주: 수출입량은 1993년 이후 옥수수가루 포함; 시장가격은 농업부 160개 물가정보관측 현(縣)의 중등품 옥수수 평균가격; 국제시장가격은 2호 옥수수의 미국 걸프만 본선인도가격.

자료: 農業部. 2007. 『2007年中國農業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14. 중국의 대두 생산량, 수출입량 및 가격, 1983~2006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kg/ha)	생산량 (만 톤)	수출입량 (만 톤)		시장가격 (위안/톤)	국제가격 (달러/톤)
				수입	수출		
1983	7,567.0	1,289.8	976.0	n.a.	35.0	n.a.	n.a.
1984	7,286.0	1,331.3	970.0	n.a.	84.0	n.a.	n.a.
1985	7,718.0	1,360.5	1,050.0	0.1	114.0	n.a.	n.a.
1986	8,295.0	1,399.6	1,161.0	29.1	137.0	n.a.	n.a.
1987	8,445.0	1,476.6	1,247.0	27.3	171.0	n.a.	n.a.
1988	8,120.0	1,434.7	1,165.0	15.2	148.0	1,291.7	n.a.
1989	8,057.0	1,269.7	1,023.0	0.1	117.0	1,781.7	n.a.
1990	7,560.0	1,455.0	1,100.0	0.1	94.0	1,586.7	n.a.
1991	7,041.0	1,379.1	971.0	0.1	111.0	1,489.2	n.a.
1992	7,221.0	1,426.4	1,030.0	12.1	66.0	1,800.8	n.a.
1993	9,454.0	1,619.0	1,530.0	9.9	37.3	2,200.8	n.a.
1994	9,222.0	1,735.0	1,560.0	5.2	83.3	2,446.7	238.8
1995	8,127.0	1,661.0	1,350.0	29.8	37.6	2,660.0	239.3
1996	7,471.0	1,770.0	1,322.0	111.4	19.3	3,208.3	288.5
1997	8,346.0	1,765.0	1,473.0	288.6	18.8	3,414.2	291.7
1998	8,500.2	1,782.5	1,515.2	320.1	17.2	3,074.2	235.0
1999	7,962.0	1,789.0	1,425.0	432.0	20.7	2,597.5	184.9
2000	9,307.0	1,656.0	1,541.0	1,041.9	21.5	2,485.0	193.0
2001	9,481.8	1,625.0	1,540.7	1,394.0	26.2	2,405.8	180.7
2002	8,720.0	1,893.0	1,651.0	1,131.5	30.5	2,418.3	201.3
2003	9,312.9	1,652.9	1,539.3	2,074.1	29.5	2,857.5	241.3
2004	9,589.0	1,814.7	1,740.1	2,023.0	34.9	3,682.5	288.5
2005	9,590.8	1,704.5	1,634.8	2,659.1	41.3	3,359.2	238.6
2006	9,279.9	1,720.6	1,596.7	2,827.0	39.5	3,285.8	234.8

주: 수출입량은 1993년 이후 대두가루 포함; 시장가격은 농업부 160개 물가정보관측 현(縣)의 중
등품 옥수수 평균가격; 국제시장가격은 1호 대두의 미국 걸프만 본선인도가격.

자료: 農業部. 2007. 『2007年中國農業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15. 중국의 농산물 수입 실적, 2008년 1~3월

구 분	2008.1월		2008.2월		2008.3월		2008.1~3월	
	수량 (천 톤)	금액 (만 달러)	수량 (천 톤)	금액 (만 달러)	수량 (천 톤)	금액 (만 달러)	수량 (천 톤)	금액 (만 달러)
농산물 전체		453,430.9		380,637.5		464,627.3		1,301,369.3
식량	214.6	10,526.9	163.5	7,638.5	151.9	7,315.4	530.0	25,474.9
쌀 제품	102.4	5,906.8	36.1	2,059.5	40.0	2,357.5	178.6	10,318.0
옥수수 제품	0.2	11.6	0.2	30.8	0.6	117.8	1.0	160.1
밀 제품	1.5	77.1	0.7	42.7	0.6	36.0	2.7	155.8
보리 제품	108.6	4,500.7	125.4	5,475.6	105.5	4,681.0	339.5	14,657.2
식용유지종자	3,497.3	189,755.9	2,224.1	126,882.9	2,465.4	147,222.4	8,192.2	464,525.0
대두	3,441.4	184,226.9	2,023.2	113,768.4	2,316.5	137,213.4	7,780.7	435,553.4
채종유	11.1	575.0	181.4	10,574.0	122.0	7,308.0	314.4	18,457.0
식용식물유	561.8	54,152.9	701.5	73,382.4	750.2	82,635.9	2,013.5	210,171.2
유채기름	0.7	58.3	21.2	2,505.6	11.9	1,655.9	33.7	4,219.8
콩기름	150.7	14,810.9	349.5	37,164.2	219.4	24,243.2	719.6	76,218.3
땅콩기름	1.8	331.7	1.4	255.8	1.9	348.8	5.2	936.3
종려기름	404.6	37,994.1	327.6	33,039.3	516.1	56,025.5	1248.2	127,058.9
병백	43.1	1,489.6	40.4	1,483.7	14.7	571.4	98.2	3,544.7
면화	168.6	25,028.6	165.1	25,293.0	220.4	35,061.7	552.6	85,166.3
식용 당	23.0	726.0	37.9	1,087.8	75.3	2,589.2	136.2	4,403.6
차잎	0.7	169.7	0.4	96.0	0.5	132.8	1.5	396.5
화훼	9.6	655.3	4.8	323.8	12.5	531.1	27.7	1,526.9
채소	8.8	973.7	5.8	660.8	7.1	793.9	21.7	2,428.5
과일	165.8	13,374.4	117.3	7,668.9	183.5	9,733.3	466.5	30,761.1
축산물		59,260.7		53,430.0		70,848.3		183,527.2
수산물	286.7	36,699.4	260.0	32,940.9	357.0	46,093.2	904.2	115,772.2

자료: 農業部(<http://www.agri.gov.cn/xxfb/jgxxfb.htm>)

16.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5~2008.4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5. 1	123.2	105.6	105.7	121.0	107.7	106.8
2	132.1	112.6	107.2	131.4	114.9	108.6
3	127.0	106.2	96.1	125.6	109.0	95.6
4	124.6	102.4	98.1	122.9	104.6	97.9
5	123.5	101.6	99.1	121.5	103.5	98.9
6	121.4	99.7	98.3	119.3	100.9	98.2
7	125.8	101.9	103.6	124.4	103.3	104.3
8	126.9	100.4	100.9	125.5	101.1	100.9
9	127.0	101.5	100.1	125.6	102.2	100.1
10	124.2	103.8	97.8	122.3	105.0	97.4
11	122.8	106.1	98.9	120.8	107.7	98.8
12	125.9	108.0	102.5	124.7	110.1	103.2
2006. 1	134.8	109.4	107.1	135.3	111.8	108.5
2	133.7	101.2	99.2	134.0	102.0	99.0
3	130.5	102.8	97.6	129.5	103.1	96.6
4	132.6	106.4	101.6	132.0	107.4	101.9
5	130.6	105.7	98.5	129.4	106.5	98.0
6	126.2	104.0	96.6	124.1	104.0	95.9
7	124.6	99.0	98.7	122.3	98.3	98.5
8	129.2	101.8	103.7	127.6	101.7	104.3
9	133.7	105.3	103.5	133.0	105.9	104.2
10	125.6	101.1	93.9	123.2	100.7	92.6
11	125.9	102.5	100.2	123.3	102.1	100.1
12	132.4	105.2	105.2	130.6	104.7	105.9
2007. 1	134.3	99.6	101.4	132.9	98.2	101.8
2	136.0	101.7	101.3	134.4	100.3	101.1
3	136.6	104.7	100.4	135.1	104.3	100.5
4	136.0	102.6	99.6	134.3	101.7	99.4
5	136.8	104.7	100.6	135.2	104.5	100.7
6	143.5	113.7	104.9	142.6	114.9	105.5
7	148.0	118.8	103.1	147.8	120.9	103.6
8	151.6	117.3	102.4	151.9	119.0	102.8
9	150.1	112.3	99.0	150.0	112.8	98.7
10	149.8	119.3	99.8	149.7	121.5	99.8
11	149.6	118.8	99.9	148.9	120.8	99.5
12	152.1	114.9	101.7	151.4	115.9	101.7
2008. 1	161.0	119.9	105.9	161.7	121.7	106.8
2	174.2	128.1	108.2	176.8	131.5	109.3
3	168.8	123.6	96.9	168.4	124.6	95.2
4	168.9	124.2	100.1	168.5	125.5	100.1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7.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8.1~4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 3	155.0	154.7	3. 5	170.0	170.3
1. 4	155.2	155.0	3. 6	169.3	169.2
1. 5	154.7	154.4	3. 7	169.4	169.3
1. 6	155.5	155.4	3.10	169.6	169.4
1. 7	155.0	154.6	3.11	169.6	169.2
1. 8	154.5	154.0	3.12	169.8	169.3
1. 9	155.6	155.3	3.13	169.3	168.8
1.10	154.4	153.8	3.14	169.2	168.5
1.11	155.8	155.5	3.17	168.3	167.4
1.14	157.6	157.7	3.18	168.1	167.2
1.15	158.7	159.0	3.19	168.6	167.5
1.16	158.2	158.4	3.20	168.9	167.9
1.17	159.2	159.5	3.21	168.2	167.3
1.18	159.1	159.5	3.24	168.0	167.1
1.21	162.2	163.2	3.25	167.9	167.6
1.22	161.7	162.6	3.26	168.0	167.5
1.23	163.9	165.1	3.27	167.6	167.1
1.24	163.4	164.6	3.28	167.5	166.9
1.25	164.4	165.7	3.31	168.1	167.8
1.28	174.8	178.1	4. 1	168.3	168.1
1.29	176.0	179.6	4. 2	171.0	171.2
1.30	175.7	179.3	4. 3	170.1	170.3
1.31	177.3	181.1	4. 4	169.9	170.1
2. 1	181.5	185.9	4. 7	170.5	170.8
2. 2	179.8	184.0	4. 8	170.2	170.5
2.12	180.0	184.0	4. 9	170.4	170.6
2.13	178.1	182.0	4.10	171.3	170.5
2.14	176.5	179.8	4.11	169.6	169.0
2.15	175.1	178.1	4.14	169.2	168.4
2.18	173.2	175.7	4.15	169.0	167.8
2.19	172.5	174.9	4.16	168.9	167.8
2.20	171.3	173.3	4.17	168.7	168.3
2.21	171.8	174.1	4.18	168.3	167.5
2.22	172.0	174.1	4.21	168.6	167.9
2.25	170.8	172.6	4.22	168.1	167.3
2.26	171.9	173.6	4.23	167.9	167.2
2.27	170.6	172.1	4.24	167.1	166.2
2.28	170.4	171.7	4.28	166.6	166.5
2.29	171.4	173.0	4.29	166.8	166.5
3. 3	169.8	171.0	4.30	166.7	166.5
3. 4	169.2	170.2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8. 중국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월별), 2008.1~3

구 분	1월		2월		3월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채람자농산물 도매가격지수	161.7	21.7	176.8	31.5	168.4	24.6
돼지고기	22.6	64.7	23.4	75.3	22.6	73.2
소고기	26.7	51.8	29.4	71.1	28.1	65.4
양고기	27.7	36.3	29.6	42.2	29.0	43.8
계란	6.3	1.4	6.4	3.3	6.1	3.2
해수어	14.9	-2.2	16.4	9.9	15.5	9.2
갈치(대)	13.1	-21.0	15.0	-12.4	15.0	-4.4
갈치(소)	10.2	-19.6	11.8	-11.2	11.8	-1.9
조기(대)	23.5	4.4	22.2	9.8	22.7	12.8
조기(소)	12.7	3.5	13.5	16.6	13.4	12.7
담수어	8.9	20.7	9.9	28.3	9.6	25.0
초어	10.2	21.6	11.2	26.5	10.9	25.5
잉어	9.2	28.7	10.5	37.1	10.1	38.9
연어(chub)	6.1	13.8	6.7	27.2	6.5	21.5
붕어	9.7	12.8	11.0	23.8	10.5	17.2
과채류	3.6	29.4	4.9	61.3	4.6	32.5
토마토	2.8	29.6	3.4	49.7	3.2	27.2
콩꼬투리	4.4	7.6	6.5	40.0	7.6	47.9
오이	3.4	25.6	4.6	72.9	3.4	15.1
가지	3.7	33.2	4.9	60.2	4.6	35.4
피망	4.0	51.9	5.8	81.1	5.7	31.6
엽채류	1.4	30.3	2.2	113.5	1.6	47.2
배추	0.7	37.4	0.9	75.0	0.8	20.9
시금치	1.4	20.3	2.3	120.7	1.9	36.1
셀러리	2.1	32.6	3.1	116.5	1.8	83.0
청경채	1.9	29.6	2.8	136.7	1.9	38.4
과일	4.4	11.0	5.1	30.6	4.1	3.6
수박	4.0	5.9	4.2	6.5	4.0	1.0
배(야리)	2.2	9.3	2.5	20.2	2.4	20.3
사과(부사)	4.4	42.9	4.6	43.6	4.5	27.4
바나나	3.5	13.6	3.7	8.3	3.7	-4.2
파인애플	4.2	52.0	4.0	48.4	3.3	28.6
망과	19.2	-3.0	23.2	46.3	9.8	-8.3

주: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100.

자료: 農業部.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xxfb>)

[E] 09-2008-01

중국농업동향(봄호) 제1권 제1호/통권1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4. 30.

발 행 2008. 4. 30.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